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810-01

#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2020. 12





#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2020. 12

수 행 기 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발 주 기 관 : 국가인권위원회

책 임 수 행 :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울산대학교 교수)

공 동 수 행 : 김민정 (강남대학교 교수)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연구원)

오선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객원교수)

주연선 (충남대학교 박사과정)

손영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임연구원)

수 행 보 조 원 : 김지혜 (연세대학교 석사과정)



# 제 출 문

국가인권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용역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본 보고서는 모니터링 수행기관의 모니터링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b>제1장 모니터링 개요</b> .....	<b>1</b>
제1절   모니터링의 필요성 .....	3
제2절   모니터링의 목적 .....	5
제3절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	6
1. 모니터링 방법 .....	6
2. 모니터링 과정 및 기간 .....	7
<b>제2장 사회복지분야 의무 인권교육의 이론적 논의</b> .....	<b>9</b>
제1절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 .....	11
제2절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의 법률적·행정적 근거 .....	14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17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21
3. 사회복지사업법 .....	25
4. 아동복지법 .....	31
5.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	33
6. 장애인복지법 .....	35
7. 노인복지법 .....	38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42
제3절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현황 .....	43
1. 의무 인권교육 .....	43
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48
3. 사회복지시설평가 .....	50

제4절   선행연구 동향 및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의 문제점 분석 .....	51
1. 선행연구 동향 .....	51
2.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의 문제점 분석 .....	54
<b>제3장 인권교육관련 실태조사 결과 .....</b>	<b>65</b>
제1절   연구방법 .....	67
1. 조사 개요 .....	67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	67
3. 모집단과 표본의 특성 .....	68
제2절   연구결과 .....	71
1. 분석결과 .....	71
<b>제4장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분석 .....</b>	<b>105</b>
제1절   연구방법 .....	107
1. 초점집단면접조사 목적 .....	107
2. 조사개요 및 방법 .....	107
제2절   조사결과 분석 .....	110
1.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	111
2.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현황 .....	113
3.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개선방안 .....	124
<b>제5장 결론 및 제언 .....</b>	<b>129</b>
제1절   모니터링 결과 요약 .....	131
제2절   제언 및 한계 .....	135
1. 종합 제언 .....	135

<b>부 록</b> .....	<b>145</b>
[부록 1 : 설문조사 결과 교차표] .....	147
[부록 2 : 설문지 및 FGI 질문지] .....	200

# 표목차

〈표 1-1〉 연구과정별 기간 .....	7
〈표 2-1〉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의 종류 .....	14
〈표 2-2〉 2019년 사회복지시설 법정 의무교육 .....	15
〈표 2-3〉 정신건강복지법(약칭)상 인권교육의 근거 .....	17
〈표 2-4〉 기관별 역할 .....	18
〈표 2-5〉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의 종류 및 내용 .....	19
〈표 2-6〉 정신건강증진시설 의무교육 대상 범위 .....	19
〈표 2-7〉 노숙인복지법상 인권교육의 근거 .....	22
〈표 2-8〉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추진체계 .....	23
〈표 2-9〉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주요 추진과제 .....	24
〈표 2-10〉 사회복지사업법 인권교육 관련 조항 .....	26
〈표 2-11〉 2019~2021 사회복지시설 평가 .....	26
〈표 2-12〉 2021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안)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표지표) .....	28
〈표 2-13〉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인권교육 항목 변화 .....	30
〈표 2-14〉 아동복지법의 인권교육 관련 조항 .....	32
〈표 2-15〉 청소년 기본법의 인권 및 보수교육 관련 조항 .....	34
〈표 2-16〉 장애인복지법의 인권교육 관련 조항 .....	35
〈표 2-17〉 노인복지법 인권교육 관련조항 .....	38
〈표 2-18〉 노인복지분야 인권교육기관 행정처분 기준 (2018년 신설) .....	39
〈표 2-19〉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기관의 역할 .....	40
〈표 2-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인권교육 관련조항 .....	42
〈표 2-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실시 현황 .....	43
〈표 2-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교육과정 운영현황 .....	44
〈표 2-23〉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교육 운영현황 .....	45
〈표 2-2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집합교육) 현황 .....	45
〈표 2-2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권교육(사이버교육) 현황 .....	46
〈표 2-26〉 장애인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 인권교육현황 .....	47
〈표 2-27〉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연도별 대상자 .....	48
〈표 2-28〉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교육영역별 운영현황 .....	49
〈표 2-29〉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점수 .....	50
〈표 2-30〉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 법률 및 지침 정리 .....	55
〈표 3-1〉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의 지역별 분포 현황 .....	68

〈표 3-2〉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의 지역별 분포 현황	69
〈표 3-3〉 시설 유형	71
〈표 3-4〉 소관 부처 및 대상자 별 시설 종류	71
〈표 3-5〉 시설 소재지	73
〈표 3-6〉 운영주체	74
〈표 3-7〉 시설 현황	75
〈표 3-8〉 설문 응답자 인구사회학적·기관 내 역할 특성	75
〈표 3-9〉 인권교육 시행의 근거법률 인지 여부	76
〈표 3-10〉 시설에서 인식하는 인권교육 시행 근거 법률(중복응답)	77
〈표 3-11〉 근거 법률 중복 시, 인권교육 방법	78
〈표 3-12〉 시설 내 인권교육 업무 담당자 지정 여부	79
〈표 3-13〉 시설 연간 운영계획서 내 인권교육 계획 포함 여부	79
〈표 3-14〉 2019년 1년 간 인권교육 진행 여부	80
〈표 3-15〉 인권교육 미실시 받는 불이익 인지 여부	81
〈표 3-16〉 인권교육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경험 여부	81
〈표 3-17〉 2019년 1년 간 인권교육 진행 방법	81
〈표 3-18〉 내부 인권교육 현황 파악	83
〈표 3-19〉 내부 인권교육 시 시설장 참여 여부	84
〈표 3-20〉 외부 인권교육 현황 파악	85
〈표 3-21〉 외부 인권교육 시 시설장 참여 여부	86
〈표 3-22〉 시설장의 최고관리자 대상 인권교육 별도 수강 여부	86
〈표 3-23〉 인권교육 시 종사자 집단 구분	87
〈표 3-24〉 인권교육 진행 강사(중복응답)	88
〈표 3-25〉 내부 종사자의 인권교육 진행강사 참여 여부 및 내부 종사자의 강사 참여 이유	88
〈표 3-26〉 내부 인권교육 강사 섭외 방법(중복응답)	89
〈표 3-27〉 내부 인권교육 강사 섭외가 곤란했던 이유(중복응답)	90
〈표 3-28〉 인권교육 설계와 강사섭외에 있어 도움 받은 기관	90
〈표 3-29〉 인권교육 강사로 지급 기준	92
〈표 3-30〉 인권교육 강사비	93
〈표 3-31〉 인권교육 주최기관(중복응답)	94
〈표 3-32〉 인권교육 주최기관 선택 이유(중복응답)	95
〈표 3-33〉 외부기관 인권교육의 수강 방법	95
〈표 3-34〉 외부기관 인권교육의 수강 방법	96
〈표 3-35〉 인권교육 진행 강사(중복응답)	98
〈표 3-36〉 인권교육 수강 내용(중복응답)	99
〈표 3-37〉 인권교육 수강 방법(중복응답)	99

〈표 3-38〉 인권교육의 정보 획득(중복응답) .....	100
〈표 3-39〉 인권교육 만족도(1순위/ 2순위) .....	101
〈표 3-40〉 인권교육 불만족도(1순위/ 2순위) .....	102
〈표 3-41〉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평가 경험 유무 .....	103
〈표 3-42〉 사회복지시설평가 시 인권교육 항목관련 개선사항(중복응답) .....	104
〈표 4-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108
〈표 4-2〉 인터뷰 질문 .....	109
〈표 4-3〉 초점집단면접 도출개념 .....	110
〈표 5-1〉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 운영·교육·평가 주체 .....	141
〈표 5-2〉 인권교육 영역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 .....	143

# 그림목차

〈그림 2-1〉 사회복지현장 인권 책무 실행단계 .....	13
〈그림 2-2〉 정신건강분야 인권교육 운영체계 .....	18
〈그림 2-1〉 노인복지분야 인권교육 .....	41
〈그림 3-1〉 시설유형별 복수의 근거법률에 따른 인권교육의 운영 방식 .....	78
〈그림 3-2〉 종사자 규모별 2019년 인권교육 진행 여부 .....	80
〈그림 3-3〉 종사자 규모별 2019년 실시된 인권교육의 진행방식 .....	82
〈그림 3-4〉 지침 인지 여부 .....	87
〈그림 3-5〉 지침 확인 여부 .....	87
〈그림 3-6〉 시설유형별 강사섭외에서 특별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 .....	91
〈그림 3-7〉 인권교육 강사의 전문성 수준 .....	92
〈그림 3-8〉 인권교육 진행 시간 .....	93
〈그림 3-9〉 근무시간 외 외부기관 인권교육의 참여 여부 및 업무 외 시간의 교육 참여시 초과 근무수당 지급 여부 .....	96
〈그림 3-10〉 시설유형별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진행한 비율 .....	97
〈그림 3-11〉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만족도 .....	100



# 제1장

## 모니터링 개요



# 제1장 모니터링 개요

## 제1절 | 모니터링의 필요성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권의 존중과 보호, 실현에 따르는 국가의 의무와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이 요구되는 동시에,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인권 의식과 태도 및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를 만나는 대표적인 휴먼서비스 제공 종사자로서, 클라이언트의 인권이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이 필수적인 직종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은 2012년 1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 복지 및 인권증진의 책임 및 인권존중 봉사의 원칙에 따라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 강화로 법제화 되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8개 법령에서는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시설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조항을 넣어 매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 따라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과 같이 인권교육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준수 여부를 별도로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의 11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시행사항을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으로 인권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제도화되어 정기적으로 운영 여부가 평가·점검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교육이 총괄로 운영, 관리되기보다는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소관부처 및 시설유형별로 참여자 등의 특성에 따른 인권교육의 특성 및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실태 등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책무이행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서의 교육이수현황을 확인하고, 인권교육 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한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이 사회적 투자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의무화된 이후에 동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별개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의무교육으로서 반드시 해당 인권교육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으로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의무교육으로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권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과 요인을 발굴하여 인권교육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별, 시설유형별 사회복지사 인권교육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인권교육의 만족도를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운영 요소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 제2절 | 모니터링의 목적

본 모니터링의 목적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의무교육으로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인권교육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 모색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모니터링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체계별로 고찰하여 현황 및 실태자료를 분석하고 의무 인권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사 인권교육 운영 및 실시 현황을 파악하고, 상황을 진단하여 대상별·시설유형별 교육개발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질적 조사를 수행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 의무화·제도화되어 실시되고 있는 인권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현장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넷째, 모니터링 실시 항목에 따른 연구 설계를 통해 전국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의 제도 개선 및 질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 제3절 |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 1. 모니터링 방법

본 모니터링은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문헌연구 및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에 관한 실증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양적 분석,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과 관련한 전문가 인식조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흐름에 따라 활용되는 방법은 다음의 내용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이론적 논의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문헌 검토를 실시하였다. 또한 의무교육의 개별법상 법적 근거 및 지침, 절차, 현황 등을 분석하였고, 행정자료 검토를 통한 실적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의 도입 배경 및 목적, 관련 여건 및 현황 분석, 현행 문제점 및 쟁점 등 제도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을 제작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 등록된 기관 대표 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Online Survey)를 실시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헌연구 및 설문조사로 탐색하기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의 쟁점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의 현안과 쟁점, 문제점 탐색 및 개선점을 질적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이러한 모니터링 방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의 개선 및 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2. 모니터링 과정 및 기간

본 모니터링은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기존의 문헌자료 및 행정자료 고찰,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구조화된 설문을 제작하여 양적 조사를 진행하였고, 세부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여 질적 조사를 진행하였다.

【 표 1-1 】 연구과정별 기간

내용	월별				
	9	10	11	12	1
• 기획 및 계획서 작성	▶				
• 용역 발주 및 계약	▶				
• 문헌 및 자료 조사		▶	▶		
• 연구진 워크샵			▶		
• 설문조사		▶	▶		
• 양적 분석			▶	▶	
• 초점집단면접조사(FGI)			▶		
• 질적 분석			▶	▶	
• 보고서 작성		▶	▶	▶	
• 보고서 발간 및 배포					▶



## 제2장

# 사회복지분야 의무 인권교육의 이론적 논의



## 제2장 사회복지분야 의무 인권교육의 이론적 논의

### 제1절 |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권(人權)은 인간과 권리의 합성어이다. 여기서 '인간'이란 지구상에 살고 있는 78억 인구 중에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인간이며, 사회 속에 속한 개인을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로 '권리(權利)'란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해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을 의미한다. 즉, 인권이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인 인간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힘 또는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에 기반을 둔 학문으로서 인간의 생명존중, 자유, 평등, 사회정의,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인권의 기본가치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어 왔다(홍선미 외, 2017).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실천은 세계인권선언 제25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에는 식량, 의복, 주택, 의료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등을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면 이를 보장해 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근대 국가시스템에서는 1차적 책임을 국가에게 묻는다.

1986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이행에 대한 림버그 원칙, 그리고 1997년 림버그 원칙을 보완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침해에 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을 통해 아래와 같이 국가의 의무는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 ◆ 존중의 의무 : 권리를 향유하는 데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함
- ◆ 보호의 의무 :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나서서 막아야 함

- ◆ 실현의 의무 : 국가는 권리실현을 위해 적절한 입법, 행정, 예산, 사법 조치 및 기타 조치를 능동적으로 취해야 함

대한민국은 1990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에 비준했으며, 헌법 제6조에 의해 국제법인 사회권규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인권의 존중, 보호, 실현의 책무를 갖는다. 또한 「헌법」 제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 즉 권리의 주체자이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므로 인권보장의 책무자가 국가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7개 광역지자체, 100여개 기초지자체는 인권 기본 조례를 통해 지자체의 인권책무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라고 규정하므로 사회복지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므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인권책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동법 제1조의2제3항은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에 대해 제1항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때 시민의 인권을 차별하지 않고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인권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아래 <그림2-1><sup>1)</sup>과 같이 국가로부터 인권책무를 위임받은 대리자로서 시민의 인권보장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복지현장 인권 책무 실행단계와 관련하여 위 그림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그림 출처 : 자원봉사인권을 만나다(2019),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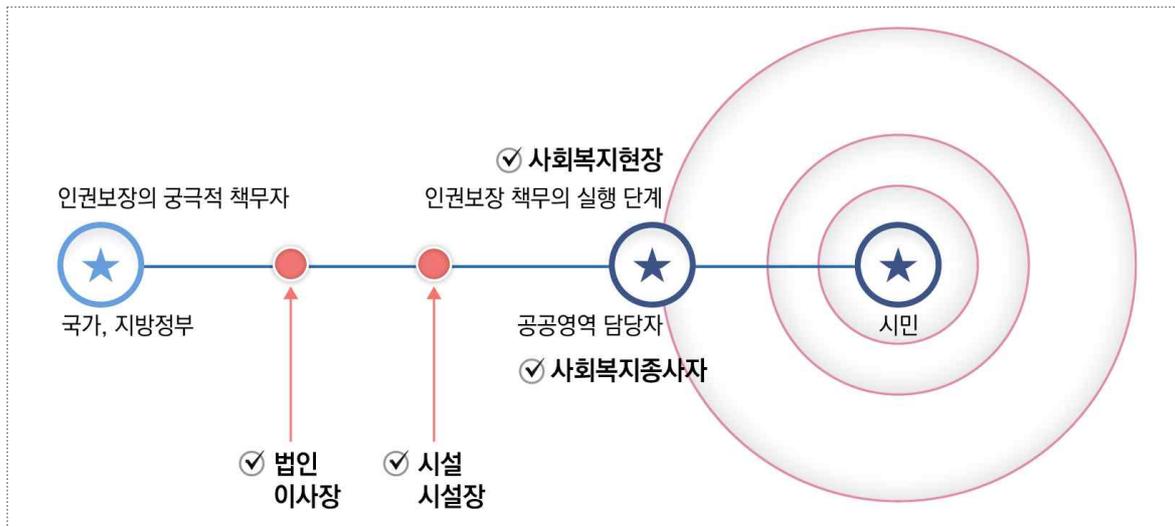


그림 2-1 | 사회복지현장 인권 책무 실행단계

최근 사회복지현장의 변화 중 하나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기업, 공공기관에 인권경영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이후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과 서울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등 지자체 단위의 공공기관들은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은 해당기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경영 추진을 지원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에 인권경영을 도입하는 의미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책무를 확인하고 사회복지시설운영과 사업추진에 있어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인권경영 추진에 있어 관련 이용자와 임직원을 포함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노숙인 등 복지법 등 개별 법령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인권교육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담아내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의 법률적·행정적 근거와 관련하여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제2절 |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의 법률적·행정적 근거

사회복지는 인권전문직으로서 인권의 옹호는 사회복지실천의 중요한 부분이다. 「사회복지사업법」제1조의2제3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인권보장 의무를 기본이념으로 명시하였다. 인권은 사회복지의 이론, 가치, 철학, 윤리와 분리될 수 없는 가치로서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인권은 모든 상황에서 유용한 지침이 되는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인권의 개념과 의미를 이해하고 인권관점에 기초한 가치와 태도, 전문적 역량을 갖추어나가도록 하는 인권교육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은 크게 법정 의무교육과 보수교육으로 나뉜다. 동법 제10조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13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정기적으로 인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자격을 교부받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표 2-1 |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의 종류

종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기관	법률적 근거
법정 의무 교육	인권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체	연1회 4시간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전문교육기관 등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제10조 「정신건강복지법」제70조 「노숙인복지법」제20조, 23조 등 8개 법률
	노인학대· 아동학대신고의 무자교육 장애인식개선교 육 등		연1회 1시간 이상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개발원 등	「노인복지법」제39조의6 「아동복지법」제26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 등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 인권교육		자격을 교부받은 사회복지사	8시간 이상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

사회복지사 인권교육에 대한 대표적인 조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10조이다. 이 조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인권교육 등 필요한 제도와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이 법률에 근거하여 연1회 4시간의 의무 인권교육을 포함하여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서의 인권교육 대상은 자격을 교부받은 사회복지사이지만 의무교육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가 인권교육 의무교육 대상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조무사, 보호사 외 행정, 원무, 관리 전담직원 등 모든 종사자가 법정 의무교육인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표 2-2 | 2019년 사회복지시설 법정 의무교육**

교육명	교육일정	교육 대상	교육기관	관련법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전직원	국가인권위원회 외	「근로기준법」제76조 제93조, 11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전직원	여성폭력상담소 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인권교육	연1회 4시간	전직원	국가인권위원회 외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 제4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전직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5항 / 시행규칙 제29조의1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전직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제2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개인정보보호교육	연1회	전직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
퇴직연금교육	연1회	전직원	퇴직연금기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소방안전교육	연1~2회이상	전직원	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본법」 제17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정기안전보건교육	3시간 이상	전직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 시행규칙 제33조
안전보건관리자교육	연1회 8~16시간	해당 관리자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	연1회	담당자	안전보건공단 외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 시행규칙 제33조
위생교육	연1회	영양사 조리사의외	보건소, 영양사 해당업무담당자	「식품위생법」제41조 (식품위생교육)

교육명	교육일정	교육 대상	교육기관	관련법률
승강기관리교육	연1회	해당 관리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9조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전직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은 2004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 보수교육법 제화 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2007년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보수교육 운영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법제화되었다.

2011년 9월 개봉된 영화 도가니에서 보여준 인권침해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면서, 사회복지계는 서명, 집회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적 운영에 대한 법개정을 촉구하였다(홍선미 외, 2017). 이에 2012년 1월에 신설된「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教育)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인권교육을 포함하게 되었다.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이며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이다. 동법 제58조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훈련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2018년 12월 신설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자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20만원)가 부과된다.

앞서 살펴본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해당하는 공통적인 법정 의무교육 외에도 사회복지분야 특정역역에서의 종사자 인권교육이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법률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분야 대상별 개별 법률체계 내에서 각기 다르게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의 법률적 근거와 현황 파악을 위해 관련 8개 분야의 법률 및 사업지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분야의 인권교육은 2008년 「정신보건법」 제70조에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하기 위해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동법은 2017년 5월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 표 2-3 | 정신건강복지법(약칭)상 인권교육의 근거

#### Ⅰ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인권교육)

-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인권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인권교육의 시간·대상·내용·방법,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등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권교육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인권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제1항에 의거한 의무교육 대상은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의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이며, 정신의료기관은 1병상 이상을 보유한 정신병원 또는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하며, 낮병동(주간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지침」에 따라 의무교육의 대상, 내용과 수행 체계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된 인권교육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 보호,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관련 법령 및 제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에 관한 국제 동향,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기본 내용을 다룰 수 있다.

지침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은 교육 요구에 따라 소집교육, 방문교육,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운영하며 인권교육의 수행체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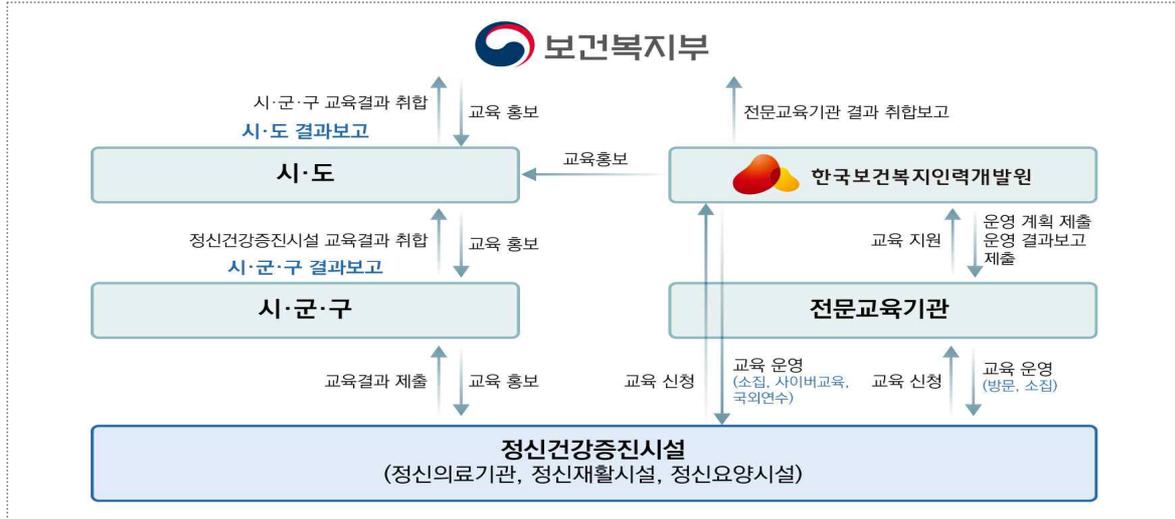


그림 2-2 | 정신건강분야 인권교육 운영체계

표 2-4 | 기관별 역할

기관	역할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장애 인식개선 및 편견해소 정책의 종합 계획 수립·조정·평가</li> <li>중앙단위 정신장애 인식개선 및 편견해소 정책 추진</li> <li>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강화 제도 운영</li> <li>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위탁 운영 및 관리</li> </ul>
시·도 및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 인권 및 권익 보호</li> <li>인권교육 일정 홍보 및 이수 안내</li> <li>인권교육 결과 취합 및 보고</li> <li>인권교육을 위한 시설편의 및 강사지원</li> </ul>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지침 수립 지원</li> <li>인권강사 양성, 강사 관리, 보수교육 운영</li> <li>사이버 인권교육 개발 및 운영</li> <li>전문교육기관 인권교육 지원</li> <li>인권교육 표준 강의를 개발·배포</li> </ul>
전문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중심 인권교육 연간계획 수립·수행·관리</li> <li>교육 이수증 발급 및 관리</li> <li>인권강사 추천 및 관리</li> </ul>
정신건강증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교육 참여</li> <li>시·군·구 결과보고</li> </ul>

기존에는 종사자와 시설장의 구분 없이 인권교육이 수행되어 왔으나, 2018년 변경된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지침에서는 인권교육을 시설장과 종사자 대상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새롭게 명시하고 있다. 시설장 인권교육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시설장은 시설 규모에 따라 교육기관을 구별하여 실시하는데 정신재활시설장은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에서, 정신요양시설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방문교육으로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매년 4시간 이상이고 소집교육과 방문교육만을 인정한다.

**표 2-5 |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의 종류 및 내용**

구분	교육대상	교육방법			교육기관		
		소집	방문	사이버			
시설장 인권 교육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자	○	×	×	정신 의료 기관	49병상 이하	·국립정신병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50병상 이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재활시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정신요양시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정신요양시설협회협업)
종사자 인권 교육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	○	○	(소집, 방문교육) 권역 전문기관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종사자 인권교육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1병상 이상을 보유한 정신병원 또는 의원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조무사, 보호사 외 행정, 원무, 관리 전담직원까지 직접 고용된 직원은 모두 의무교육 대상이다.

**표 2-6 | 정신건강증진시설 의무교육 대상 범위**

<b>의무교육 대상 범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 모든 직원(행정·원무·관리 전담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고용된 직원인 경우, 담당업무를 불문하고 모든 직원이 교육 대상임</li> <li>- 정신병원 내 타과 근무자(예 : 치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내과 등)도 교육 이수 의무자에 포함</li> <li>- 식당, 청소, 경비, 운전 등 비치료 분야 종사자도 인권교육 이수를 해야 함</li> </ul> </li> <li>• 병원급 이상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인 경우 인사·재무·원무·심사·시설 등 지원부서 관리자 2명 이상은 반드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함</li> </ul>

**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인권교육)**

-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인권교육의 내용** : 각 목의 사항
    - 가. 환자의 인권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나.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에 관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 라.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권교육 시간** : 매년 4시간 이상
  3. **인권교육 방법** :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일 것
    - 가. 국가인권위원회
    - 나.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 다. 정신건강증진 또는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 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권교육강사 양성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이하 “인권교육강사”라 한다)을 1명 이상 둘 것
    - 가. 최근 3년 이내에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 나. 정신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다. 제1호 각 목의 기관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③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권교육 강사의 자격은 인권교육 강사양성, 보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국가인권위원회 정신건강증진시설 전문 인권강사 양성교육 이수 후 보건복지부에 강사 등록을 마친 사람이며, 전문교육기관은 교육내용 다양화 및 사례를 통한 교육효과 증대를 위해 당사자 또는 당사자 가족을 보조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2018년 변경된 지침 내용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의 인권강사 자격이 국가인권위원회 정신건강증진 시설 전문 인권 양성강사 양성교육 이수 후 보건복지부에 강사 등록을 마친 자를 추가하여 인권강사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인권강사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시간도 기존 강사양성 교육 16시간, 보수교육 4시간에서 강사양성 교육 21시간, 보수교육 8시간으로 교육시간이 증가하였다. 또한 인권교육 강사 자격유지에 있어서 2년 내 1회 이상의 강의를 의무화 하는 등 자격유지 조건을 수정하였다.

##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12.6.8.)은 노숙인시설의 대표와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노숙인 인권보호를 위해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 주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정하고 있고 교육의 내용에는 노숙인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 인권침해 사례, 구제, 예방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정신건강분야에서는 교육 수행처를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기관, 교육훈련 기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 법인, 단체로 다양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담하여 실시하고 있다.

현행법이 노숙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노숙인에 대한 유기·방임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16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부 노숙인 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노숙인 인권보호에 대한 보다 적극적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2018년 12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이 있었고, 제20조제2항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이슈를 이유로 한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2019년 6월에 일부 개정된 법률 시행령에서는 “노숙인시설의 종사자가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받지 않거나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 이슈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이라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는 인권교육 미시행이나 종사자 처우에 대해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인권교육에 관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표 2-7 | 노숙인복지법상 인권교육의 근거**

**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2012. 6. 8) 제20조 (인권교육)**

- ①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2항 신설(2018. 12. 11 일부개정)

- ②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이유로 한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

**Ⅱ 시행규칙 제23조 (인권교육의 실시)**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인권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방안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구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④ 노숙인시설의 장은 종사자들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여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시기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의3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9. 6. 11신설**

- ② 노숙인시설의 종사자가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받지 않거나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 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2020년 노숙인 등 복지사업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무교육의 적용대상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 노숙인시설(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시설의 장 및 종사자로 확대하였다. 종사자 중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휴직한 자 중 근무 기간 내 교육과정이 미개설된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노숙인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는 인권교육의 결과를 취합, 결과 보고,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시·도에 교육 결과를 취합하여

익년 1월까지 제출,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상호간 결과를 통보하고 공유한다.

표 2-8 |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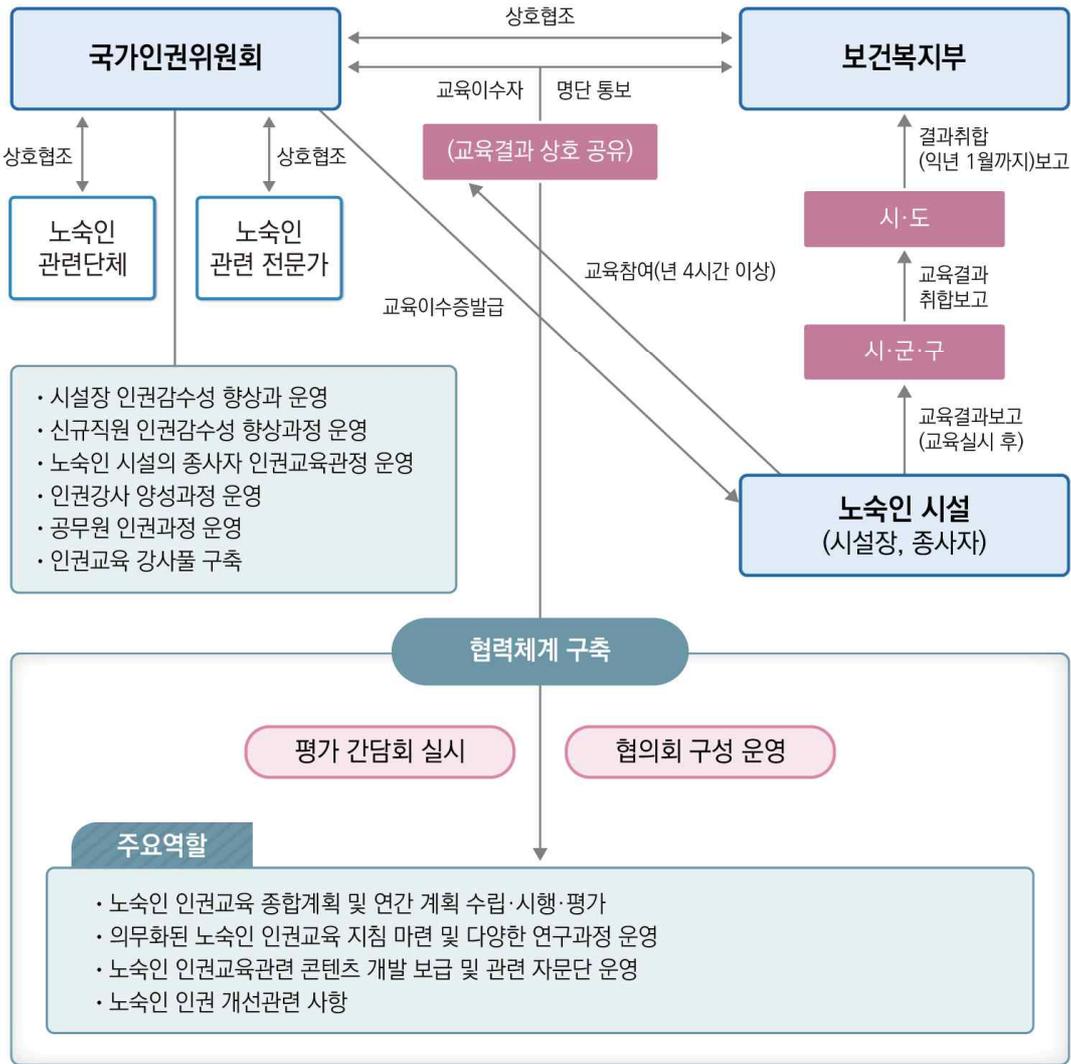


표 2-9 |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주요 추진과제

목표	주요추진과제
노숙인 인권교육 협력·평가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협의회 구성·운영</li> <li>• 노숙인시설 기관·단체·전문가와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 강화</li> <li>• 노숙인 인권교육 평가회의(정례화)</li> <li>• 노숙인 인권증진 시범시설 운영</li> </ul>
인권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인권교육과정 운영(매년 4시간 이상)</li> <li>• 소집·방문 등 다양한 방법의 교육 운영</li> <li>• 노숙인 분야 인권강사 과정 운영 및 전문강사 육성·관리 (전문인력 pool 구축)</li> </ul>
인권교육 콘텐츠 및 강의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자문단 운영</li> <li>•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인권교육 기본교재 개발</li> <li>•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개발(강의안, PPT, 사이버 콘텐츠 등)</li> <li>• 교육자료 DB구축</li> </ul>
인권교육 관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강사의 자격기준 마련</li> <li>• 인권교육의 이수 확인과 관리 등 세부기준 마련</li> <li>• 인권교육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li> </ul>

인권교육은 시설장, 신규종사자, 시설종사자 대상으로 구별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숙인시설의 장은 반드시 인권교육을 이수하고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교육참여 시간과 이동 시간을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며, 인권교육에 참여할 경우 교육출강, 공가, 시간 외 근무 중 선택하여 근태를 처리해주고 실무자의 인권교육 이수에 필요한 경비(일비, 교통비, 숙박비 등) 전액을 지급하도록 지침에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인권교육은 「노숙인복지법」에 근거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연내 타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인권교육은 인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시설 종사자 채용 완료 시점 당시에 잔여교육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이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3.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제1조의2제3항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 제공자는 사회복지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회복지 시설에서의 인권보장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인권교육의 의무화에 대한 조항은 제10조 지도·훈련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향상을 위해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보수교육의 의무화에 대한 조항은 제1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教育)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시설 보수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의 근거가 된다.

**표 2-10 | 사회복지사업법 인권교육 관련 조항**

**제1조2 (기본이념)**

③ 사회복지사업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1. 26)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제10조(지도·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② 제1항의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제55조(벌칙), 제58조(과태료)**

•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2004년「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장애인거주시설 등 11개 유형은 사회보장정보원, 지역아동센터는 중앙지원단평가센터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시설 유형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이어 2020년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에 대한 시설 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시설 등의 시설 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표 2-11 | 2019~2021 사회복지시설 평가**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19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20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이동, 장애인, 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
2021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시설, 한부모공동생활가정

\* 연도별 평가대상은 신규유형 추가 등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자체에서 자체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복지부에서 개발한 평가지표를 통해 자체평가에서 평가 결과 통보 까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평가항목 영역별로 환산점수에 따라 5등급 (A~D, F)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등급을 부여하는데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시설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운영개선이 필요한 미흡시설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 등 사후관리를 통해 품질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운영에 중요한 사항이자 시설 인권교육의 동인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중 D. 이용자의 권리 평가영역의 인권교육 시행 여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행하고 시행결과를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상 인권교육과 관련된 지표는 <표 2-12>와 같다. 2021년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B11 직원의 권리 및 인권 보호에서는 직원의 인권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현장확인,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교육자료 등을 확인하여 직원의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면 인정한다.

D2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항목에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계획 및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계획이 있고 연1회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인정하고, 직원교육의 경우에도 인권교육계획서가 있고 연1회 4시간 이상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직원 인권교육은 이용자 인권교육과 별개로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과정에서 교육계획서, 결과보고서, 근무일지, 상담일지, 수료증 등을 확인하여 평가점수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된다. D5 이용자의 권익옹호 항목에서는 직원을 대상으로 권익옹호 관련 교육계획이 있고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직원의 80% 이상이 교육을 받아야만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사업계획서, 교육참가자 명단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표 2-12** | 2021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안)<sup>2)</sup>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통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A. 시설 및 환경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A2	안전관리
	A3	응급상황 및 화재예방 안전체계 구축
B. 재정 및 조직운영	B1	사업비 비율
	B2	후원금 비율
	B3	회계의 투명성
	⋮	
	B11	<b>직원의 권리 및 인권 보호</b> B11-⑥ 직원의 인권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2020년 산설)
	B12	사업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B13	장애인종사자 고용율
	C1-1	서비스 신청 및 상담
	C2-1	사례관리의 운영체계
	C3	집단 및 지역사회사업
⋮		
D. 이용자의 권리	D1	비밀보장
	D2	<b>학대예방 및 인권보장</b> D2-③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계획하고 연1회실시하고 있다. D2-④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계획하고 연1회이상 실시하고 있다. D2-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D2-⑥ 모든 직원으로부터 학대/인권침해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
	D3	고충처리
	D4	서비스 정보제공 및 자기결정권
	D5	<b>이용자의 권익옹호</b> D5-③ 연1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권익옹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E. 지역사회관계	E1	외부자원개발
	E2	자원봉사자관리
	E3	후원금(품) 개발 및 관리
	E4	지역사회네트워크
F. 시설운영전반	F1	시설운영전반

2) 본 지표는 보건복지부(위탁기관: 사회보장정보원)의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안)로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평가기준과는 차이가 있음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매년 항목별 변경과 수정을 거쳐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과 관련된 내용도 정부의 방침과 법률상 변화, 시행 시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매년 평가지침에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항목이 있다. 2019~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내 종사자대상 인권교육 관련 항목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표 2-13>과 같다.

2019년까지는 이용자와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과 시행을 목표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이용자대상 인권교육의 1회 이상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인권교육 항목이 구성되었다. 2020년부터는 이러한 평가지표의 목표 및 지침에 인권교육 외부강사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 강사의 자격을 관리하고자 하는 항목을 추가하였고, 2021년 시행 예정인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는 인권교육의 형태와 기준이 강화되어 기존에는 이용자 대상 인권교육이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제공이 가능했던 반면 2020년 이후로는 집합교육만 인정하도록 변화하였고, 사회복지관의 경우 4시간 교육에서 아동학대 및 신고자 의무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5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침에 반영되었다. 내부직원의 인권교육 실시시 자격기준도 강화하였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평가지침에서의 인권교육은 평가의 시행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은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로 인하여 이용자와 종사자의 인권의식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평가지표에서 보다 질적인 부분들, 즉 인권교육 계획과 운영, 효과에 대한 평가항목을 확대하여 교육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표 2-13 |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인권교육 항목 변화<sup>3)</sup>

평가 년도	평가대상시설	전년도와 비교 변경·추가된 사항
2019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도까지는 인권교육계획서 및 시행 여부만 확인하였으나 2019년도 평가 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계획서가 있고 연1회 이상(4시간 이상) 실시 여부 확인</li> <li>• 이용자/생활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연1회 이상 시행 여부 확인</li> <li>• 인권교육은 이용자/생활인 대상 인권교육과 별개로 이루어져야 인정</li> </ul>
2020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이동,장애인,정신 재활공동생활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까지는 직원 인권교육계획이 있고 연1회 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 인정(4시간 교육은 2019년만 적용)</li> <li>• 단 2019년에는 직원간, 직원-이용자 간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 등의 내용을 필수포함</li> <li>• 인권교육 외부강사 기준 추가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이상 활동한 자 인권교육 강사과정 수료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한정</li> <li>•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내부직원이 인권교육을 실시한 경우 해당직원도 인권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함(19년도만 적용)</li> </ul>
2021 (예정)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시설, 한부모 공동생활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까지는 이용자 대상 인권교육이 온·오프라인 모두 인정되었으나 2020년부터는 집합교육만 가능</li> <li>• 2018~2019년까지는 2018년 평가지표 기준에 따라 연4시간 교육 시 점수 부여</li> <li>• 2020년부터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이 있고 연간 5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사회복지관은 5시간 교육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자 의무교육 1시간 이상 필수 이수 시 인정)</li> <li>• 내부직원이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 한함</li> </ul>

3) 본 지표는 보건복지부(위탁기관: 사회보장정보원)의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안)로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평가 기준과는 차이가 있음

#### 4.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인권교육은 아동이 속한 공동체인 가족, 학교, 사회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고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성장하고 균형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동의 인권의식을 강화하고 모든 프로그램에 아동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아동시설 종사자는 아동의 인권 보호의 책무자로서 인권과 인권 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아동의 인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을 통해 아동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0).

「아동복지법」상에서는 인권교육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 사례 개입 과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역할,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요령, 피해 아동 보호 절차 등에 관한 교육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신고의무자로서 학대받고 있는 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고 조기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종합병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며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은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2020년 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지침에서는 종사자교육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보수교육 및 인권교육에 있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은 대학 또는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 시설에 위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아동복지협회 등과 연결하여 아동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아동시설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반드시 아동관련 성폭력 예방, 안전, 아동학대 예방, 아동권리교육, ADHD 약물 오남용 방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55조에 따른 종사자 교육·훈련 실시를 위하여 지자체는 종사자 교육비 및 여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아동 인권 신장을 위한 교육의 당위성을 부과하였다.

**표 2-14 | 아동복지법의 인권교육 관련 조항**

**Ⅰ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8.)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 할 수 있다.(신설 2015.3.27.)
-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3.27.)

**Ⅱ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삭제
- ⑤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5.10.6.)

## 5.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4항).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2004년 2월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다. 동법 제34조제2항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인권교육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법체계 내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에 관한 다른 법률보다 상위법이며 제5조제1항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은 청소년 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제2항 “청소년은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의 조건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청소년의 인권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4조제2항에서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르면 청소년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 법인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청소년단체의 위탁운영하며, 운영주체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다.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는 소속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의거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에 따르면 청소년쉼터의 경우는 인권실천 및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쉼터 내에서 인권보호 및 실현에 대한 제도를 갖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종사자는 청소년의 인권보호자로서 인권과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청소년의 인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인권교육을 직접 실행하므로 인권교육방법에 대해서도 교육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인권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표 2-15 | 청소년 기본법의 인권 및 보수교육 관련 조항**

**Ⅰ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 ①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기간·내용·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Ⅱ 시행규칙 제10조의2(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2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단체(이하 "활동진흥원등"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5. 5. 4.>
- ⑤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및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활동진흥원등의 장이 정한다.

**Ⅲ 제10조의3(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⑤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및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상담원의 장이 정한다.

시설 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6개월에 1회 8시간이상 실시해야 하고,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정교육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시설평가에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현재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관련 이해관계자인 청소년시설들의 인권경영을 추진하도록 지원해야할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청소년시설과 종사자를 대상으로한 인권교육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 청소년기관들은 지방정부의 투자출연기관으로 운영되는 경우들도 많아 이 경우도 지방공기업 인권경영 추진과 더불어 시설운영의 인권주류화를 위한 인권교육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 6.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상 인권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과 시행령 제16조 “장애 인식개선교육”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일반국민, 공무원, 학생, 근로자, 어린이집, 학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식개선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인식개선교육의 내용으로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의 방법을 택할 수 있다.

동법 제59조의4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대한 법령, 신고방법, 보호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 표 2-16 | 장애인복지법의 인권교육 관련 조항

#### Ⅰ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Ⅱ 시행령 제16조 (장애 인식개선 교육)

-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인식 개선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 ④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내용, 방법,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Ⅰ 제59조의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래 생략)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Ⅰ 시행령 제36조의6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내용 등)

① 법 제59조의4제6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6.28.)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 장애인 보호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②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교육을 「아동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2020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이용자 인권교육과 직원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용자 인권교육은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1회 4시간 이상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이용자 인권 권리주장 방법, 인권침해 시 대처요령, 이용자간 인권존중 및 직원 인권존중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 시설장이 이용자 인권교육을 미지원 할 경우 이용자의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인권교육 미지원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통보해야 한다. 미실시 대상자에 대한 시설 자체적인 인권교육의 실행노력과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직원 인권교육은 시설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연2회 8시간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내용에는 시설이용자 인권딜레마 사례, 인권감수성, 인권의 가치, 도전적 행동지원 등을 포함한다. 시설장과 사무국장은 매년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 주관의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교육 미이수 시 전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단,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권위 등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인권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수강으로 대체하고 수수료 및 이수증명이 필요하다. 시설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인권교육의 계획과 실행, 평가자료를 반드시 기록,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 인권교육에 관해 변경된 사항은 인권교육 운영 및 강사의 자격인데 직원 및 이용자 인권교육은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내부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단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 의한 내부교육은 이용자 인권교육 2시간, 직원인권교육 4시간에 한해서만 인정한다. 장애인복지관의 인권교육도 종사자와 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연1회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장애인 대상 인권교육은 장애인특성에 맞추어 내용을 구성하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개별, 그림카드, 애니메이션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장려되고 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이용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사전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들 대상으로 연간 4시간 이상,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간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이용자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같은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성폭력 상담·신고지원을 위한 직업훈련교사들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으로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고, 지역 내 민간 성폭력·성희롱 전문기관과 비상연락망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7.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분야에서는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시설, 노인의료시설, 재가노인시설 중 주·야간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등이 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제6조의3 (인권교육)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2017년까지는 제1항인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의무화 조항만 있었으나 2018년 3월 제2항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이용자 인권교육에 대한 조항을 추가함과 동시에 제3항에 인권교육기관 지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인권교육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정취소나 업무정지에 대한 사항들을 추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보강하였다. 이는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한 관리조항이자 인권교육의 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조항이다.

표 2-17 | 노인복지법 인권교육 관련조항

### Ⅰ 제6조의 3 (인권교육)

-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2018. 3 신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표 2-18 | 노인복지분야 인권교육기관 행정처분 기준 (2018년 신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노인복지법」 제6조의 3 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제4항 1호	지정취소		
나. 법제6조의3제5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노인복지법」 제6조의 3 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제4항 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인복지법」 제6조의 3 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제4항 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동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의무기관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집합교육이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학대 예방교육, 의료인·의료기사·사회복지사 등 보수교육에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교육(1시간)도 학대의무자 교육으로 인정하고 있다.

**Ⅰ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교육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Ⅰ 시행규칙 제29조의16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내용 등)**

- ① 법 제39조의6제4항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2020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서도 노인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인권교육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이며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전직원 모두 인권교육의 대상이 된다. 인권교육기관은「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복지법」제39조의 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법인·단체이다. 인권교육은 연1회 4시간 이상 집합교육, 방문교육, 인터넷교육이 모두 가능하고 인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 이상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표 2-19 |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기관의 역할

기관		역할
노인보호 전문기관	중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 커리큘럼 공동개발</li> <li>인권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li> <li>당해 연도 인권교육 실적 취합 및 보고</li> </ul>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군·구 집합교육 운영</li> <li>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방문교육)</li> </ul>
국가인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교육 방향설정·커리큘럼 및 콘텐츠 개발</li> <li>인권강사양성(필요시)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li> <li>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보수교육 협력 운영</li> </ul>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 커리큘럼 공동개발</li> <li>인권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li> <li>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방문교육)</li> <li>사이버 교육센터(인터넷 교육) 운영</li> </ul>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강사의 자격기준은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시설(기관)의 장으로 인권교육 강사활동에 적합한 사람, 노인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를 담당할 경력에 있는 사람, 보건·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인권교육기관에서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인권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또는 보건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인권교육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 인권교육 강사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인권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강사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강사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인권교육

기관의 보수교육을 매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매년 6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거나 자격취득 후 최근 2년 동안 강의 실적이 없는 경우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강사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인권교육 사업안내를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하고, 시·도에서는 인권교육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시·도의 연간 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권교육내용에는 교육대상자 예상인원, 교육 일정표 및 교육장소(집합교육), 집합·방문 교육 신청방법, 기타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통지한 사업안내와 교육계획을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매년 1월에 안내하고, 인권교육 실시 후 매년 인권교육실적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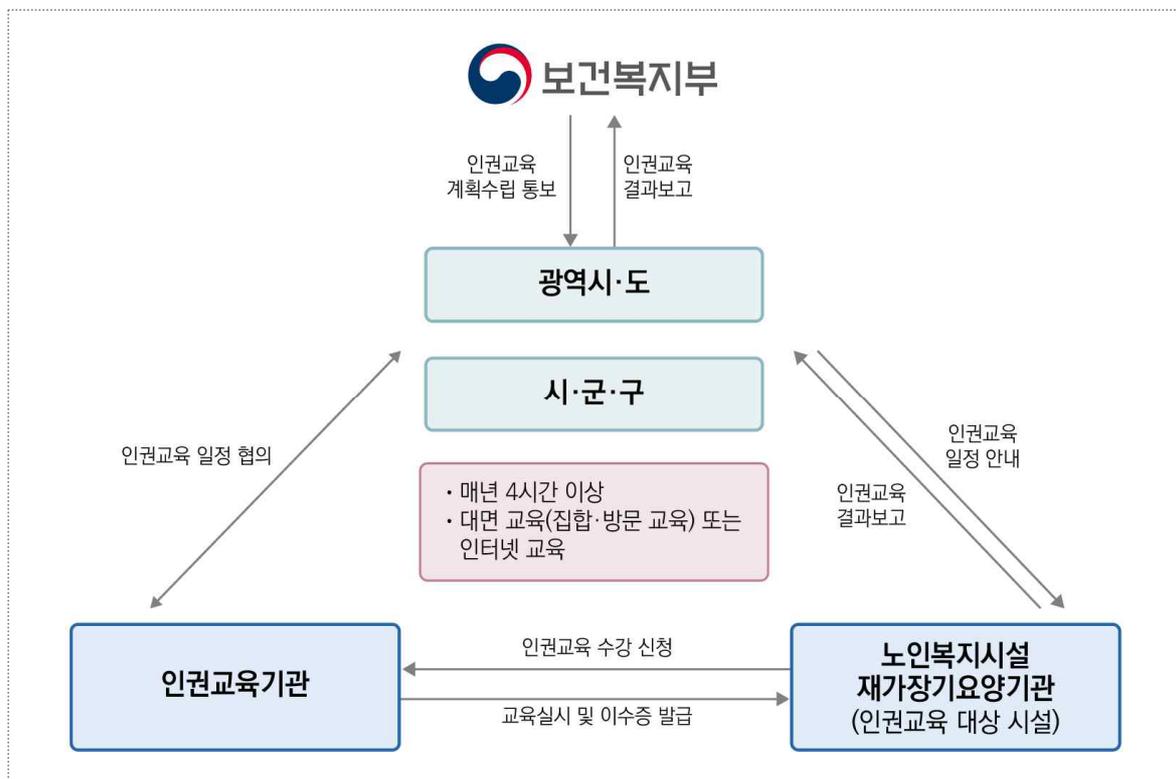


그림 2-1 | 노인복지분야 인권교육

##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의무화 조항이다. 교육수행 주체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한 장애예방, 차별금지, 장애체험교육 등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기관·법인·단체이다.

본조 신설은 2017년 11월에 하였으나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교재보급,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사항들은 2020년 6월에 신설하였다.

### 표 2-2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인권교육 관련조항

#### ■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2020. 6. 9 신설)
- ③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 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2020. 5.26 개정)
-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절 |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현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권교육의 운영주체인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각 분야별 협회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종사자 의무교육 현황자료를 요청하였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시행 주체별 인권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의무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의거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을 제공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운영규정<sup>4)</sup>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관련 규정은 제5조3으로 관련시설 생활인들의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법령 명시 의무교육의 실시, 인권교육 분야별 관계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인권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조항에 의거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2-21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회, 명)

구분		합계	교육과정	방문 프로그램	인권특강	사이버 교육	콘텐츠 공동활용교육
2017	횟수	4,447	494	533	1,968	915	537
	인원	249,428	28,916	10,974	101,482	79,799	28,257
2018	횟수	5,189	427	484	2,116	1,133	1,029
	인원	343,627	19,957	8,542	106,189	165,248	43,691
2019	횟수	6,282	330	556	2,699	1,363	1,334
	인원	445,807	12,527	10,694	107,372	261,505	53,709

\* 출처 : 2019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4)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290호, 2018.7.25. 일부개정

〈표 2-22〉의 국가인권회의 인권교육 실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447회 249,428명에서 2019년 6,282회 445,807명으로 양적으로 급증했다. 프로그램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방문프로그램의 증가비율에 비해 사이버교육과 콘텐츠공동활용교육이 참여인원을 기준으로 각 69.4%, 47.4%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sup>5)</sup>.

인권교육 교육과정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의무교육과정의 수행은 2017년 132회 5,698명에서 2018년 210회 11,635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9년 119회 5,422명으로 감소하였다.

표 2-22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교육과정 운영현황

(단위 : 회, 명)

구분		합계	인권강사 과정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의무 교육과정
2017	횟수	494	92	270	132
	인원	28,916	2,675	20,543	5,698
2018	횟수	427	83	134	210
	인원	19,957	1,572	6,750	11,635
2019	횟수	330	35	176	119
	인원	12,527	864	6,241	5,422

\* 출처 : 2019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와 관련한 사이버 인권교육, 정신건강 및 노숙인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노인시설 법정 의무교육 등의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 인권위원회의 사이버인권교육은 장애차별예방 교육분야에서 2009년부터 사이버 교육이 시행되어 왔던 것 이외에 전무하였는데, 2016년부터 노인, 이주민, 정신장애인 등 영역별 인권에 관련된 교육이 사이버과정으로 개설되어 진행되기 시작해 짧은 시간동안 교육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분야는 노인시설의 인권에 관련된 분야로 2017년에 4,858명에서 2019년에는 110,500명으로 증가하였다. 3년간 총 298,033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이버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정신건강 및 노인시설 법정의무교육(사이버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지 않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은 사회복지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을 포함한 전체대상 교육이기 때문에 전체적 현황 및 추이를 파악하는데만 활용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교육 현황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표 2-23 |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교육 운영현황**

(단위 : 명)

구분	사회복지와 인권	정신장애인과 인권	노인시설 인권	장애인 차별예방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장애인차별예방	이주민과 인권
2017	2,928	6,135	4,858	14,474	6,099	1,855	440
2018	10,238	1,984	11,413	40,701	26,146	3,305	321
2019	9,044	3,971	110,500	27,877	13,869	188	1,687
합계	22,210	12,090	126,771	83,052	46,114	5,348	2,448

\* 출처 : 2019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 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보건복지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건복지분야 법정 의무교육 및 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수행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의 인권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표 2-24>와 같다. 주요 운영교육은 장애인거주시설 및 권익옹호시설에 대한 인권교육과 노인인권 방문교육, 노인인권강사 양성과정 등이다.

**표 2-24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집합교육) 현황**

(단위 : 일, 시간, 명)

연도	교육과정명	일수	교육시간	수료 인원
2017	장애인거주시설인권관점실천(기본)과정	3	20	28
	장애인거주시설인권관점실천(심화)과정	3	20	14
2018	장애인거주시설역량강화과정 -인권관점실천	3	20	35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역량강화과정	5	36	24
2019	노인인권방문교육	1	4	254
	장애인거주시설 역량강화과정 -인권관점실천	3	20	27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역량강화과정	3	18	24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1	8	57
	노인인권강사양성과정(보수)	1	8	58

\* 출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요청자료 (2020.11월 제공)

비대면 교육방식으로서 사이버 인권교육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대상자에 있어 집합교육의 경우 사회복지종사자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사이버교육은 모든 대상에 열려있는 교육이다. 주요 분야는 노인인권, 장애와 인권,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등에 관한 내용이며 2017년 14,156명, 2018년 33,805명, 2019년 501,008명으로 해마다 인권교육 수료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2019년에 노인생활시설과 이용시설, 노인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노인인권교육이 크게 증가하였고, 아동복지실천현장의 인권에 대한 교육이 신규추가 되는 등 교육범위와 대상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2-2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권교육(사이버교육) 현황

(단위 : 명)

연도	교육과정명	수료인원	합계
2017	노인관련시설에서의 노인과 인권	3,313	14,156
	사회복지와 인권	5,915	
	인권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3,572	
	장애인권 및 서비스이용권 보장	1,356	
2018	노인관련시설에서의 노인과 인권	16,720	33,805
	노인인권의 첫걸음(생활시설편)	771	
	노인인권의첫걸음(이용시설편)	605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인권	6,524	
	사회복지와 인권	4,044	
	장애와 인권	3,346	
	장애인인권 및 서비스이용권 보장	1,795	
2019	노인관련시설에서의 노인과 인권	53,534	501,008
	노인인권의 첫걸음(생활시설편)	169,346	
	노인인권의 첫걸음(이용시설편)	230,742	
	노인인권의 첫걸음(방문요양서비스 편)	9,291	
	노인인권의 첫걸음(주야간보호서비스편)	2,921	
	사례로 보는 아동복지실천현장에서의 인권	1,800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인권	6,500	
	사회복지와 인권	8,583	
	장애와 인권	10,409	
	장애인인권 및 서비스 이용권 보장	7,882	

\* 출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요청자료 (2020.11월 제공)<sup>6)</sup>

장애인복지시설의 2017년~2019년의 종사자 의무 인권교육은 종사자 인권교육과 시설장·사무국장 인권교육으로 나누어 진행이 되었으며 시설장 및 관리자교육은 장애인복지시설 지침에서 규정한대로 집합교육의 형태로만 진행되었다. 이용자 및 인권강사 교육을 제외한 종사자 의무 인권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3년간 233회 3,962명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이수하였고, 2017년 96회 1,294명, 2018년 121회 2,348명에서 2019년 16회 320명으로 규모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시설장·사무국장 인권교육의 경우 2017년 14회 839명 교육 수료에서 2019년 25회 1,358명으로 증가하였다<sup>7)</sup>.

**표 2-26 | 장애인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 인권교육현황**

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종사자 인권교육	96회 1,294명	121회 2,348명	16회 320명	233회 3,962명
시설장 인권교육	14회 839명	19회 1,174명	25회 1,358명	58회 3,371명

\* 출처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 내부자료. (2020. 11월 제공)

- 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사이버교육은 대상자가 사회복지종사자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일반시민 등 전체대상 교육임. 자료의 해석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야별 인권교육 현황 자료 수집에는 한계가 있어서 장애인복지시설 협회에서 제공한 종사자 인권교육 현황을 위주로 작성함. 분야별, 시설유형별 현황은 제3장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공하고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보고한 보수교육 연도별 대상은 보수교육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2019년 총 대상자는 113,369명이며 이중 의무대상자는 57,139명이고 의무대상 중 보수교육 이수자비율은 89.6%이다<sup>8)</sup>.

【 표 2-27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연도별 대상자

(단위 : 명)

구분		총 인원(명)	의무대상자	희망대상자
2017	대상자	93,894	48,644	45,250
	이수자	66,280	42,812	23,468
	미이수자	27,614	5,832	21,782
2018	대상자	100,502	52,444	48,058
	이수자	71,196	45,590	25,606
	미이수자	29,306	6,854	22,452
2019	대상자	113,369	57,139	56,230
	이수자	83,820	51,218	32,602
	미이수자	29,549	5,921	23,628

\* 출처 : 201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연간 실적보고서, 2019.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자격의 유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는데, 보수교육 영역에서의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이 필수이수 항목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서 사회복지와 인권영역의 교육은 2017년 278개에서 2019년 1,266개로 시행횟수가 대폭 확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수교육 수료인원도 크게 증가하였다.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의무대상자(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와 희망대상자(의무대상자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사자)를 모두 포함

표 2-28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교육영역별 운영현황

(단위 : 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422	288	1,270
사회복지 실천	585	679	928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	133	105	406
사회복지조사연구	40	12	12
사회복지 행정	216	212	142
사회복지 인권	278	313	1,266
특별분야	743	1,012	1,086
계	2,413	2,612	5,110

\* 출처 : 201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연간 실적보고서, 202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3.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회복지시설평가는 기관 유형별로 3년마다 복지부에서 발표된 평가지표에 따라 영역별로 환산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및 11개 유형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보장 부문에 대한 평가영역에서 인권교육의 시행여부를 반영하고 있다. 인권교육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배점은 5점으로 2016년 평균 3.3점, 2017년 3.8점, 2018년 3.6점, 2019년 3.6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각 시설 유형별 평가점수는 <표 2-29>와 같다. 시설간 차이는 각 개별법과 지침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인권교육의 내용과 필수교육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점수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여지며 이 점수는 100점 환산점수로 변환시 모두 90점 이상에 해당되는 점수로, 인권교육에 대한 전체적 사회복지시설 평가점수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9 |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점수

년도	평균점수 (5점만점)	시설구분			
		아동시설	거주시설	직업재활 시설	
2016	3.3점				
		3.4점	3.5점	2.9점	
2017	3.8점	노숙인 시설	장애인 복지관	정신요양 시설	정신재활 시설
		3.5점	3.9점	3.8점	3.9점
2018	3.6점	노인 복지관	사회 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 시설
		3.8점	3.6점	3.3점	3.7점
2019	3.6점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단기 거주시설	직업재활 시설
		3.9점	3.7점	3.4점	3.4점

\* 자료 : 사회보장정보원 2016~2019 사회복지시설평가 요청자료. (2020. 11월 제공)<sup>9)</sup>

9)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의 인권보장 및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자료는 인권교육 이수 여부 및 수준에 대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각 시설이나 유형간 비교로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자료 해석에 주의를 요함.

---

## 제4절 | 선행연구 동향 및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의 문제점 분석

### 1. 선행연구 동향

사회복지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권교육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인권교육 관련 연구는 학생, 교사 등의 학교 현장이나 공무원, 경찰 등 공공기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관련 연구주제는 교재개발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연구대상도 2011년 ‘도가니 사건’ 이후 장애인거주시설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한정된 경향이 있다.

사회복지를 포함한 전체 분야의 인권교육에 대해 고찰한 연구로는 인권교육의 실태와 질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오세희 외, 2015), <인권교육 평가를 위한 지표> 교재 개발 연구(배경내 외, 2019)가 있다.

오세희 외(2015)의 인권교육의 실태와 질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한 법무, 군, 행정 등 공공분야의 인권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각종 문헌연구에 대한 고찰과 함께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적인 개선과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인권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족,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미흡, 인권교육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기반 구축 부족, 인권교육 진행에 있어 수요자 요구 불응의 문제를 발견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권교육 현안을 포함한 포괄적 법률 개정, 기관수준별 인권교육 법제화, 지방수준의 인권교육 법제화, 인권교육 관련 인프라 고도화, 인권교육 담당 전문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역할 담당, 대상별·기관별 맞춤형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수시간 확대, 통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및 연계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배경내 외(2019)의 <인권교육 평가를 위한 지표> 교재 개발 연구는 인권교육 현장에서 실제 이용 가능한 인권교육 평가방법과 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기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방법 및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와 보건복지 공무원 및 민간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을 대상으로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현재의 인권교육 평가는 참여자의 특성이나 교육 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대부분 획일적인 설문조사 중심의 체계에 의존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 결과가 조직적 차원에서 교육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로 활용되거나 환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평가 시스템의 확충과 다양한 평가 방법에 대한 필요성,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직적 지원을 중요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사회복지분야의 인권교육 현황을 분석한 주요 연구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미옥 외, 2006; 유동철 외, 2013; 변경희 외, 2014), 정신보건시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봉원 외 2014), 사회복지분야 전반의 인권교육을 다룬 연구(신재은 외, 2015; 홍선미 외, 2017)로 구분된다.

김미옥 외(2006)의 장애인생활시설 인권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된 최초의 인권교육 관련 연구이다. 인권과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 내용 정리, 인권 관련 국내외 규정 등을 고찰함으로써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논의되어야 할 인권영역에 대한 기본 틀을 구성하고,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분석하여 수용자 중심의 10종의 인권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연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종사자의 인권교육에 있어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해결 방법, 용어나 호칭 등에 대한 논의, 인권침해 시 대처방법에 대한 내용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인권교재 내에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인권 관련 윤리적 딜레마 사례 소개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 역할극 등을 활용하여 종사자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형식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유동철 외(2013)의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 개발 연구는 실천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참여형 인권교육 교재와 교안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권리구제 방법을 제시하였다. 현장에서 필요한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원칙적 담론을 논하는 내용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당장 활용 가능한 점이라는 점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을 입소단계, 거주단계, 퇴소단계 별로 핵심 요소를 추출하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권장 기준'에 따라 교육 내용을 개발하였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권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학습을 도울 촉진자, 인권학습의 내용, 인권학습의 방법 세 가지 모두 열악한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일회성 교육과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고 있어 현장의 이슈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관계 내의 권력관계와 갈등을 다루지 못해 인권을 어설프게 또는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실천가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한 지속적 교육으로의 전환으로서 참여형 인권

교육을 제시하였다.

변경희 외(2014)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연구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현황을 파악하고, 근무환경에서 직업 수행 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영역별로 분석하여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인권교육에 대한 욕구와 문제점은 인권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 포함되었다.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욕구로 실천현장을 반영한 교육 내용, 근무 경력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 내용, 시설장 인권교육의 필수화, 인권교육 내 책임성 영역 확대가 도출되었다.

이봉원 외(2014)는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현황과 개선방안연구를 진행하였다. 정신보건시설의 인권교육 관련 국내 연구 동향, 인권교육의 제도화, 보건복지부 인권교육체계 등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고 인권교육 실적분석과 종사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조사와 면접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정신보건시설의 인권교육체계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전문교육기관 부족, 자체교육의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외부교육 확대, 반복적인 교육내용, 인권교육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 등을 발견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전문 교육기관 확대와 강사 양성, 국립정신병원과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예산 지원, 자체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법 개선, 교육 이정범위 확대, 중장기적 인권교육 계획 정비, 주제·전문영역별 교육교재 개발,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행동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 전문가 단체 육성을 이끌어냈다.

신재은 외(2015)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연구는 경기도 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의식, 인권교육 경험과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교재를 개발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경험과 욕구에 대한 연구결과, 인권교육의 양적수치는 증가하였으나 질적인 효과성은 부족하며, 인권교육이 현장에 다소 도움은 되나 활용도가 떨어지고, 교육내용과 방식의 유사성과 비현실성이 문제로 지적되어 매뉴얼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하고 심화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인권교육 교재 개발과 보급 확대, 인권교육 강사 양성 지원, 소규모 사례중심 교육방법 활용을 제안하였다.

홍선미 외(2017)는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사회복지현장에서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을 교육대상, 교육주체,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효과의 기준으로 현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인권교육의 효과성 제고

와 기반구축을 위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교육 주관·위탁·심사·실시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관리 주체의 부재로 인한 낮은 교육만족도, 집합교육을 통한 수동적인 교육방식과 80명 이상의 대형 강의의 진행으로 인한 인권교육의 효과성 달성의 어려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강사의 역량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대상-유형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전문화된 인권교육 성과지표의 구성 및 개발, 교육관리체계 구축 및 확대, 의무교육 범위 확대 및 제도화, 유관기관 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육기반 확충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 2.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의 문제점 분석

사회복지분야의 인권교육은 크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인 인권교육과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인 보수교육 내의 인권교육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개별법에 기반하여 장애인 인식교육,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인권관련 교육들이 실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인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2-30〉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권교육 관련 8개 법률에서의 인권교육의 명칭, 교육시간, 운영주체 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특히 2018년 이후 개별법 상 인권교육에 관한 추가 조항이 신설되었거나, 2018년~2020년까지의 분야별(아동, 노인, 정신건강,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사업지침 상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시설마다 적용되는 법률과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 평가지침 등에 따라 인권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문제점을 분석함에 있어 〈표 2-30〉을 기준으로 인권교육의 명칭과 목적 및 인권교육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 여부, 교육추진체계,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대상 및 시간, 예산지원여부, 강사자격 및 강사양성과정, 교육미이수에 대한 처벌규정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표 2-30 |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 법률 및 지침 정리

법률명	인권교육종류	시간	교육기관	2018년 이후 추가사항
정신건강증진법	인권교육	연1회 4시간 이상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전문교육기관	·시설장/종사자대상 구분교육 ·강사자격에 대한 지침 추가(21시간 양성교육, 8시간 보수교육)
노숙인복지법	인권교육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연1회 4시간 이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금지 조항신설 ·인권교육미 실시 및 불리한 처우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사회복지사업법	인권교육 보수교육	4시간 8시간	시설평가주체 사회보장정보원	·외부강사 기준 강화 ·이용자대상인권교육은 집합교육만 인정 ·사회복지관 5시간이상 인권교육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교육포함)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아동복지단체나 교 육훈련시설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등	·교육참여 종사자 교육비와 여비 지 원규정 추가
청소년복지법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15시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한국청소년활동진 흥원, 관련 기관· 단체에 위임	·보수교육 의무화 ·인권교육 대상과 시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성범죄신고 의무자 교육	연1회 이상 (시간규정 x)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복지사업지침상 인권교육 ·장애인 거주시설 : 이용자인권교육 4시간, 직원인권교육 8시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이용자 2시간 직원 4시간
노인복지법	인권교육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1시간	국가인권위원회,한 국보건복지인력개 발원 등	·이용자인권교육 실시 조항추가 ·인권교육기관 행정처분기준 신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고용노동부장관 위탁 지정기관	·교육결과 점검, 교재보강, 교육 내 용 방법에 대한 사항 신설

1) 인권교육의 명칭(종류)과 목적에 따른 명확한 분류 필요

사회복지종사자 인권교육 관련 8개 법률에서의 인권교육의 명칭은 인권교육, 노숙인 인  
권침해 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  
애인성범죄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등 다양하다. 인권교육의 명칭과 그 교육이 목적하는 바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인식교육, 노인학대·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자 교육도 인권교육의 범주에 속하지만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인 인권교육과 장애인 인식, 노인학대,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등을 특정하는 인권교육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2021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서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포함하여 인권교육을 진행(5시간이상)하도록 명시하므로 포괄적 인권교육의 일부로 특정목적으로 한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인권교육 현안을 포함한 포괄적 법률이 필요하다.

## 2) 인권교육에 대한 명확한 지침, 평가기준 마련 필요

사회복지사업법은 포괄규정이고 개별법에 인권교육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된 경우는 정신건강증진법, 노숙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이다. 아동복지법에는 인권교육에 대한 언급은 없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만 법정의무교육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평가 지표에는 인권교육에 대한 지침이 있으며, 2018년까지는 아동간, 아동과 직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만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경우는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지침이 있고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 수행기관(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기관 등)이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고 종사자와 시설장 교육도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라 시간, 교육내용, 교육수행기관(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있다. 반면에 아동복지시설·복지관등은 평가지침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사업안내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인권교육지침과 같이 분야별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인권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수행기관, 종사와 시설장 교육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담아내는 인권교육지침과 통일된 기준으로 한 평가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3) 체계화된 인권교육 추진시스템 마련

선행연구에서도 국내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은 교육관리주체의 부재, 획일화되지 않는

평가지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법, 노숙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서는 인권 교육 수행 체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기관도 지정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의 시설의 경우는 체계적인 인권교육추진 체계가 없다. 정신건강증진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교육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전문교육기관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이 인권교육협회회를 구성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평가, 인권강사양성과정, 콘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증진법, 노숙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결과보고를 받는 보고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다. 그 밖에 시설의 경우는 특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평가에는 인권교육시행여부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나 일부 지자체의 지원을 받거나 관련 시설 협의회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또는 영역별로 인권교육에 대한 정보접근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 인권교육이 추진체계가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

#### 4) 인권교육내용에 대한 명확한 제시 필요, 풍부한 교육내용을 담아낼 교육자료 필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경우는 「정신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0조를 근거로 환자의 인권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노숙인 시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구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 밖에도 노숙인 시설의 경우는 타 복지시설에서 이수한 인권교육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19년 실시한 아동생활시설과 2020년 실시한 장애인복지관은 직원의 인권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고 그 내용은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는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직원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시설 이용자 인권딜레마 사례, 인권감수성, 인권가치, 도전적 행동지원 등이 포함되

도록 하고 있다. 2021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의하면 직원 인권교육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거주시설과 사회복지관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시설별로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에 대해 개별법, 또는 평가지침, 사업안내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그마저도 없는 경우가 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서는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실천, 정책 등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참고하여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내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반복적이고 비현실적인 교육을 넘어서 수 있도록 교재개발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5)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대면, 사이버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

교육방법으로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대면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나뉘볼 수 있고, 대면교육의 경우도 외부교육기관이 주관하는 것을 참여할 것인지 자체 기관에서 자체 수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기관에서 방문해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각 시설별로 기준도 다르고 여건도 다른 상황이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전문교육기관에 의해 다양한 교육요구를 반영하여 소집교육, 방문교육, 사이버교육을 제공하며 종사자와 시설장에 따라 교육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2020 장애인시설사업안내에는 교육의 중요성 및 교육의 효과를 위해 소집단교육과 대면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외부 인권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참여를 우선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다른 기관들과 구별된다. 교육방법 역시 시설별로 다른 기준이 존재한다. 영역별로 교육체계가 다르고 자원이 상이하다 보니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인권교육은 장애인시설사업안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방향의 사이버교육보다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대면교육, 대면교육 중에서도 소집단 교육이 더 효과적이다. 집합교육이 어려운 지역이나 시설의 경우는 방문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시설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사례중심의 교육을 포함하여 각 시설의 특성과 대상에 따른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당면하고 있는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종사자가 스스로 자력할 수 있는 교육이 실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애정을 갖고 설계하고 진행할 담당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교육진행 방법에 의한 분류는 2020년 평가를 시행한 장애인복지시설, 2021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의하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교육(UCC, 인권영화, 인권영상 등), 전문강사에 의한 인권교육(on-off line 모두 가능), 인권관련 기관 탐방 등(단, 교육내용 및 교육자료는 장애인 인권이 아니라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보장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온라인 교육 및 동영상자료의 경우 출처 등을 제시하여야 함)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인권교육은 단순히 시청각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접목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인권전문 강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느 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 6) 교육대상(시설장과 종사자)별 차별화된 교육 필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경우는 2018년 지침을 변경하여 시설장교육과 종사자 인권교육을 구분하고 진행하고 있다. 시설장의 교육은 시설규모에 따라 교육기관을 달리 지정하고 있으며, 연간 4시간 이상 소집교육으로 제한하고 있다. 종사자는 소집, 방문, 사이버교육을 선택할 수 있으며 총 4시간 이상이다. 노숙인시설의 경우는 시설장, 신규종사자, 시설종사자를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시설의 경우 시설장과 사무국장은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주관의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의 인권책무를 위임받아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인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시설장의 인권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시설장, 관리자그룹과 실무자그룹으로 나누어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며, 노숙인시설과 같이 신규종사자교육은 관련 협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시설의 경우와 같이 시설장과 사무국장(최고중간관리자)는 의무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종사자의 경우는 직무별, 역할별, 근속년수별 차별화된 인권교육도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 7) 평가기준으로 제시된 인권교육 시간에 한정된 교육

정신건강증진시설과 노숙인시설은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시설장과 종사자 모두 총 4시간 이상 교육을 들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에 의하면 2019년 실시한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년 1회 이상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2020년 평가를 실시한 장애인거주시설은 년 2회 이상 8시간,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년1회 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2021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의하면 년 5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되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1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교육시간도 시설별로 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모든 시설의 인권교육시간을 통일할 필요는 없지만 조직운영과 사회복지실천에 인권적 가치를 담아 낼 수 있으려면 4시간 교육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본다. 시설별로 의무교육이 많아 교육피로도를 느끼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 우려가 되지만 최근 사회복지시설 인권경영 추진의 흐름 등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인권교육을 수행한 기관들이 늘어날 것이다. 2020년 경기복지재단이 시행한 '인권친화시설만들기 사업'의 경우는 인권교육자문으로 진행된 시설들은 최대 21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이 진행되었다. 평가기준으로 제시된 시간은 최소한의 기준임을 인지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이 설계되고 실시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강사파견 등 추가적인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인권교육 성과지표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8) 인권교육 예산 지원

「정신보건법」 제70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위해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2017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이후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예: 수원시)는 인권기본조례에 의거하여 인권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극소수이다.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여력과 인권교육강사풀이 없는 지역의 경우는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예산을

지원하거나 인권강사를 파견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예산지원은 지자체 단위 또는 정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9) 인권교육강사자격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최근 3년 이내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정신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국가인권위원회, 구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 또는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무원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에서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다른 영역보다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와 당사자 가족이 보조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 2021년 복지관평가기준에는 집합교육시 직원 인권교육 외부강사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인권교육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한정하며 내부직원이 실시할 경우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 한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2019년 실시한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외부강사 기준은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인권교육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의하면, 직원인권교육은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권교육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내부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총 4시간에 한해서만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권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강사를 검증하는 절차로 그 자격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필요하나 그 적절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인권교육을 진행할 수 있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들도 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라도 인권교육을 강의하

려면 일정 시간이상의 기본 교육을 듣고 인권강사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복지현장에 인권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사양성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공식적으로 인권강사를 양성하는 기준이나 제도가 제한적이다. 정신건강증진시설과 노숙인 시설, 노인복지시설과 같이 개별법령이 있는 경우만 강사양성교육에 대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교육의 중요성 만큼 강사양성과정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경우는 강사양성과정이 21시간 진행하고 있으며, 보수교육 8시간과 자격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2년내 1회 이상의 강의를 의무화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인권아카데미(100시간), 국가인권위원회 강사양성과정 이수시간 159시간(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중 인권강사양성과정 교육프로그램 예시기준)등의 기준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성 있는 인권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10) 인권교육 미실시에 따른 통일된 기준 마련

노숙인복지법에서는 인권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과 인권교육미실시 및 불리한 처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시설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마련의 차원에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노숙인 시설의 경우는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교육참여시간과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교육출강, 공가, 시간외 근무 중 선택하여 근태를 처리하며, 인권교육이수에 필요한 경비(일비, 교통비, 숙박비 등) 전액을 지급하도록 지침에 권고하고 있다. 장애인시설의 경우 시설장과 사무국장은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 주관의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을 미이수한 경우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와 무관하게 추가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11) 선행연구 부족, 모니터링 부재로 인한 인권교육 실태 파악의 한계, 지원시스템 필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고 모니터링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인권교육의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주기

적으로 인권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각 시설이 처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인권교육통합관리시스템과 같이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교재발간 보급, 강사풀 운영 등 전문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운영될 필요가 있겠다. 사회복지시설 전반의 인권교육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대상별, 영역별 전문교재를 개발하고 실질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개별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정신건강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숙인 시설만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 제3장

# 인권교육관련 실태조사 결과



# 제3장 인권교육관련 실태조사 결과

---

## 제1절 | 연구방법

### 1. 조사 개요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인권교육의 개별적인 운영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문지는 인권교육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문항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여시설의 일반적 특성, 의무 인권교육에 대한 기초정보, 2019년도에 실시된 인권교육의 일반적 특성 및 시설자체 교육과 외부교육별 구체적 현황 및 내용,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연계된 의무 인권교육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응답자 인적사항의 영역으로 나누어 모두 42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23,892개<sup>10)</sup>의 사회복지시설이다. 연구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인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과 같은 무작위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조사대상기관이 선정되어야 하지만, 제한된 연구기간 동안 인권교육 현황에 대한 첫 번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 보수교육 의무 대상 시설로 등록된 전국의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22,115개<sup>11)</sup>를 대상으로 유의표집과 편의표집을 실시하였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대상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1항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이며,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대다수(90%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설문지 발송은 의무 보수교육

10)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사회복지시설현황 2020년 11월 기준

1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2020년 11월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현황으로 등록된 23,761개소가 등록되어 있음

대상기관으로 등록된 시설 가운데 정보 및 소식공유, 연구조사를 위해 기관의 대표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을 동의한 18,977개 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서베이 몽키(Survey Monkey)사이트의 설문지 링크를 보내어 2020년 11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제한된 시간 동안 링크를 확인하고 설문에 응답한 시설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내용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수행되는 의무 인권교육과 관련된 구체적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고려해, 설문 응답을 시설 내 ‘인권교육’ 담당자, 시설의 중간관리자, 또는 최고관리자가 하도록 안내하였고, 각 시설 당 1부씩 응답하도록 하였다.

배포한 설문지 18,977부 가운데 5,576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29.3%였으며, 이 중 각 문항별로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완료되지 않은 2,378부를 제외하였고, 최종 분석에는 3,198개 기관의 응답이 사용되었다.

### 3. 모집단과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 사회복지시설 23,432개소<sup>12)</sup>이다.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회복지시설 중 약 48.7%가 노인복지시설이며, 아동복지시설은 23.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은 16.8%, 정신보건시설은 1.8%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표의 내용과 같다.

【 표 3-1 】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의 지역별 분포 현황

구분	노인복지 시설	아동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보건 시설	노숙인 시설	사회 복지관	지역 자활센터	결핵한센 인시설	총합계
서울	1,514	748	677	122	51	102	32	1	3,247
부산	391	299	206	23	12	54	18	-	1,003
대구	466	254	163	19	10	29	10	1	952
인천	761	226	171	14	6	20	11	-	1,209
광주	345	365	162	16	2	20	10	-	920
대전	308	190	182	33	8	23	5	-	749
울산	143	89	98	3	1	9	5	-	348
세종	39	19	21	4	1	2	3	-	89
경기	3,223	1,110	774	67	21	91	33	2	5,321

1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사회복지시설현황 11월 기준이며, 주소 비공개 시설은 제외하였음  
(<http://www.w4c.go.kr/intro/introFcltMainSttus.do>)

구분	노인복지 시설	아동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보건 시설	노숙인 시설	사회 복지관	지역 자활센터	결핵한센 인시설	총합계
강원	610	231	185	4	7	21	20	-	1,078
충북	518	253	184	15	4	14	14	-	1,002
충남	577	312	157	34	1	21	14	-	1,116
전북	553	381	184	30	5	17	22	-	1,192
전남	697	471	195	7	7	16	24	1	1,418
경북	759	334	283	26	5	16	22	1	1,446
경남	627	344	288	9	4	32	23	1	1,328
제주	109	85	88	7	3	10	4	-	306
총합계	11,640	5,711	4,018	433	148	497	270	7	22,724

표 3-2 |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의 지역별 분포 현황

구분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가정폭력 보호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총합계
서울	12	17	29	14	0	23	95
부산	5	8	10	6	5	7	41
대구	3	5	5	6	1	8	28
인천	2	6	8	6	4	9	35
광주	3	6	8	3	4	2	26
대전	3	5	5	3	3	3	22
울산	2	5	3	2	5	5	22
세종	0	2	0	0	0	1	3
경기	9	25	35	9	17	29	124
강원	2	9	11	2	3	16	43
충북	2	7	7	2	3	10	31
충남	3	12	12	3	3	8	41
전북	2	8	8	4	2	12	36
전남	5	10	13	4	2	19	53
경북	2	11	10	7	2	14	46
경남	2	11	14	3	4	15	49
제주	2	3	2	2	2	2	13
총합계	59	150	180	76	60	183	708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 등록된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표본틀 (Sampling frame)로 사용하여, 유의표집과 편의표집으로 조사대상자를 추출하였다. 사회복지

지사 보수교육은 전국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정 의무 교육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의무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90% 이상에 해당되는 기관에 설문 링크를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거나 일부 장기재가요양시설 및 신규 개관 시설 등은 포함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또한 보수교육 대상 사회복지종사자가 근무하는 전국의 기관에 설문 링크를 보내고, 정해진 기간(2020년 11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설의 설문자료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표 3-1>과 <표 3-2>에서 볼 수 있는 모집단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별, 시설유형별 분포 특성이 표본에 반영되도록 배분하는 다단계 집락과 층화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고, 정해진 기간에 설문링크를 확인하고 응답한 시설의 자료만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표본의 대표성이 높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와 같은 전국 실태조사에서는 지역과 시설유형별로 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이 연구에 포함되도록 할당하는 절차를 통해 다양한 지역과 시설의 현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파악될 수 있어야 하지만, 제한된 연구기간 동안 체계적인 표본설계에 따른 자료수집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제2절 | 연구결과

### 1. 분석결과

#### 1) 시설 유형 및 세부종류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3,198개 시설의 유형 및 세부종류를 분석한 결과, 이용시설이 53.5%(n=1,710)로 생활시설 46.5%(n=1,488)보다 연구에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3 】 시설 유형

구분	빈도(n)	비율(%)
생활시설	1,488	46.5
이용시설	1,710	53.5
합계	3,198	100

조사 대상 기관의 소관부처와 대상자 별 시설 종류 현황은 <표 3-4>와 같다. 소관 부처 별 분포는 '보건복지부'의 비중이 94.4%(n= 3,020)로 여성가족부(178개, 5.6%) 보다 높았다.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참여자가 33.5%(n= 1,072)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조사 참여자가 28.1%(n= 899), '아동시설'에 근무하는 참여자는 23%(n= 73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중에서는 '가정폭력보호시설' 1.6%(n= 5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n= 3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0.9%(n= 28) 순으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 표 3-4 】 소관 부처 및 대상자 별 시설 종류

소관 부처	시설종류	빈도(%)	소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1,072(33.5)	3,020(94.4)
	아동복지시설	737(23.0)	
	장애인복지시설	899(28.1)	
	정신보건시설	101(3.2)	
	노숙인시설	49(1.5)	
	사회복지관	128(4.0)	

소관 부처	시설종류	빈도(%)	소계
	지역자활센터	34(1.1)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18(0.6)	178(5.6)
	성폭력피해보호시설	25(0.8)	
	가정폭력보호시설	51(1.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8(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1(1.0)	
	청소년복지시설	25(0.8)	
합계		3,198(100.0)	

## 2) 시설 일반현황

조사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표 3-5>에서 제시된 것처럼, '경기'가 18.6%(n= 594)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15.3%(n= 490), '경북'이 7.1%(n= 228)로 뒤를 이어 높게 나타났다. 가장 적은 수의 시설이 포함된 곳은 '울산' 2.3%(n= 72)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대전' 3.6%(n= 115), '광주' 3.9%(n= 126) 순 이었다.

표 3-5 | 시설 소재지

구분	빈도(n)	비율(%)
서울	490	15.3
부산	185	5.8
대구	150	4.7
인천	155	4.8
광주	126	3.9
대전	115	3.6
울산	72	2.3
경기	594	18.6
강원	163	5.1
충북	145	4.5
충남	151	4.7
전북	167	5.2
전남	209	6.5
경북	228	7.1
경남	173	5.4
제주	57	1.8
세종	18	0.6
합계	3,198	100.0

조사대상 시설의 운영주체 현황은 <표 3-6>과 같다. '사회복지법인'이 41.8%(n= 1,33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개인운영' 30.9%(n= 987), '사단법인' 12.8%(n= 21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6 | 운영주체

구분	빈도(n)	비율(%)
사회복지법인	1,336	41.8
사단법인	210	12.8
재단법인	217	6.8
학교법인	29	0.9
의료법인	12	0.4
종교법인	65	2.0
비법인민간단체	56	1.8
개인운영	987	30.9
국립·지방자치단체	28	0.9
기타	58	1.8
합계	3,198	100.0

설문에 응답한 시설의 현황을 설립 년 수, 종사자 수, 이용시설 일일 이용 실인원, 생활시설 입소인원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3-7>과 같다. 시설의 설립 년 수는 평균 14.70년(표준편차=13.46) 이었고, 42.3%(n= 1,348)가 설립된 지 '11년 이상 20년 이하'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총 수의 경우 '5인 이하'로 구성된 시설의 수가 37.8%(n= 1,1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 밖에도 '6~10인' 이 17.2%(n= 530), '11~20인' 이 17.2%(n= 531)를 차지하여 주요한 응답 범주를 구성했다. 시설의 평균 종사자 수는 16.44명(표준편차=19.64)으로 분석되었다. 이용시설의 일일 이용 실인원은 조사 참여자의 약 70%(n= 1,123)가 하루 1~49명이 이용한다고 하였으며, 하루 평균 이용 실인원은 203.11명(표준편차=550.98) 이었다. 생활시설 입소 인원의 경우에도 가장 높은 범주는 '1명~49명' 이었는데, 전체 생활시설의 77.2%(n= 1,116)가 이에 해당되었다. 입소인원이 '50~99명' 범주에 해당된다고 응답한 기관도 약 20%(n= 255)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생활시설 입소인원은 평균 38.88명(표준편차=101.02)으로 분석되었다.

표 3-7 | 시설 현황

변수	범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변수	범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시설설립 년 수	5년 이하	586(18.4)	14.70 (13.46)	종사자 총 수	5인 이하	1,168(37.8)	16.44 (19.64)
	6~10년 이하	568(17.8)			6~20인	1,061(34.4)	
	11~20년 이하	1,348(42.3)			21인 이상	857(27.8)	
	21~30년 이하	406(12.7)			합계	3,086(100.0)	
	31년 이상	279(8.8)					
	합계	3,187(100.0)					
이용시설 일일 이용 실인원	1~49명	1,123(69.2)	203.11 (550.98)	생활시설 입소 인원	1~49명	1,116(77.2)	38.88 (101.02)
	50~99명	103(6.3)			50~99명	255(17.6)	
	100~299명	143(8.8)			100~299명	70(4.8)	
	300~499명	72(4.4)			300명 이상	5(0.3)	
	500명 이상	182(11.2)			합계	1,446(100.0)	
	합계	1,623(100.0)					

### 3) 설문응답자 인적사항

설문지에 응답한 종사자의 성별은 전체 3,198명 중 여성이 66.5%(n= 2,127), 남성이 33.5%(n= 1,070)로 여성의 비중이 높았다. 연령은 평균 44.11세(표준편차=10.01)이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가 34.2%(n= 1,08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26.3%(n= 836), 50대가 24.6%(n= 784)로 뒤를 이었다.

직급의 경우 최고관리자(시설장)가 30.1%(n= 961)로 가장 많았고, 중간관리자(과장/팀장급) 25.4%(n= 811), 상급관리자(사무국장/부장급) 18.7%(n= 597), 실무직원(직위가 없는 직원) 18.4%(n= 588)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직무는 사회복지직(생활지도원 포함)이 84.1%(n= 2,69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일반직·사무직이 10.0%(n= 319), 기능직·시설관리직이 3.2%(n= 10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8 | 설문 응답자 인구사회학적·기관 내 역할 특성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	1,070	33.5
	여	2,127	66.5
	기타	1	0.0
	합계	3,198	100.0

구분		빈도(n)	비율(%)
연령	20대	264	8.3
	30대	836	26.3
	40대	1,089	34.2
	50대	784	24.6
	60대 이상	209	6.6
	합계	3,182	100.0
직급	최고관리자(시설장)	961	30.1
	상급관리자 (사무국장/부장급)	597	18.7
	중간관리자(과장/팀장급)	811	25.4
	초급관리자(선임/대리급)	194	6.1
	실무직원 (직위가 없는 직원)	588	18.4
	기타	47	1.5
	합계	3,198	100.0
직무	사회복지직(생활지도원 포함)	2,691	84.1
	일반직, 사무직	319	10.0
	기능직, 시설관리직	101	3.2
	보건의료직	29	0.9
	기타	58	1.8
	합계	3,198	100.0

#### 4)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기초정보

조사대상 시설이 인권교육 시행의 바탕이 되는 근거법률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근거법률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86.4%(n= 2,863)로 ‘모른다’는 응답 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표 3-9〉).

【 표 3-9 】 인권교육 시행의 근거법률 인지 여부

구분	빈도(n)	비율(%)
알고 있다	2,763	86.4
모른다	435	13.6
합계	3,198	100.0

인권교육 시행의 법률적 근거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 2,763개를 대상으로 어떤 법률에 근거해 의무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표 3-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복지사업법’ 43.0%(n= 1,189), ‘국가인권위원회법’ 35.3%(n= 976), ‘노인복지법’ 26.9%(n= 744), ‘아동복지법’ 21.8%(n= 602), ‘장애인복지법’ 21.7%(n= 59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1%(n= 418), ‘정신보건법’ 6.1%(n= 16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2%(n= 116), ‘청소년기본법’ 2.8%(n= 7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5%(n= 68) 순으로 나타났다. 본 응답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면서 법률적 근거로 ‘인식하고 있는’ 법률로서 실제 시설에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행하도록 강제하는 법 체계와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

【 표 3-10 】 시설에서 인식하는 인권교육 시행 근거 법률(중복응답)

구분	빈도(n)	비율(%)
국가인권위원회법	976	35.3
정신보건법	168	6.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68	2.5
사회복지사업법	1,189	43.0
아동복지법	602	21.8
청소년기본법	76	2.8
장애인복지법	599	21.7
노인복지법	744	26.9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116	4.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18	15.1

\* n= 2,763

\* 중복응답 되어 빈도와 백분율을 더한 총합은 분석된 사례수를 초과함

또한 시설에서 진행해야 하는 의무 인권교육의 근거 법률이 2개 이상이라고 응답한 1,358개 시설을 대상으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의무교육을 별도로 진행하는지 확인한 결과, 75.8%(n= 1,029)의 시설에서 근거 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각각 따로 진행한다’고 응답했으며, 24.2%(n= 329)는 분리하지 않고 ‘함께 진행한다’고 하였다(<표 3-11>).

표 3-11 | 근거 법률 중복 시, 인권교육 방법

구분	빈도(n)	비율(%)
각각 따로 진행	1,029	75.8
함께 진행	329	24.2
합계	1,358	100.0

\* n= 1,358(인권교육 시행의 근거 법률을 인지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법에 근거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근거법률이 복수일 경우 각각의 법령에 따라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1,358개 기관이 어떤 유형의 기관인지 분석한 결과,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권교육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2개 이상이라고 응답한 지역자활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모두 별도의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관련시설,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청소년복지시설도 80% 이상이 별도의 교육으로 진행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따라서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합쳐서 진행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기관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절반 이상(54.4%)의 시설이 복수의 근거 법률이 명시하는 내용을 합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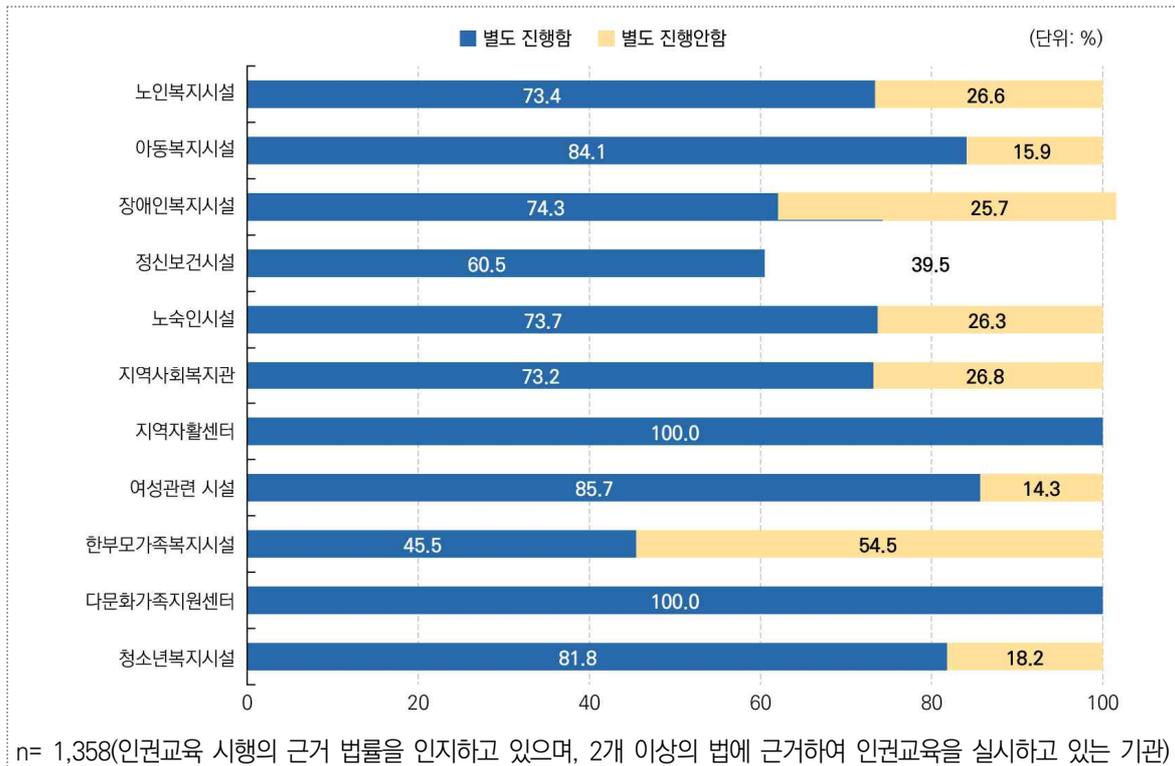


그림 3-1 | 시설유형별 복수의 근거법률에 따른 인권교육의 운영 방식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지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시설의 86.5%(n= 2,765)가 지정되어 있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시설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표 3-12 】 시설 내 인권교육 업무 담당자 지정 여부

구분	빈도(n)	비율(%)
지정되어 있음	2,765	86.5
지정되어 있지 않음	433	13.5
합계	3,198	100.0

시설 연간 운영계획서에 인권교육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다수인 92.4%(n= 2,965)의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연간계획에 인권교육을 포함하지 않는 시설은 7.6%(n= 242)에 불과하였다(〈표 3-13〉).

【 표 3-13 】 시설 연간 운영계획서 내 인권교육 계획 포함 여부

구분	빈도(n)	비율(%)
포함	2,965	92.4
미포함	242	7.6
합계	3,198	100.0

### 5)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현황 파악

지난 2019년 1년간 시설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진행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표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 시설 3,198개 가운데 거의 모든 시설인 2,953개소(92.3%)에서 인권교육을 진행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245개 시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현행 직무교육에 유사 교육과정이 있다’는 응답이 31.8%(n= 78)로 가장 많았고, 상급기관의 지침이 없다고 응답한 기관은 22.0%(n= 54), 인권교육을 진행할 인력이 부족해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 기관은 12.2%(n= 30) 이었다. 기타에 응답한 기관도 110개(44.9%)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기타 의견 가운데는 ‘2020년에 개관한 신규시설’로 2019년 의무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설명이 가장 많았다.

표 3-14 | 2019년 1년 간 인권교육 진행 여부

구분	빈도(n)	비율(%)	인권교육의 미 실시 사유(중복응답)
진행함	2,953	92.3	<p>상급기관 지침 없음 22.0%</p> <p>시설통사자 요구없음 6.9%</p> <p>현행 직무교육에 유사 교육과정 있음 31.8%</p> <p>관리자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 2.4%</p> <p>교육진행 예산 부족 9.0%</p> <p>교육진행 인력 부족 12.2%</p> <p>기타 44.9%</p>
진행하지 않음	245	7.7	
합계	3,198	100.0	

\* n= 245  
중복응답 되어 빈도와 백분율을 더한 총합은 분석된 사례수를 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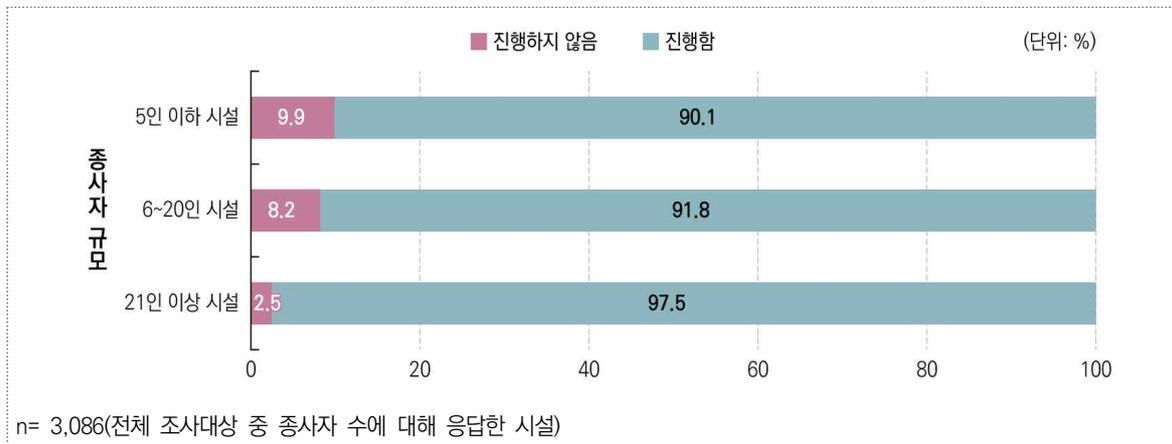


그림 3-2 | 종사자 규모별 2019년 인권교육 진행 여부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시설의 규모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종사자 규모별로 2019년 인권교육 실시여부 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인 이하 시설의 9.9%가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반면, 21인 이상 시설의 경우 2.5%만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사자가 규모가 큰 시설이 규모가 작은 시설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인권교육을 더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chi^2(2)=43.22$ ,  $p<.001$ ).

조사대상 시설이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3-15>와 같다. 불이익을 '알고 있다'는 경우가 52.4%(n=

1,675)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절반에 가까운 47.6%의 기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15 | 인권교육 미실시 받는 불이익 인지 여부**

구분	빈도(n)	비율(%)
알고 있음	1,675	52.4
모르고 있음	1,523	47.6
합계	3,198	100.0

한편,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그 결과 실제로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기관(98.8%, n= 3,160)이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였으며, 단 1.2%(n= 37)의 응답 시설에서만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표 3-16 | 인권교육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경험 여부**

구분	빈도(n)	비율(%)
있음	37	1.2
없음	3,160	98.8
합계	3,197	100.0

지난 2019년에 인권교육을 실시한 시설에 교육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질문한 결과, '외부 교육에 참여'한 비율이 41.1%(n= 1,214)로 가장 높았으며, '외부교육과 시설 자체 교육을 병행'했던 비율이 35.1%(n= 1,035), '시설 내 자체 진행'은 23.8%(n= 703)로 나타났다.

**표 3-17 | 2019년 1년 간 인권교육 진행 방법**

구분	빈도(n)	비율(%)
외부교육 참여	1,214	41.1
시설 자체 진행	703	23.8
외부교육 + 시설 자체 교육 병행	1,035	35.1
합계	2,95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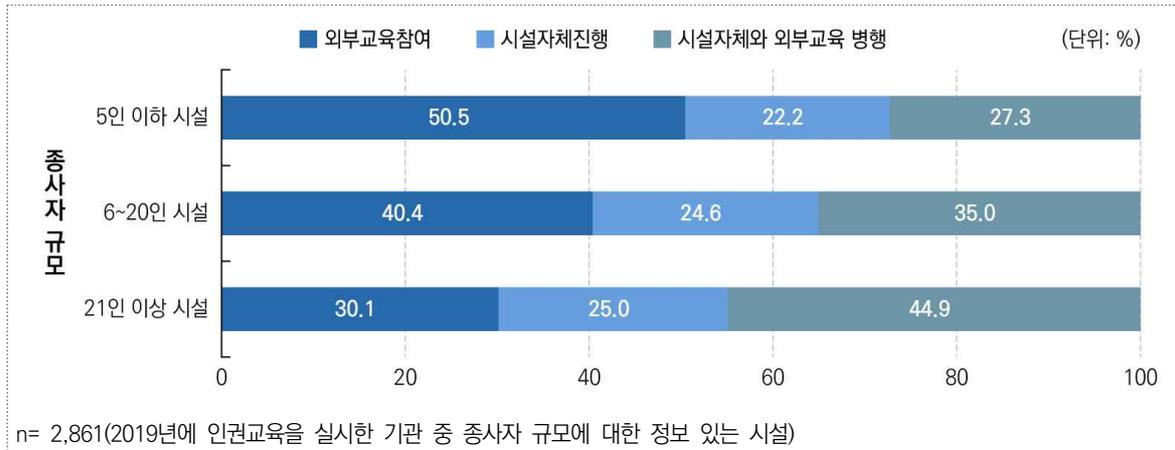


그림 3-3 | 종사자 규모별 2019년 실시된 인권교육의 진행방식

인권교육을 진행한 방식이 시설의 종사자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는 <그림 3-3>과 같다. 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시설과 비교하여 외부교육으로 의무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 높았는데, 종사자 규모가 5인 이하 시설의 절반 이상(50.5%)이 외부교육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진 반면, 21인 이상 규모의 시설에서는 30.1%가 외부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인권교육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자체 교육과 외부교육을 병행해서 교육을 진행한 경우도 5인 이하 규모의 시설(27.3%)보다 21인 이상 종사자가 근무하는 시설(44.9%)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chi^2(2)=43.22$ ,  $p<.001$ ).

### 5-1) 내부 인권교육 실적

<표 3-18>은 내부 인권교육의 현황으로 연간 횟수, 연간 총 참여시간, 회당 평균 교육시간, 회당 평균 참여인원, 총 수료인원에 대해 조사되었다. 내부 인권교육이 진행되는 연간 횟수에 대해서는 연간 '1회' 진행한다고 응답한 기관이 44.2%(n= 89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연간 '2회'라고 응답한 경우가 32.5%(n= 657)로 나타나 그 뒤를 이었다. 연간 평균 교육횟수는 2.49회(표준편차= 3.56)로 분석되었다.

연간 총 참여시간의 경우에는 '3~4시간'의 비중이 29.9%(n= 593)로 가장 높았는데, 다음으로 '5~9시간'이 22.5%(n= 4,447), '2시간' 19.5%(n= 3,38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참여자의 내부 인권교육 연간 총 참여시간 평균은 4.69시간으로 분석되었다.

표 3-18 | 내부 인권교육 현황 파악

변수	범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변수	범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연간 횟수	1회	894(44.2)	2.49 (3.56)	연간 총 참여시간	1시간	396(19.9)	4.69 (5.38)
	2회	657(32.5)			2시간	387(19.5)	
	3~4회	310(15.3)			3~4시간	593(29.9)	
	5~9회	92(4.6)			5~9시간	447(22.5)	
	10회 이상	68(3.4)			10~19시간	127(6.4)	
	소계	2,021(100.0)			20시간 이상	35(1.8)	
					소계	1,985(100.0)	
회당 평균 교육시간	1시간	836(43.22)	2.45 (2.90)	회당 평균 참여인원	5명 미만	545(27.7)	15.57 (16.66)
	2시간	583(30.1)			5~9명	390(19.9)	
	3~4시간	373(19.3)			10~19명	419(21.3)	
	5~9시간	119(6.1)			20~29명	289(14.7)	
	10시간 이상	24(1.2)			30명 이상	321(16.3)	
	소계	1,935(100.0)			소계	1,964(100.0)	
총 수료인원	5명 미만	461(23.3)	20.63 (23.20)				
	5~9명	385(19.5)					
	10~19명	379(19.2)					
	20~29명	276(13.9)					
	30~49명	286(14.5)					
	50명 이상	192(9.7)					
	소계	1,979(100.0)					

회당평균 교육시간의 경우, '1시간'이 43.22%(n= 836)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시간'이 30.1%(n= 5833), '3~4시간'이 19.3%(n= 373)로 뒤이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체 조사 참여자의 회당 평균 교육시간의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회당 2.450시간의 수업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당 평균 참여인원은 각 범위마다 비교적 비슷한 분포를 보였는데, '5명 미만'이 27.7%(n= 545), '10~19명'이 21.3%(n= 419), '5~9명' 19.9%(n= 390), '30명 이상' 16.3%(n= 321), '20~29명' 14.7%(n= 28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조사대상 시설의 회당 평균 참여 인원은 15.57명(표준편차= 16.66) 이었다.

내부 인권교육 총 수료인원에 대해서는 '5명 미만'이라고 응답한 시설이 461개(2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9명'이었던 시설 385개(19.5%), '10~19명'이었던 시설 379개

(19.2%)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총 수료인원에 대한 평균값은 20.63명(표준편차= 23.2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시설 자체로 진행되는 내부 인권교육에 대다수의 시설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019년에 내부 인권교육을 진행하였던 2,021개 시설의 87.2%(n= 1,763)에서 시설 자체교육에 시설장이 참여하였다고 응답되었다(〈표 3-19〉).

【 표 3-19 】 내부 인권교육 시 시설장 참여 여부

구분	빈도(n)	비율(%)
참여함	1,763	87.2
참여안함	258	12.8
합계	2,021	100.0

## 5-2) 외부 인권교육 실적

외부 인권교육에 대한 현황은 〈표 3-20〉과 같다. 외부 인권교육이 진행되는 연간 횟수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6.5%, n= 1,253)의 시설이 ‘연 1회’ 외부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약 25%(n= 537)의 시설이 2차례 실시한다고 하였다. 5회 이상 실시한다고 응답한 기관도 9.2%(n= 203)로 나타나, 연 평균 교육횟수는 2.38회(표준편차= 4.02) 이었다.

연간 총 참여시간의 경우에는 ‘3~4시간’의 비중이 30.3%(n= 664)로 가장 높았는데, 다음으로 ‘5~9시간’도 28.0%(n= 613)를 차지해 크지 않은 격차를 보였다. 연간 인권교육에 참여한 총 시간은 평균 9.06시간(표준편차= 10.12)으로 분석되었다.

회당 평균 몇 시간 교육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3~4시간’ 진행된다고 한 시설이 785개(36.8%)로 가장 많았고, ‘2시간’이라고 응답한 시설은 538개 시설로 4개 시설 중 1개 시설이 2시간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외부 교육에 참여한 시설들의 회당 평균 교육시간은 3.47시간(표준편차= 2.70) 이었다.

표 3-20 | 외부 인권교육 현황 파악

변수	범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변수	범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연간 횟수	1회	1,253(56.5)	2.38 (4.02)	연간 총 참여시간	1시간	271(12.4)	7.06 (10.12)
	2회	537(24.2)			2시간	320(14.6)	
	3~4회	226(10.2)			3~4시간	664(30.3)	
	5~9회	135(6.1)			5~9시간	613(28.0)	
	10회 이상	68(3.1)			10~19시간	178(8.1)	
					20시간 이상	142(6.5)	
	소계	2,219(100.0)			소계	2,188(100.0)	
회당 평균 교육시간	1시간	415(19.5)	3.47 (2.70)	회당 평균 참여인원	5명 미만	1,038(49.0)	10.85 (14.56)
	2시간	538(25.2)			5~9명	359(16.9)	
	3~4시간	785(36.8)			10~19명	341(16.1)	
	5~9시간	363(17.0)			20~29명	166(7.8)	
	10시간 이상	30(1.4)			30명 이상	215(10.1)	
	소계	2,131(100.0)			소계	2,119(100.0)	
총 수료인원	5명 미만	821(38.2)	15.76 (22.45)				
	5~9명	399(18.5)					
	10~19명	380(17.7)					
	20~29명	208(9.7)					
	30~49명	190(8.8)					
	50명 이상	154(7.2)					
	소계	2,152(100.0)					

인권교육 1회당 평균 참여인원은 약 절반(49.0%, n= 1038)의 시설에서 ‘5명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5~9명(16.9%, n= 359)’, ‘10~19명(16.1%, n= 341)’이라고 응답한 시설도 적지 않았다. 회당 평균 30명 이상이 외부 교육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시설도 약 10%(n= 215)로 나타나, 1회당 평균 참여인원은 10.85명(표준편차= 14.56)으로 조사되었다.

외부교육에 참여하여 인권교육을 수료한 총 인원 에 대해서는 ‘5명 미만’이라고 응답한 시설이 821개(38.2%)로 , n= 821)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5~9명(18.5%, n= 399)’, ‘10~19명(17.7%, n= 380)’이라고 응답한 시설도 약 20%로 나타났다. 총 수료인원이 50명 이상이라고 보고한 시설도 154개(7.2%) 이었으며, 평균 총 수료인원은 15.76명(표준편차= 22.4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부에서 진행되는 인권교육에도 다수의 시설장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82.6%(n= 1,832)의 기관에서 시설장이 '참여한다'고 하였다.

**표 3-21 | 외부 인권교육 시 시설장 참여 여부**

구분	빈도(n)	비율(%)
참여함	1,832	82.6
참여 안함	387	17.4
합계	2,219	100.0

### 5-3) 내·외부 포함 실적

시설장의 인권교육 참여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고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별도로 수강하였는지 질문했는데, 그 결과 <표 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반 이상(51.3%, n= 1,520)의 시설장이 별도의 인권교육을 수강하고 있었다.

**표 3-22 | 시설장의 최고관리자 대상 인권교육 별도 수강 여부**

구분	빈도(n)	비율(%)
수강함	1,520	51.3
수강 안함	1,441	48.7
합계	2,961	100.0

인권교육을 직급 또는 직무별로 차별화 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2019년에 인권교육을 실시한 시설에 종사자 집단을 구분하여 교육을 진행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약 80%(n= 2,373)의 시설이 종사자 집단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대부분의 시설이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3-23>).

표 3-23 | 인권교육 시 종사자 집단 구분

구분	빈도(n)	비율(%)	
구분하지 않음	2,373	80.4	
구분함	직급별	193	6.5
	직종별	111	3.8
	기타	275	9.3
합계	2,952	100.0	

종사자들에게 제공했던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담당 소관부처의 지침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침을 확인하고 교육을 진행했는지 질문한 결과, 대다수의 시설인 2,404개소(81.4%)에서 지침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인권교육을 계획하기 전에 해당 년도 소관부처의 지침을 검색 또는 확인하였다고 응답한 기관도 1,986개(67.3%)로 3개 기관 중 1개 기관은 소관부처의 지침을 확인한 후 인권교육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 지침 인지 여부

그림 3-5 | 지침 확인 여부

#### 6)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현황 파악 <시설 자체 교육 기준>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을 진행한 강사의 경력을 알아보았는데, 각종협회에서 운영되었던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교육을 담당했다고 응답한 시설이 419개(24.1%)로 가장 많았고, 국가인권위에서 위촉한 강사가 교육을 진행했다고 한 시설도 349개소 2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지자체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13.3%(n=232)와 ‘그 외 시민단체/민간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13.1%(n=228)로 10% 이상의 시설

에서 보고되었다(〈표 3-25〉).

**표 3-24 | 인권교육 진행 강사(중복응답)**

구분	빈도(n)	비율(%)
국가인권위 관계자	84	4.8
국가인권위 위촉강사	349	20.1
현재 인권위 위촉은 아니나, 과거 인권위 양성과정 수료자	118	6.8
지자체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232	13.3
각종협회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419	24.1
그 외 시민단체/민간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228	13.1
사회복지학과 교수	147	8.5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175	10.1
모르겠음	212	12.2

\* n= 1,738(2019년 인권교육을 시설 자체교육으로 진행한 시설)  
중복응답 되어 빈도와 백분율을 더한 총합은 분석된 사례수를 초과함

시설의 자체 인권교육에 내부 종사자가 진행강사로 참여한 경우가 있었는지 질문한 결과, 〈표 3-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60%(n= 1,069)의 시설에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시설 자체 교육을 진행했던 1,738개 시설 가운데, 669개(38.5%) 시설이 내부 종사자가 진행강사로 참여한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관 내부 인력을 활용하는 것의 편리함 때문이라고 응답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n=424, 63.4%), 수강생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경우도 26%(n= 174)이며, ‘비용절감’을 이유로 설명한 경우도 21.4%(n= 143)로 나타났다.

**표 3-25 | 내부 종사자의 인권교육 진행강사 참여 여부 및 내부 종사자의 강사 참여 이유**

구분	빈도(n)	비율(%)	내부 종사자의 강사 참여 이유(중복응답)	빈도(n)	비율(%)
참여함	669	38.5	기관 내부 인력 활용의 편의성	424	63.4
			수강생에 대한 높은 이해	174	26.0
참여안함	1,069	61.5	외부 강사진에 대한 부족한 정보	41	6.1
			비용절감	143	21.4
합계	1,738	100.0	과거 외부 강사 교육에 대한 불만족	31	4.6
			* n= 669(2019년에 진행된 시설 자체교육에 종사자가 진행 강사로 참여한 시설) 중복응답 되어 빈도와 백분율을 더한 총합은 분석된 사례수를 초과함		

〈표 3-26〉은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인권교육의 강사 섭외 방법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설이 확보한 기존 강사 풀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30.6%(n= 531)로 가장 많았고, ‘각종 직능협회를 통한 섭외’가 19.3%(n= 335)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그 외 시민단체 또는 민간 업체를 통한 섭외’가 17.2%(n= 299), ‘지자체 문의 및 협조’를 통해 강사를 섭외했다고 응답한 시설은 15.9%(n= 2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관의 소개로 인권강사를 섭외한다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방법,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는 등의 기타 방법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시설도 27.1%(n=471)로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표 3-26 | 내부 인권교육 강사 섭외 방법(중복응답)

구분	빈도(n)	비율(%)
국가인권위원회 연계	210	12.1
지자체 문의 및 협조	275	15.9
각종 직능협회	335	19.3
그 외 시민단체 또는 민간 업체	299	17.2
시설이 확보한 기존 강사 풀	531	30.6
온라인 강의 등 기타	471	27.1

\* n= 1,738(2019년 인권교육을 시설 자체교육으로 진행한 시설)  
중복응답 되어 빈도와 백분율을 더한 총합은 분석된 사례수를 초과함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면서, 강사섭외가 곤란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의 문제를 지적한 시설이 774개(44.5%)로 가장 많았고, ‘강사섭외에 대한 정보 부족’을 제시한 시설도 665개(38.3%)로 많은 편이었다. 그 외 강사섭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로는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가 12.9%(n= 225), ‘시설이나 분야에 대한 강사의 이해 부족’ 11.8%(n= 205), ‘수강인원 미달’ 11.6%(n= 201)로 나타났다.

**표 3-27 | 내부 인권교육 강사 섭외가 곤란했던 이유(중복응답)**

구분	빈도(n)	비율(%)
강사섭외에 대한 정보 부족	665	38.3
강사비 등 예산 부족	774	44.5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	225	12.9
교육장소 부족	102	5.9
시설이나 분야에 대한 강사의 이해 부족	205	11.8
수강인원 미달	201	11.6

\* n= 1,738(2019년 인권교육을 시설 자체교육으로 진행한 시설)  
중복응답 되어 빈도와 백분율을 더한 총합은 분석된 사례수를 초과함

시설에서 인권교육을 설계하거나 강사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도움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표 3-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29.2%(n= 4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도움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직능협회' 22.8%(n= 355), '타 복지기관' 16.1%(n= 251)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 외의 다른 기관들은 10% 내외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3-28 | 인권교육 설계와 강사섭외에 있어 도움 받은 기관**

구분	빈도(n)	비율(%)
국가인권위원회(지역사무소 포함)	164	10.5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168	10.8
직능 협회	355	22.8
타 복지기관	251	16.1
개별 강사	165	10.6
특별한 도움을 받지 못함	455	29.2
합계	1,5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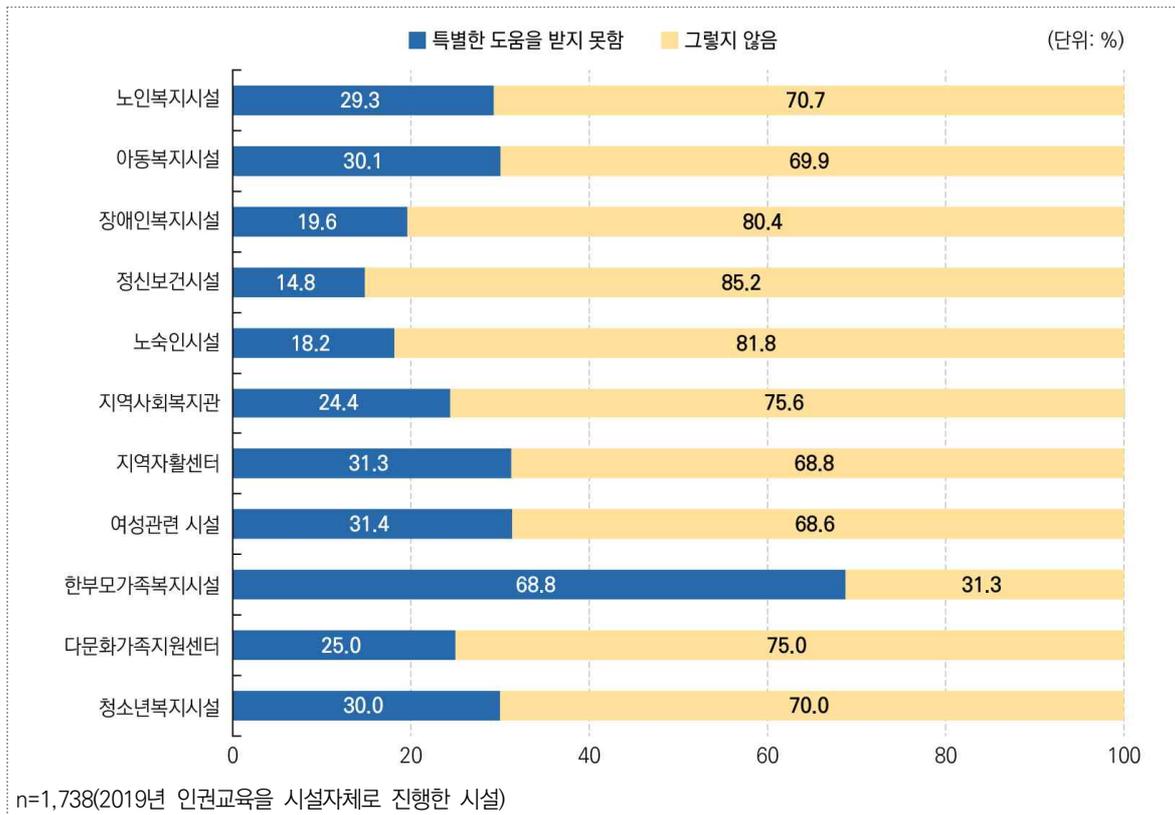


그림 3-6 | 시설유형별 강사섭외에서 특별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

인권교육을 계획하고, 강사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시설들이 대상자별 시설유형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는 <그림 3-6>과 같다. 지난 2019년에 시설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했다고 응답한 1,783개 시설을 유형별로 나누어, 각 유형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시설의 비율을 산출하였는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특별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부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모두 16개소였는데, 이 가운데 68.8%(n= 11)의 시설에서 특별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였다. 반면 특별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에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난 시설은 정신보건시설로 27개의 내부교육을 진행한 곳 가운데 4개 시설(14.8%)만 특별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였다.

시설 자체의 인권교육을 진행했던 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나 57.7%(n= 899)의 시설에서 매우 적절 또는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많지 않았는데, 6.6%(n= 103)의 시설에서만 전문성이 부족 또는 매우

부족하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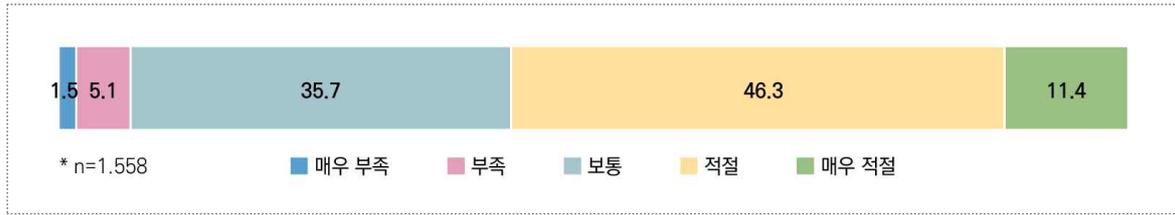


그림 3-7 | 인권교육 강사의 전문성 수준

인권교육 시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약 60%(n= 668)의 시설에서 시설 및 법인 자체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하였고, 지자체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시설은 28.4%(n= 333)로 조사되었다. 공동모금회의 기준을 따르는 시설은 172개(14.7%)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3-29 | 인권교육 강사료 지급 기준

구분	빈도(n)	비율(%)
시설 및 법인 자체 기준	668	56.9
공동모금회 기준	172	14.7
지자체 기준	333	28.4
합계	1,173	100.0

인권교육 진행강사에게 지급되는 평균 강사비는 시간당 59,620원(표준편차= 63,719)으로 나타났다. 강사비를 범주로 나누어 빈도를 분석한 결과 5~10만원, 10만~20만의 강사비를 지급하는 시설이 60% 이상(n= 668)을 차지하였으며, 강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외부단체의 지원으로 무료로 진행된다고 응답한 시설도 33.7%(n= 373)로 조사되어, 3개 시설 가운데 1개 시설은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고 시설 자체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강사비 무료를 제외한 평균 비용은 시간당 89,389.76원(표준편차= 58,527)으로 조사되었다.

표 3-30 | 인권교육 강사비

범위	빈도(%)	소계	평균	표준편차
강사비 없음 (무료 및 외부단체지원)	373(33.3)	1,120(100)	59,619.78	63,719.241
5만원 미만	55(4.9)			
5만~10만원 미만	305(27.2)			
10만~20만원 미만	363(32.4)			
20만~30만원 미만	20(1.8)			
30만원 이상	4(0.4)			

시설 자체적으로 진행된 인권교육이 업무시간 외에 진행된 경우는 없는지 알아본 결과, <그림 3-8>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시설(87%, n= 1,391)에서 업무 시간 안에 교육을 진행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업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교육이 진행된 경우는 207개 시설(13%)로 조사되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51.2%)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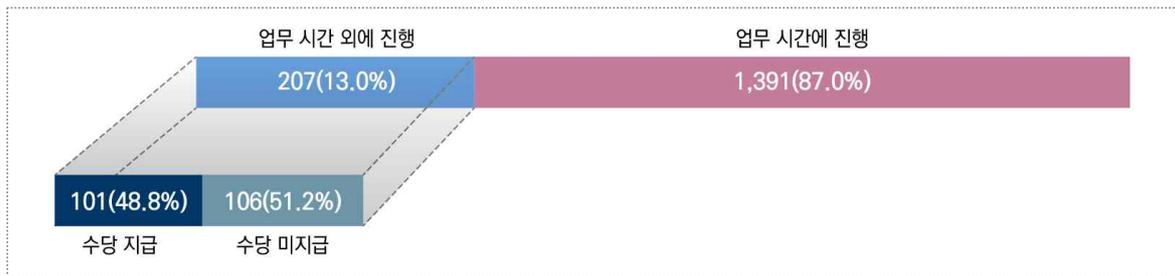


그림 3-8 | 인권교육 진행 시간

## 7)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현황 파악 <외부기관 교육 기준>

외부기관에서 진행하는 인권교육에 참여한 시설을 대상으로 어느 기관이 주최하는 교육에 참여하였는지 조사한 결과, <표 3-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협회 등의 직능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여한 시설이 947개(20.6%)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공무원연수원, 국립의료원 등의 정부 산하 교육기관’의 교육에 참여한 경우도 약 20%(n= 611)로 나타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에는 14.3%(n= 458)의 시설이, ‘인재개발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는 12.1%(n= 387)의 시설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포함한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교육에 참여한 경우가 2.8%(n= 90)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3-31 | 인권교육 주최기관(중복응답)**

구분	빈도(n)	비율(%)
국가인권위원회	458	14.3
중앙정부(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90	2.8
지방자치단체(산하 인재개발원 포함)	387	12.1
정부 산하 교육기관(보건복지인력개발원, 공무원연수원, 국립의료원 등)	611	19.1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시설협회 등 직능단체	946	29.6
대학 및 평생교육원	50	1.6

\* n= 2,111(2019년 인권교육을 외부교육으로 진행한 시설)

중복응답 되어 빈도와 백분율을 더한 총합은 분석된 사례수를 초과함

각 시설이 참여한 외부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선택한 이유로는 지자체 교육 등 ‘의무참여 교육으로 참석’했다는 답변이 34.1%(n= 1,0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주최기관의 신뢰성’을 제시한 경우도 18.7%(n= 597)로 조사되었다. ‘교육일정이 기관의 일정과 맞아서’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12.7%(n= 406)로 나타났다.

**표 3-32 | 인권교육 주최기관 선택 이유(중복응답)**

구분	빈도(n)	비율(%)
교육주최기관의 신뢰성	597	18.7
의무참여교육으로 참석(지자체 교육 등)	1,089	34.1
교육주최기관의 홍보를 접함	247	7.7
교육장소의 접근성	300	9.4
교육일정이 기관의 일정과 맞아서	406	12.7
온라인 교육 등 기타	180	5.6

\* n= 2,111(2019년 인권교육을 외부교육으로 진행한 시설)  
중복응답 되어 빈도와 백분율을 더한 총합은 분석된 사례수를 초과함

외부기관의 인권교육을 수강할 때 업무일정을 어떻게 조율했는지 알아본 결과, 대부분이 ‘출장 또는 교육 공가 등으로 수강했다(72.1%, n= 1,503)’고 응답하였고, ‘개인 휴가를 사용하여 수강했다’는 응답은 5.3%(n= 112)로 높지 않았다. 인터넷 수강 등 기타 방법으로 외부 기관의 인권교육을 수강했다는 응답이 오히려 23.5%(n= 112)로 더 높게 나타났다(표 3-33).

**표 3-33 | 외부기관 인권교육의 수강 방법**

구분	빈도(n)	비율(%)
출장 또는 교육 공가 등으로 수강하도록 함	1,503	71.2
개인 휴가를 사용하여 수강하도록 함	112	5.3
인터넷 수강 등 기타	496	23.5
합계	2,111	100

외부 교육은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질문한 결과, <그림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시설(n= 1,626, 77%)에서 근무 시간 중에 교육을 수강했다고 하였으나, ‘근무시간 외 교육’에 참여했다는 응답도 23%(n= 485)로 낮지 않았다. 인권교육을 근무 시간외 수강하였다고 응답한 경우,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는지를 질문하였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시설이 343개(70.7%)로 수당을 지급한 시설(n= 142, 29.3%)보다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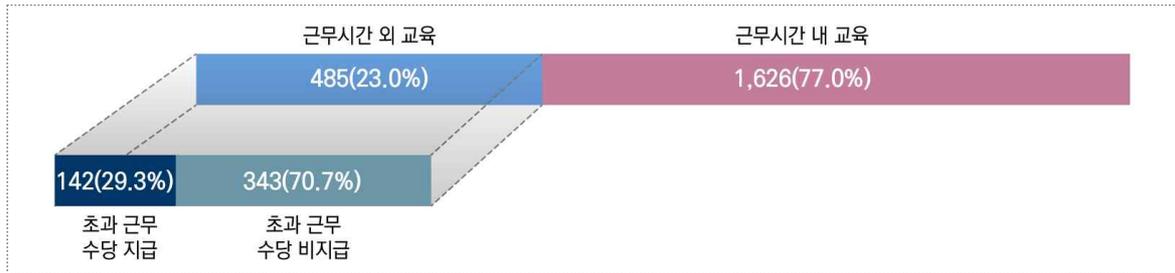


그림 3-9 | 근무시간 외 외부기관 인권교육의 참여 여부 및 업무 외 시간의 교육 참여시 초과 근무수당 지급 여부

외부기관이 주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한 방법으로 '대면(집합) 교육'의 비중이 71.8%(n= 1,516)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n= 595, 28.2)'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34>).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인권교육에 참여한 시설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그림 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에 외부기관의 인권교육에 참여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9개 가운데 5개가 비대면 교육에 참여해, 55.6%로 온라인 강좌 수강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2019년에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인권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었던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외부교육에 참여했던 752개 시설 중 절반 이상(n= 386)의 시설이 비대면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여, 그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원칙적으로 대면, 집합교육 방식의 인권교육을 진행해야 했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관련 시설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도 20%이상의 기관에서 대면 교육이 아닌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는 인권교육을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외부교육에 참여하였던 노숙인시설 46개소는 모두 대면으로 진행된 집합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4 | 외부기관 인권교육의 수강 방법

구분	빈도(n)	비율(%)
대면(집합) 교육	1,516	71.8
비대면 온라인 교육	595	28.2
합계	2,11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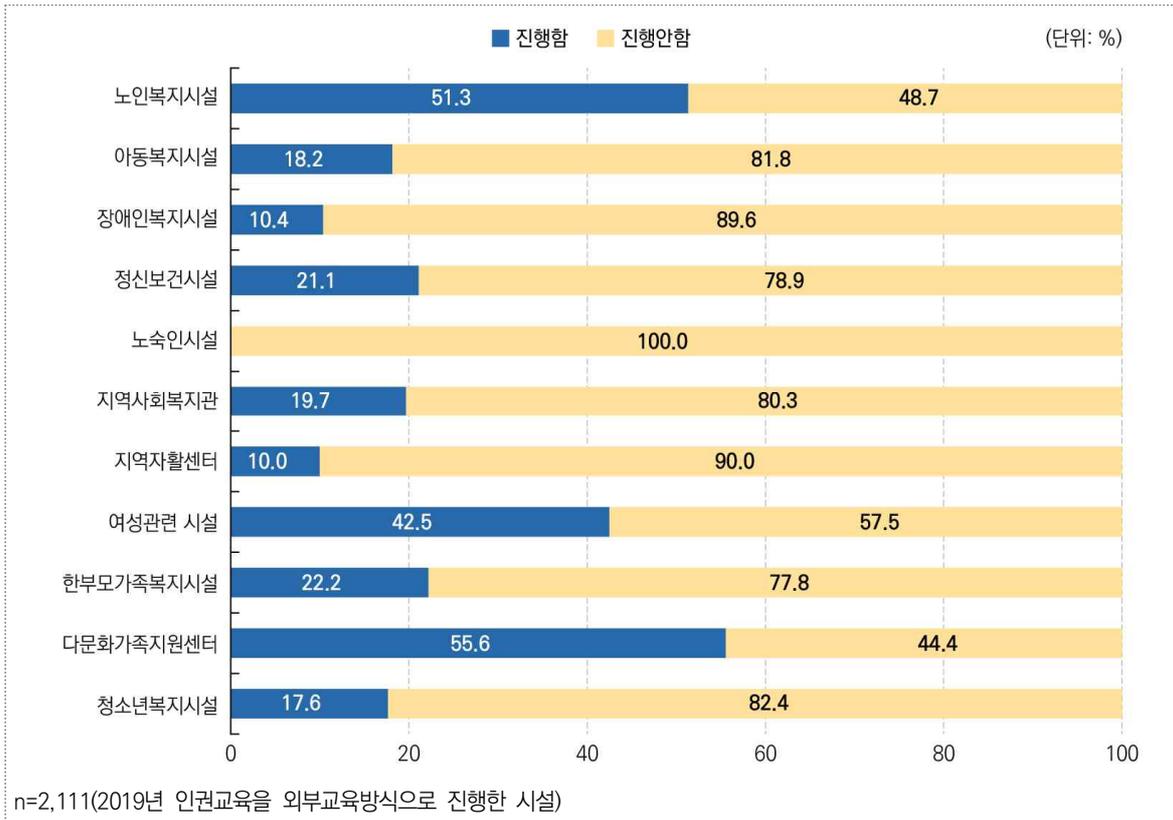


그림 3-10 | 시설유형별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진행한 비율

외부에서 진행된 인권교육에 참여한 시설에게 교육을 진행했던 강사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각종 협회에서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의 강의를 들었다고 응답한 시설이 27.2%(n= 572) 이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촉 강사의 강의에 참여한 시설이 20.3%(n= 429)로 나타났다. 수강한 인권교육의 강사의 경력사항을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시설이 많았는데, 29.7%(n= 6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표 3-35〉).

표 3-35 | 인권교육 진행 강사(중복응답)

구분	빈도(n)	비율(%)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221	10.5
국가인권위원회 위촉강사	429	20.3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위촉강사는 아니지만, 과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75	3.6
지자체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330	15.6
각종협회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572	27.1
그 외 시민단체/민간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193	9.1
사회복지학과 교수	210	9.9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175	8.3
모르겠음	627	29.7

\* n= 2,111(2019년 인권교육을 외부교육으로 진행한 시설)  
중복응답 되어 빈도와 백분율을 더한 총합은 분석된 사례수를 초과함

## 8)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의 내용 및 교수법

사회복지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내용 및 교수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난 2019년 1년 동안 진행되었던 시설 자체 교육과 외부에서 수강한 인권교육에 포함되었던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해 질문하였다.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이용자 인권(아동/장애인/노인학대 등)’이 대부분의 교육에서 제공되어 90% 이상(n= 2,670)의 시설에서 수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권, 자유권, 차별과 같은 인권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이 2,400여개의 시설(81.6%)에서 제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노동권, 직장 내 괴롭힘 등)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교육도 빈번하게 이루어져 78.0%(n= 2,304)의 시설에서 진행되었고, ‘인권침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기관 안내’에 대한 교육이

72.7%(n= 2,147)의 시설에서 진행되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 | 인권교육 수강 내용(중복응답)**

구분	빈도(n)	비율(%)
인권개념 및 역사	2,017	68.3
인권과 법/정책	1,823	61.7
국제인권기준(유엔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마드리드노인인권행동계획 등)	1,768	59.9
인권의 내용(사회권, 자유권, 차별 등)	2,409	81.6
이용자 인권(아동/장애인/노인학대 등)	2,670	90.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노동권, 직장내괴롭힘 등) 및 조직운영	2,304	78.0
인권침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기관 안내	2,147	72.7

\* n= 2,953(2019년에 인권교육을 진행한 시설)

중복응답 되어 빈도와 백분율을 더한 총합은 분석된 사례수를 초과함

인권교육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강의방법은 ‘강의 중심 교육’이 82.8%(n= 2,4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교육에 더 활발히 참여해 수업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수법으로 알려진 토론 중심의 교육은 약 20%(n= 629)의 시설에서만 활용되었다고 응답되었으며, ‘녹화된 강의를 비디오로 시청’하는 방식도 약 20%의 시설(n= 630)에서 적용되었다. 그 외 ‘영화,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5.8%(n= 170), ‘역할극 중심의 참여형 교육’이 3.8%(n= 113)로 조사되었다.

**표 3-37 | 인권교육 수강 방법(중복응답)**

구분	빈도(n)	비율(%)
강의 중심 교육	2,444	82.8
토론 중심의 참여형 교육	629	21.3
역할극 중심의 참여형 교육	113	3.8
캠페인, 현장방문 등 현장체험형 교육	24	0.8
녹화된 강의를 비디오로 시청	630	21.3
영화,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교육	170	5.8

\* n= 2,953(2019년에 인권교육을 진행한 시설)

중복응답 되어 빈도와 백분율을 더한 총합은 분석된 사례수를 초과함

인권교육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획득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자체 관련 부서’에서 정보를 얻는 다고 응답한 시설이 1,150개(38.9%)로 가장 많았고, ‘각종 직능 협회’ 32.8%(n=969), ‘국가인권위원회(지역사무소 포함) 연계’ 23.9%(n=706) 순으로 교육 관련 정보를 얻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임 인권교육 담당자나 다른 시설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종사자에게 정보를 물어본다고 응답한 시설도 약 20%(n=575)로 나타나 개인적 인맥을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표 3-38 | 인권교육의 정보 획득(중복응답)

구분	빈도(n)	비율(%)
국가인권위원회(지역사무소 포함) 연계	706	23.9
지자체 관련 부서	1,150	38.9
각종 직능 협회	969	32.8
그외 시민단체 또는 민간 업체	348	11.8
전임자 및 타 시설 담당자	575	19.5

\* n= 2,953(2019년에 인권교육을 진행한 시설)  
중복응답 되어 빈도와 백분율을 더한 총합은 분석된 사례수를 초과함

### 9)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만족도

〈그림 3-11〉은 2019년에 인권교육을 진행한 시설 2,953개를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약 89%(n=2,625)의 시설에서 교육에 대해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평가하였으며,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시설도 300여개로 나타나 교육을 진행한 10개 시설 가운데 1개 시설은 매우 만족스런 교육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1 |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만족도

교육에 만족한 이유 2가지를 선택해 순서대로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용

자의 인권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1순위와 2순위를 합하여 약 50%로 나타나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평소에 몰랐던 인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설명도 1순위에서 27%(n= 704), 2순위에서 11.1%(n= 283)로 높게 응답되었다.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 내용과 방법을 배울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한 시설도 많은 편이었는데, 1순위로 제시한 시설은 17.4%(n= 455) 이었고, 2순위로 응답한 시설은 21% 이상(n= 556)으로 조사되었다.

【 표 3-39 】 인권교육 만족도(1순위/ 2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빈도(%)
평소에 몰랐던 인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	704(27.0)	283(11.1)
이용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	681(26.1)	616(24.1)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 내용과 방법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	455(17.4)	556(21.7)
새로운 인권교육 방법을 적용해서 도움이 되었기 때문	107(4.1)	170(6.6)
강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뛰어났기 때문	68(2.6)	82(3.2)
교육을 받고 구체적으로 업무에 적용하고 개선할 수 있었기 때문	214(8.2)	365(14.3)
사회복지조직운영 또는 종사자의 인권보호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367(14.1)	473(18.5)
기타	16(0.6)	14(0.5)
합계	2,612(100)	2,559(100)

한편, 진행되었던 인권교육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시설도 약 10%(n= 328)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불만스러운 이유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반복되는 교육에서 유사한 내용을 여러 번 수강하였던 것으로, 1순위에서 48.7%(n= 154)의 시설이, 2순위에서 29.7%(n= 91)의 시설이 불만의 이유로 설명하였다. 강의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만족스럽지 않다고 한 경우도 대체로 높게 응답되었는데, 1순위로 16.5%(n= 52), 2순위로 23.2%(n= 71)의 시설에서 불만의 이유로 설명되었다.

표 3-40 | 인권교육 불만족도(1순위/ 2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빈도(%)
강사의 전문성 등 역량 부족	39(12.3)	31(10.1)
반복되는 교육으로 유사한 내용반복	154(48.7)	91(29.7)
강의위주의 교육방법	28(8.9)	55(18.0)
강의내용이 현실과 너무 맞지 않아서	52(16.5)	71(23.2)
교육장 환경-거리, 쾌적성	9(2.8)	16(5.2)
교육시간이 짧아서	2(0.6)	3(1.0)
교육시간이 길어서	25(7.9)	29(9.5)
기타	7(2.2)	10(3.3)
합계	316(100)	306(100)

#### 10)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관련 사회복지시설평가 관련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체 3,198개 시설 가운데, 1,784개 시설이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절반 이상(55.8%)을 차지하였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를 통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인권교육의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 시설 1,784개를 대상으로, 이처럼 시설평가와 의무 인권교육을 연계해 평가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효과적 36.0%, n= 643’ 또는 ‘매우 효과적(7.2%, n= 129)’이라는 응답이 43.2%(n= 772)로 대체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우 비효과적(5.2%, n= 93)’ 또는 ‘비효과적(10.8%, n= 193)’이라는 의견은 약 15% 정도도 대체로 낮았다.

표 3-41 |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평가 경험 유무

구분	빈도(n)	비율(%)	사회복지시설평가 제도를 통한 인권교육 실시 평가의 효과성
시설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음	1,784	55.8	<p>매우 효과적 129(7.2%)      매우 비효과적 93(5.2%) 비효과적 193(10.8%) 효과적 643(36.0%)      보통 726(40.7%)</p> <p>* n = 1,784(지난 3년간 시설평가를 받은 시설)</p>
시설평가를 받지 않음	1,414	44.2	
합계	3,198	100.0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 인권교육 관련 평가를 함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42.6%(n= 760)의 시설에서 '서류 위주의 형식적인 평가로 진행'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증빙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고 과도하다는 의견도 40%에 가까운 시설, 694개소에서 제시되었다. '직원인권과 이용자인권을 분리해 인식하는 교육체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시설은 28.1%(n= 502)로 나타났다.

표 3-42 사회복지시설평가 시 인권교육 항목관련 개선사항(중복응답)

구분	빈도(n)	비율(%)
증빙할 서류가 너무 많은 과도한 증빙 서류 요구	694	38.9
서류 위주의 형식적인 평가로 진행됨	760	42.6
실제 인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평가에 결부시키지 않아 개선이 필요	176	9.9
직원인권과 이용자인권을 분리해 인식하는 교육체계	502	28.1
집합교육에 한정하여 평가	320	17.9
기타	320	17.9
합계	1,784	100

\* n= 1,784(지난 3년간 시설평가를 받은 시설)  
중복응답 되어 빈도와 백분율을 더한 총합은 분석된 사례수를 초과함

## 제4장

#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분석



# 제4장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분석

---

## 제1절 | 연구방법

### 1. 초점집단면접조사 목적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분야별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단의 인식을 탐색하기 위하여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는 정체성과 목적의식이 분명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in-depth) 그룹 인터뷰를 활용하는 것으로, 참여자들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집중적 논의를 하게 된다. 논의 과정에서 연구에 참여하는 집단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킴으로서, 새로운 정보와 인식을 교류할 뿐 아니라, 이슈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등의 집단 역학(group dynamics)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1대 1 인터뷰보다 더 깊고 풍부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만드는 의미 있는 자료수집 방법이다. 인터뷰를 통해 집단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개인의견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보다 더 타당하며, 인터뷰 참여자들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주제 분야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FGI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의무 인권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는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 2. 조사개요 및 방법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조사는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실행되었다. 연구참여자 정보는 다음의 표의 내용과 같으며, 연구참여자들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현장 또는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에 해당되어 각각의 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이 가능할 것으로 추천받은 이들로 구성되었다. 2020년 11월 16일 약 2시간가량 진행되었으며, 인터뷰에는 연구진 3인, 연구보조원 1인이 참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정보는 다음의 표의 내용과 같다.

**표 4-1 |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참여자	가명	연령대	소속
A	이○○	40대	공공기관
B	김○○	40대	공공기관 : 교육 제공 기관
C	오○○	40대	인권교육 강사
D	송○○	30대	인권교육 강사
E	정○○	40대	사회복지시설 교육 담당자

초점집단면접은 본 연구진의 공동연구원이 진행하였으며 조사에 앞서 연구진은 연구의 목적과 진행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인터뷰의 질문은 다음의 표와 같은 사전 질문 내용을 구성하고 반 구조화된 방식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시된 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면담내용은 녹취되었고, 이후 면담내용을 전사하여 녹취록을 작성하고 연구진이 이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주제를 뽑아내는 일차분석을 시도하였다. 일차분석 후 선별된 핵심주제를 바탕으로 범주 및 주요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진은 원자료, 도출된 소주제, 대주제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면담의 정확한 의미를 포착하고자 노력하였다.

표 4-2 | 인터뷰 질문

구 분	질문내용
<p>〈열기〉 인권교육 경험 및 필요성</p>	<p>1. [인권교육 관련 경험]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과 관련해 어떤 (업무)경험(인권교육 설계·기획, 인권교육 강의활동, 인권교육 점검 등)을 가지고 계신가요? 2. [인권교육 필요성]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인권교육은 필요한가요? 어떤 점에서 필요/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인권교육 운영 현황</p>	<p>3. 현재 전반적으로 인권교육 진행 여부 상황은 어떤가요? 3-1.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지 3-2.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지 4. 시설 평가는 인권교육의 실질화(내실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나요? 4-1. 시설 평가가 인권교육 실질화(내실화)를 견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5. 기관 자체에서 진행하는 인권교육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6. 법체계별로 별도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 체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 대체로 인권교육을 진행할 강사는 어떤 창구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나요?</p>
<p>인권교육 내용</p>	<p>8. 인권교육은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실천과 연계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8-1.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실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9. 이용자인권 교육과 종사자인권 교육의 분리 체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 타 교육과 달리 인권교육이 가지는 변별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p>
<p>인권교육 개선방안</p>	<p>11. 인권교육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p>

## 제2절 | 조사결과 분석

표 4-3 | 초점집단면접 도출개념

범주	개념		
1. 사회복지시설의 무 인권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1) 사회복지 업무의 인권적 역할 충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 (2) 타 교육과의 변별되는 의미의 인권교육		
2. 사회복지시설의 무 인권교육 현황	1) 인권교육 운영 현황	가. 형식적 운영의 한계와 고민	(1) 형식적 운영의 현실적 한계 (2) 인권교육의 실질화를 위한 고민
		나. 교육방법의 효과성	(1) 사이버 인권교육의 현실 (2) 사이버교육의 한계에 대한 대안
		다. 인권교육 예산의 문제	(1) 자체 인권교육 운영 예산 부족 (2) 지원체계를 통한 보완 필요
		라. 인권교육 강사 운영 현황	(1) 인권교육 강사 섭외-담당자가 개인적으로 해결 (2) 강사 특성에 따른 인권교육에서의 문제점 도출
	3)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 체계에 대한 진단	(1) 법체계별 인권교육 (2) 이용자 인권과 종사자 인권에 대한 교육 분리체계 (3) 평가체계의 견인 역할 여부와 개선 방안	
3.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개선방안	1) 인권교육의 사회복지 현 장으로의 연 계성	(1) 인권교육의 사회복지 현장으로의 연계성 부족 (2) 인권교육의 사회복지 현장으로의 연계성에 대한 기대와 노력	
	2) 인권교육의 실질화를 위 한 제언	(1) 시의적절한 인권교육 콘텐츠의 마련과 지속적 강사역량 증진 (2)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한 접근성 제고 (3) 인권교육체계 마련 (4) 인권교육 지원 체계의 필요성 제언	

## 1.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 1) 사회복지 업무의 인권적 역할 충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

참여자들은 사회복지 현장이 가지는 인권적 의미에 비추어 인권교육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하였다. 업무와 조직문화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권의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서, 국가나 사회가 보장할 이용자의 권리를 인식하고 그 권리보장의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할 수 있기 위해, 사회복지 업무 현장에서의 인권감수성을 깨우고 유지하는 자극의 역할 차원에 인권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생각을 했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수 이면서도 약자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가장 기본권 그런 거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들은 정말 필수적으로 다뤄져야 되는 거고, 인권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 이런 소수 약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모든 일반인들에게 제공되고 지켜지고 또 부여가 돼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1)

이제 좀 배우고 나니까 인권교육은 받아야, 해야 된다, 필요하다. 특히 복지 안에서의 인권은 더더욱 필요하다. 우리가 좋은, 친절한 좋은 서비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업무를 하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게 사회가 이 국가나 사회가 보장해 줘야 될 권리를 인식하고 그것을 이용하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최근에 교육을 받으면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 그러니까 외출이라는 이동권의 자유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임금 일자리밖에 없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일하는 사람들을 해결을 해서 서울시에 질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실무 입장에서 할 수가 없어요.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 저를 포함하면 오래 일한 사람들은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 이 환경이.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새로운 물이 들어와도 거부를 하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사실은 인권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참여자 3)

좀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부분들에서의 인권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고요 (...) 그래서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꼭 이어져야 하는 근간이 되어야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고 행동으로 돼야 되는데 (참여자 4)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서비스가 소극적으로 바뀌고 소극적 행정으로 가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낮아진 인권의식과 감수성을 자극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교육은 아직은 필요하다. 언젠가 때가 돼서 교육 자체가 불필요한 날도 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자극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 (참여자 5)

사실 저희가 인권, 인권 하지만 이용자나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나 인권의 어떤 예방 방법, 침해 예방 방법이라든가 인권의 어떤 인권침해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주어지는 제재들 또는 벌, 패널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실 예로 종사자분이 이용자의 권리랑 인권이랑 뭐가 틀리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권리랑 인권이랑 구분을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모호한 부분도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권교육은 어쨌든 이용자분들도 직원이나 동료들에게서 침해 받는 게 이게 인권침해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종사자분들도 직원들 간에 또는 직원이 이용자들에게 범할 수 있는,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자 2)

## 2) 타 교육과의 변별되는 의미의 인권교육

참여자들은 인권교육은 내 자신의 삶을 포함한 사람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다른 필수교육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였고, 참여자 3은 사람과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변화를 견인하는 것이 인권교육의 역할이라고 하였다.

인권교육은 어찌 보면 내 자신을 위해서. 물론 종사자 같은 경우도 이용자 관련될 수도 있지만 내 자신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자 2)

타 교육은 결국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스킬교육에 가깝다면 인권교육은 내가 시설에 있던 지역사회에 있던 어디에 있던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기 위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변별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5)

다른 모든 교육이나 이런 내용들을 아우르는 큰 범주에서의, 그런데 실생활에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상호를 생각, 나와 너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은 인권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참여자 4)

제일 변화를 생각하면 결국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인권교육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

던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봤던 경험했던 사람에 대한 생각, 노숙인에 대한 생각, 부모를 바라보는 생각, 국가를 바라보는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근본적인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내용들이 달라지는 게 인권에서 변별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현실에 있어서의 상자 안에 있다 보면 그 시선을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의 관에서는. 그거를 변화하는, 아까 휘슬블로어 얘기했지만 귀찮은 존재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귀찮은 존재예요. '지금도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소리를 내고 있어.'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마저도 '왜 그러지?'라고 바라 봐줘야 되는 게 인권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3)

## 2.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현황

### 1) 인권교육 운영 현황

#### 가. 형식적 운영의 한계와 고민

##### (1) 형식적 운영의 현실적 한계

참여자들은 아직까지는 현장의 인권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참여자 3은 인권교육이 초기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맞지만 담당자가 수많은 업무 중 하나로 인권교육을 맡고 있는 한계로 인해 인권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고, 참여자 2는 지표상으로는 시간만 체크되고 나머지는 시설에 맡기고 있는 만큼 시설장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참여자 5는 교육의 형식화 원인으로 평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의 우선성, 의무교육에 대한 반감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인권교육은 생각보다 많이 변화를 해왔고, 굉장히 많이 좋은 쪽으로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초기에 비하면. 노숙인 관련 매뉴얼, 교육 매뉴얼이 있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변화를 겪고 있고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형식적이라는 부분에서도 동의하고 (...) 그냥 자기 업무 속에서 몇 개, 한 이 정도, 10분의 1 정도 빼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인권을 볼 수가 없어요. 문제가 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시설에서. 그러니까 시설장님도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 정도로 하는 거고, 왜냐면 지침에 의해서 어겨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침에 맞게 어쨌든 운영을 하니깐.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이 돼줘야 되는데 그냥 '이건 기획업무니까 기획에서 한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서 집중은 그냥 업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도 이게 단해성인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그래서 그냥 '거기 어떻게 돼 있대', '어디선 어떻게 한대' 이거 보고 그냥 따라 하는 정도고. 그래서 사실은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 거고 (참여자 3)

실제로는 평상시 서비스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교육은 자극일 뿐인 거고 그 뒤의 이야기거리가 필요한 건데 (...) 당연히 의무교육을 실질적으로 마음을 내서 참여하시는 분은 10%도 안 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여자 5)

사실은 교육 현황은 당연히 지금 형식적이고, 말씀하셨듯이 동영상 틀고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많고, 집에 가서 또 할 수가 없는 여건이라서 이에 대한 질문은 현실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2시간도 채 안 되고, 저희도 실제 하다 보면 1시간 반 하기 시작하면 피교육생분들이 원성이 들어오 거든요. "이거 뻘히 의무인지 알면서 계속 하시는 거냐"라면서 "만족도에 반영해 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참여자 5)

지표상으로는 시간만 채우면 되고 또 매뉴얼을 갖추고 있고 그 정도의 평가지표이다 보니 각 시설에 사실 말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질문까지 좀 나아간다면 사실 시설장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데 인권교육을 형식적으로 이수시키게 할지, 사실 저희가 온라인교육을 저희도 사내에서 교육을 듣지만 바쁠 때는 켜놓고 그냥 다른 일하거나 모니터가 2개니까 한 쪽은 켜놓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 온라인 인권교육을 인정해 드리면서 사실 이 부분을 좀 포기했죠. 시설에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해도 인정이 될 수밖에 없겠다. 올해는 (...)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그냥 틀어놓고 마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거의 90% 넘을 것 같은데 (...) (참여자 2)

필수교육 중에 하나로 운영되는 되게 형식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고 (...) (참여자 4)

그냥 주입식 교육은 사실 진행되고 끝나잖아요 (...) (참여자 2)

## (2) 인권교육의 실질화를 위한 고민

인권교육의 실질화를 위하여 참여자 2은 토론시간이 일정부분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참여자 4는 기관장의 마인드의 중요성과 학교교육에서부터의 상시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참여자 3은 인권교육담당자를 따로 두어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그냥 주입식 교육은 사실 진행되고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강의를 통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보통은 2시간 강의를 하면 그중에 1시간 30분 정도 강의하고 30분은 토론한다거나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 (참여자 2)

강사진이라든지 어떤 교육을 토론식으로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나오겠지만 (...) (참여자 5)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권교육 자체는 기관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 필수교육이면서 상시체계로 돌아갈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 그래서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게 거부감 없이 필수교육이면서도 내가 일상을 보내는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고 흡수할 수 있고 이걸 내가 다 표현할 수 있는 갖가지가 가는 게 되게 이상적일 거라고 보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정확한 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참여자 4)

학교 교육에서도 같이 연동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현장에 나가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학교교육에서도 되게 강조가 돼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기관들이 신입직원을 뽑게 되면 신입직원 교육을 되게 타이트하게 짜거든요.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교육 중에 하나로 넣는데, 그때도 꼭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시설 내에서 이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강사진을 온라인교육 같은 경우에도 강사진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지만 사실 내부교육은 기관 내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선별작업을 하는 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계들을 갖춰갈 수 있는 것도 적용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무연수나 자격기준들을 나누어서 거기에 맞는 교육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 싶고 (참여자 4)

사실 이게 중요하다, 인권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할 거면 인권교육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내부에서. 그러려면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두는 게 맞는데... 어느 시설에 가서 장소 속에서 이용인들과 얘기 좀 해보고 거기서 직원들이나 시설장님들과 얘기해서 현재 인권 분야가 이렇고 이런 걸 준비를 잘하시는데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이용서비스 어떤 자치회의라든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그때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볼까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중요성이 있는 거죠. 예산도 투입을 해줘야죠, 그러면.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을 해줘야죠. 이제 이런 거 없이 무슨 전문성을 얘기하고 중요성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참여자 3)

## 나. 교육방법의 효과성

### (1) 사이버 인권교육의 현실

참여자들은 사이버교육의 경우 그냥 틀어놓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에 공감하였으며, 참여자 5은 이런 이유에서 줌 송출이나 집합교육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현실을 말씀드리면 사이버교육은 지금 굉장히 오토클릭 프로그램으로 대부분 다 하시는 게 맞고,

실제로는. 그래서 줌이나 집합교육을 저는 더 선호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 상황이 됐고 (...) (참여자 5)

집중해서 듣지 않고 틀어만 놓는다는 거 (...) 라이브는 실시간이지만 줌으로 하는 형태라서 저희가 한 장치가 어떤 거였냐면 줌으로 하면 켜놓고 안 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 (참여자 1)

## (2) 사이버교육의 한계에 대한 대안

참여자 1은 대안으로 업무시간 중에 사이버교육 수강 시간을 별도로 제공하는 시스템의 마련을 제안하였고, 참여자 2는 시험을 결합시키는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의무적으로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업무시간 중에 받을 수 있는 의무시간을 배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 사이버랑 똑같은데 저희가 했던 장치는 반드시 사무실 외의 공간에서 듣게끔 공문에 명시를 하고 저희가 배포를 했더니 90% 이상이 그런 방식으로 오케이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인권교육을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다 보안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은 클릭을 해야지만 넘어가고,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문제라든지 돌발퀴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 업무시간에도 사이버교육을 틀어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조직의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 실질적으로 본인이 학습하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자 1)

온라인교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력개발원이나 이런 쪽에 요청해서 구성하실 때 별도의 시험을 봐야지만 이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실효성 있지 않을까. (참여자 2)

## 다. 인권교육 예산의 문제

### (1) 자체 인권교육 운영 예산 부족

참여자들은 사회복지사 인권교육의 경우 예산이 책정이 없거나 여의치 않아 대부분 외부 교육을 이용하거나 강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또 강사님들 섭외할 때 사실 기관마다 직원교육에 관련된 예산들을 계획에 잡아놓는데, 사실 똑같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수님과 신청자의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강사비 책정선이 틀러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금은 더 많은 거를 전해주시실 수 있는 분? 하지만 예산적인 부분들도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도 현장에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참여자 4)

기관은 챙길 건 많은데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1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걸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 그러면 훨씬 더 풍성하게 사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5)

직원은 원칙적으로 다 외부에서. 인권이나 정신건강센터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5)

그 다음에 직원들도 직원들은 다 외부로 나가서 의무교육에 참여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3)

인권교육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는 건 아니라 사실은 그 부분들이 제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같이 묻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참여자 4)

그렇게 하니깐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는 제대로 된 교육을 현장에서 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한 부담을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20년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서 전체를 다 운영하는 방법을 다 바꿨어요 (...) (참여자 1)

## (2) 지원체계를 통한 보완 필요

참여자 1은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인권교육 예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원체계에서 운영 전체를 기획하는 운영 경험을 제시하였다.

그렇게 하니깐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는 제대로 된 교육을 현장에서 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한 부담을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20년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서 전체를 다 운영하는 방법을 다 바꿨어요. 어떻게 했냐면 전년도 연말에 저희 부서에서 예산 요청을 하고 그리고 올해 예산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은 형태로 하지만 기관에서는 전혀 부담을 갖지 않게끔 하고 저희가 비용을 모두 다 전액 다 부담을 하고 지원을 해드리고 모니터링까지 해드리고.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의 역할이 강사를 파견하고 모니터링만 했다고 하면 올해는 양성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 하는 거, 그다음에 모니터링 하는 것까지 전부 다 했더니 지금은 연말이라서 그런지 되게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의 만족도도 굉장히 관찮습니다 (참여자 1)

## 라. 인권교육 강사 운영 현황

### (1) 인권교육 강사 섭외-담당자가 개인적으로 해결

참여자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경험과 네트워크를 통해 강사를 섭외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공감하였다. 여기에 참여자 5의 경우 최근 자치구의 인권담당관 등이 생기는 등의 다변화를 느낀다고 하였고, 참여자 4는 예산에 맞춰야 하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참여자 1은 현재의 강사자격 기준을 설명하면서 기준 설계의 한계가 있는 가운데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참여자 5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양한 구성의 강사풀을 마련하고 강의의뢰까지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일을 8년 정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친분을 통해서만 하다가 지금은 좀 바뀐게 의무기관 또는 자치구의 인권담당관 이렇게 다변화하는 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5)

저도 친분이 제일 많이 활용되고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복지관 근무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하는 범위, 툴이 명확하게 있어서 그 안에서 그래도 그러면 제가 들어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든지 좋은 평가가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분께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로요 (참여자 4)

아까 말씀하신 예산 부분에 맞춰야 되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참여자 5)  
풀은 계시는 것 같아요. 다 평판을 보고 알음알음 해서 한 거라서. 결국은 강사의 공공화 얘기는 나중에 나올 수밖에 없네요 (참여자 5)

저희도 “저쪽 기관에서 누구 하셨어요? 괜찮은 분 없어요?” 이렇게 주변기관에다가 물어봐서 (...) 모르겠어요. 그분이 작년에 잘했으면 “올해도 한번 오시죠.” 그렇게 하고. 왜냐면 이쪽 노숙 분야에서는 특별히 더 요청할 분이 없어가지고 (...) (참여자 3)

일단 저희가 자격기준은 약간 변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자격기준 제시가 안 됐다가 지난 19년도부터 자격기준이 제시가 됐는데요. 첫째는 인권강사, 국가인권위원회이든 아니면 어떤 단체든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신 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권단체에 소속돼서 3년 이상 활동하신 분, 세 번째는 사회복지학과, 또 최근에 22년도 지표에 추가했는데 사회복지학과 또는 재활학과 이런 교수님들 이 정도로 지금 이제 강사를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 시설들에서는 보통 입소문을 타서 이 강사분 어떨냐 해서 좋다 그러면 또 옆에 기관에 얘기를 듣고 섭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거는 저희도 많은 교육을 듣지만 이게 약간 복불복일 수도 있는, 정말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강사분을 섭외하는데 외부의 어떤 평판을 듣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맞아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격기준은 저희도 조금 더 이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신 거를 고려해서 감안을 하는데, 이것도 너무 좁혀 놓으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또 기존에 잘해 왔는데 왜 우리 기관은 잘 섭외해서 해왔는데 이렇게 범위를 좁혀놔서 꼭 이런 분들만 섭외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도 고민을, 강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여자 2)

예를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라면 위원회에서 강사위촉표를 교수 몇 %, 활동가 몇 %, 실무자 몇 % 이렇게 설정해 놓고 아예 집합교육을 기관으로 모시는 걸 초대하는 것까지도 시설에서 만약에 기관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올하는 이분, 예를 들면 교수, 학자분, 이번에는 활동가분, 이번에는 실무자분 이렇게 매년 장기적으로 여러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 (참여자 5)

## (2) 강사 특성에 따른 인권교육에서의 문제점 도출

참여자 1은 시설장의 경우 같은 유형의 시설 인권교육 지양 등의 문제점을, 참여자 4는 교수의 경우 현장에 대한 기반 부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참여자 1은 다양한 구성의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통하여 사회복지 현장에 연계될 수 있는 강사 배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같은 유형의 시설에 가서 인권교육을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지양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왜냐하면 시설장님들은 이미 시설장에 그 지위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몇 십 년 동안 시설장으로서의 눈높이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게 이미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인권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 느끼는 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시선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이 가서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장치를, 그런 장치를 만들어주면 인권교육이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좀 효과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 1)

인권 쪽의 강사 양성을 저희가 전년도에 해봤더니 대부분 시설장님들이 오셨어요, 거의 80% 이상이 (...) 그리고 활동을 하셨을 때도 약간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포착이 돼서 (...) 시설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라든가 약간 이런 반응을 보이신다는 거죠 (참여자 1)

강사님들 섭외할 때 사실 교수님들은 저희 기관은 제일 후순위거든요. 일단 기왕이면 현장에서 좀 생생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그 시간을 활용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고, 저도 매뉴얼 자체에서 그것을 제한해야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 풀에 대한 부분들을 적정한 비율로 가지고 기관에서 기관 상황에 맞춰서 강사님 섭외할 수 있는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 (참여자 4)

요즘에는 교수님들이 외부 학생, 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현장에 대한 목소리들을 많이 흡수하실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양성하는, 교육을 통해서 학생을 양성하는 과정들에 더 집중하시기 때문에 실제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다 100% 이해하고 그걸 근간으로 교육을 커리를 준비하신다고까지는 이어가는 게 한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 뭔가 인권에 대한 영역들을 전달해 주시기 위한 별도의 과정을 조금이라도 이수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선에서 가능할는지, 받아들이실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참여자 4)

올해는 저희가 어떤 형태로 강사를 꾸렸다면 전에는 저희가 급히 하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을 대부분은 다 받아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미니멈으로 최소한의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시설에 있는 분들만이 아니라 학계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그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인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중심으로 선별을 해서 강사 양성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추천서가 아니라 활동계획서 이런 것들을 받고 이력서도 전부 다 받아서 엄정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영상, 강의하시는 영상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이게 첫 순갈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을 나오는 문제들을 좀 더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저희도 가고 있고, 올해가 2차 연도라서 전년도에 생겼던 우리가 문제 인식했던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강사를 올해는 양성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1)

### 3)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 체계에 대한 진단

#### (1) 법체계별 인권교육

참여자 1,2는 분야별로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별도의 법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특히 참여자 1은 관련법에 어느 정도의 안내와 제시가 담길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반면 참여자 3은 분야별 별도의 법체계에 대하여 다소 회의적이라고 하였다.

주로 지적장애인들 또 정신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교육 내용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용자별로 또 단계별로 인권교육이 체계화돼야 된다. (참여자 2)

저도 약간 거기에 표를 드리고 싶은 게 국가위원회에서 기본에 대한 거는 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다 다르고 그들의 특성이나 그들의 경험이라든지 현장에서의 인권의 상황이라든지 이게 다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관련된 법률에서 그거를 안내, 제시를 해줘야지 그걸 따라서 상위법에서도 보게 되고, 이게 상호 보완이 돼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 1)

저희도 여기 있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그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인권교육을 하고 있어서요. 법체계 별도로 이루어지는 (...) 그런데 이게 분야별로 꼭 나눠져야 되는 건지. 그냥 인권교육은 예를 들어서 하나로 해서 이렇게 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그냥 하나로 좀 해야 되는데 분야별로 다 따로따로 돼 있어서...(참여자 3)

## (2) 이용자 인권과 종사자 인권에 대한 교육 분리체계

참여자 5는 분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분리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강사의 몫이라고 강조하였다. 참여자 1과 4도도 현재로서는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일정 시점이 지난 후 또는 다른 방법으로 통합적인 부분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참여자 2는 각각의 교육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적의 차이가 있으므로 분리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었고, 참여자 5는 사람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통합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음을 피력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강사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분리된 체계는 동의합니다.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고, 실 예로 저희가 이용자 교육을 해보면 저희 이웃시설 갔는데 4년 전에는 드시는 얘기가 80%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문화권, 사이버 종교권 이렇게 다 활동들이 욕구가 다양해진 걸 경험한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방향성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분리하는 게 맞고, 추구하는 공동체의 목표는 강사가 제시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5)

이용자 인권하고 종사자 인권도 이게 대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면 약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각자 하더라도 이후에 어떤 일정한 시점 그러니까 본인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정도 생성이 된 다음에는 그걸 둘을 같이 놓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된다. (참여자 1)

일단은 분리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현재로는 더 강한 것 같고요. 00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차되는 이런 부분에서의 교육도 생성돼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일반적인 인권교육이 아니라 어떤

사안에 따른 이런 TFT처럼 그렇게 형성돼 있는 집단들이 상시화되면 좋겠고 그게 돼야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명명되진 않겠지만 기본적인 부분들은 교육으로 전달이 되겠지만 이것 상시화 시켜 가는 과정에서는 TFT가 계속 움직이고 사안에 따른 걸로 해서 종사자와 이용자 같이 볼 수 있는 체계 그렇게로 하면 좀 움직여볼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참여자 4)

일단 이게 분리된 계기가 사실은 이 지표가 17년도 장애인복지관 지표에 직원의 인권 쪽이 제일 먼저 들어가구요. 거기는 들어가자마자 배점이 적용됐었는데, 그거는 그런 거죠. 이용자의 인권, 인권 하다 보니까 점점 직원들의 인권이 침해 받고 소외되고 이러다 보니까 장복에서 처음으로 직원의 인권을 넣게 된 거구요. 이게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지표상에 보면 내용 자체가 틀리거든요. 직원의 인권 쪽은 동료 간에 또는 상하관계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인권침해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자 직원에게도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간 부분이고요. 이용자 쪽은 직원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침해할 수 있다거나 또는 이용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어떤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이라서 사실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또 개별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표상으로는 분리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줍니다. 그 내용상에 차이 때문이에요. (참여자 2)

(...) “내 인권은 왜 안 지켜져” 이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람이라면,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가져야 될 권리는 이런 겁니다. 그것이 내가 노숙인이든 종사자든 누구든 간에 ‘우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봐야 돼요’라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사실 분리를 하면 그 구분이 딱 지어지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참여자 3)

### (3) 평가체계의 견인 역할 여부와 개선 방안

참여자 3은 인권교육이 단기간에 어떠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평가체계로 이를 견인한다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질적 평가를 한다고 지표 등을 더 구체화하면 시설이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로 갈 수밖에 없음을 공감한다고 하였다. 참여자 2는 지금의 지표는 가장 기본적인 법을 토대로 만들어져 있으며, 인권교육의 질적 부분을 위한 고민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평가의 내용이 오히려 인권교육을 하는데 그냥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긴지 아시죠? 예를 들어 ‘무단횡단 하지 마세요’ 그럼 그게 기준인 거예요 (...)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권교육을 실제 했다, 인권교육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작용된다, 안 된다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 거잖아요. 현실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질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냐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사실 그러려면 진짜 그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려면 평가 내용이 정말 더 구체적이 돼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시설에서는 더 힘들어지죠. 그걸 또 맞춰야 되니까. 그럼 또 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 밸런스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지금 그 정도의 수준의 평가를 기준을 놓고 최소한 이 정도, 최소한의 자침으로 하는 걸로는 이해가 돼요. (...)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게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평가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요 (...) 근데 1년에 한번 4시간 교육을 받는 거 가지고 어떤 변화를 꾀할 거냐. 그건 너무 욕심이죠. (참여자 3)

저희 지표는 주로 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서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도 이용자분들을 보면 아동, 노인, 장애인, 그다음에 정신질환 쪽, 정신장애인분들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글썄요. 이거는 제가 전문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법을 토대로 해서 지표를 제시하고 있어서요. (참여자 2)

저희는 일단 좀 시간도 중요하고 사실 그 시간을 어떻게 시설들이 직원과 이용자분들에게 질적으로 담보된 교육을 제공할지 이 부분도 사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제는 어느 정도 지표가 형식적으로든 어떤 양적으로든 인권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채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좀 약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9기 평가 때는 좀 많이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이라든지 지표의 구성이라든가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인권 영역 쪽도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지표로 저희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2)

### 3.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개선방안

#### 1) 인권교육의 사회복지 현장으로의 연계성

##### (1) 인권교육의 사회복지 현장으로의 연계성 부족

참여자 5는 인권교육은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인권 실천으로 연계되는 시작점 정도라고 하였고, 참여자 3은 연계를 이야기하기에는 문화적인 변화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참여자 4는 사회복지시설 현장과 연동성이 부족한 편이라는 의견이었으며 그 이유로는 잦은 담당자 변경 등을 꼽았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교육은 정말 씨앗에 불과하고 실천은 열매이기 때문에 연계 정도는 정말 시작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 (...) 문제는 평상시에 서비스를 어떻게 질적으로 인권친화적으로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감히 표현하면 연계는 정말 미약하고 시작점인 것뿐 이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밖에 없죠.(참여자 5)

그렇게 실천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실천은 잘하고는 있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 근데 여전히 이런 실제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그 이전에 했던 행동들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아직 형식적이거나 일부 어려움이.. 아직은 남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 헌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무슨 인권을 지금 얘기를 오히려 이런 분위기들, 그런 것들의 실천이 연계되기에는 문화가 아직은 좀 더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 (참여자 3)

시민들과의 활동이라든지 어떤 시책과의 연계성 부분들은 분명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게 사회복지시설 현장과 연동성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미약하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서 제일 큰 거는 인력들이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시설도 마찬가지로 센터도 마찬가지로 담당 공무원은 본인에게 주어진 그 기간 동안만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따로따로 돌아가는 거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 상시적으로 민감성이 계속 작은 요인들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 사실 많은 업무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염두에 두고 누군가가 계속 뭔가 무시하지 않으면 바쁜 업무들 속에서 묻혀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4)

## (2) 인권교육의 사회복지 현장으로의 연계성에 대한 기대와 노력

참여자 2는 인권교육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의 업무와 조직문화가 인권적인 것으로 볼 수 있었던 만큼 그 연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후 인권교육의 질적, 단계적 차이를 통하여 현장에서 더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참여자 1은 인권교육의 목적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닌 변화의 추구인 만큼 인권의 체화를 지원 하는 인권교육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시설에 딱 들어가 보면 이 시설이 어떤지 딱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인권교육도 인권윤리강령, 직원 윤리강령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시설들은 직원들 내재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마인드도 그렇고 잡혀 있고 어떤 이용자를 대하는 그런 태도라든가 이런 거에서 있는 거죠 (...) 저희가 1년 지나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만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뭐든지 초기 입문부터 중급자, 고급자 코스까지 있듯이 그런 교육을 체계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지 현장에서 매년 매년 이렇게 같은 분 초대했는데 내용만 살짝 다르고 수준이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사실 이게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거에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인권교육의 질적인 차이를 통해서, 단계별 차이를 통해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여자 2)

인권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지식을 놓고 그걸 통해서 변화를 가져오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면 인권교육이라는 거는 지식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인권교육이 다르다는 거는 내가 체화되는 거, 그냥 스며드는 것 그런 게 있어야지만이 현장에서의 실천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 현장에서 인권적인 것들을 어떻게 실천하는 거에 대한 거는 어찌 보면 각자의 몫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걸 각자의 몫으로 하기에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계속 말씀을 하는 것 중에 있었지만 문화를 만들어가고 이게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현장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인권을 실천해 나갈 수 있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만나는 당사자들에게도 그런 걸 실천할 수 있지 않게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 1)

## 2) 인권교육의 실질화를 위한 제언

### (1) 시의적절한 인권교육 콘텐츠의 마련과 지속적 강사역량 증진

참여자 5는 해마다 그때의 인권상황에 맞는 거시적 관점의 공통 교안의 제작을 통하여 강사들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고, 참여자 2는 인권교육 강사가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소한 여기 개발원이나 인권위나 기관처럼은 최소한 그 해 연도의 어떤 아젠다에 담는 공통 교안들을 만들어 주시면 강사분들도 그 흐름은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시적인 거는 공통 교안을 만들어주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역량 강화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 (참여자 5)

(...)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그래서 교육을 인력개발원 쪽에 요청을 감히 드리자면 강사분들이 좀 이렇게 시대의 흐름도 잘 읽어야 되고 또 법적인 개정사항 이런 것들을 해서 고여 있는 물과 같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이렇게 쪽 그분들이 좀 발전하고 제공해야지 시설도 받아들이는 데 기분 좋은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오시면 좀 드리려고 했던 말씀입니다만 (...) (참여자 2)

### (2)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한 접근성 제고

참여자 2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 방식에서 벗어난 다양한 방식과 콘텐츠의 시도를 제안하였으며, 참여자 3은 사회복지에서도 인권교육이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서로 나누며 고민하고 또 가장 좋은 대처 방법 또는 가장 좋은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 세 번째 부분은 이게 다양한 교육자료가 필요한데요. 어떤 기관은 예를 들면 영화, 인권영화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기도 하고, 어떤 기관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실생활에 직접 이용자별로,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등 각자의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참여자 2)

인권교육을 우리 복지 영역에서의 인권교육이긴 하지만 인권교육이 대중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대중적으로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들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뭔가 자주 접하니까 그게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어떤 즐거움을 주는 요소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인권교육이 어떻게 하면 대중적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이 영화로 표현이 되면, 아니면 놀면 뭐하니 같은 이런 대중적인 연예 콘텐츠와 연결이 돼서 뭔가 이렇게 방송에 자꾸 누군가 드러나 가지고 (...) (참여자 3)

### (3) 인권교육체계 마련

참여자 5는 의무교육이라는 틀이 주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독립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참여자 2는 신입·재직에 따른 체계화와 공통과 선택의 체계 도입을 제안하였다. 참여자 4는 학교에서부터의 교육이 필요하며 이것이 직무와 기본교육을 연계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위한 충분한 강사풀의 마련을 요청하였다. 참여자 1은 자신의 위치에 따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인권교육체계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마련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저는 직원 입장에서는 의무교육이라는 말 자체에 부담감이 너무 크니까 용어는 바꾸지 못하더라도 같이 독립적으로 용어를 현장에서라도 쓰면 어떨까라는 게 한 가지 있고요. (참여자 5)

저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신입직원도 있고 10년차, 20년차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육 또는 경력자나 신입이나 같이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만약에 인권교육 8시간이다 그러면 그 8시간 중에 2시간은 공통적인 부분을 듣게 하고 나머지 6시간 또는 4시간 중에 2시간은 공통적인 부분, 2시간은 각자 교육을 찾아서 교육수준에 맞게 교육을 듣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자 2)

(...) 더불어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의 연계성이 조금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요. 학교 교육에서도 인권교육의 필요성들이 강조됐으면 좋겠고, 현장에 나왔을 때 직무와 기본교육으로 나뉘어서 각각이 받을 수 있는 체계들이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교수님이나, 실천 현장가나 이런 거가 아니라 실질적인 강사 풀들이 충분히 확보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여자 4)

인권교육에 대한 교육체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지금 참석하면서 했어요. 계속 신규자부터 CEO까지 있다라고 하면 그들이 그때마다 갖춰야 되는 것들이 기관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체계들이 만들어지면 내가 정말 필요한 거, 정말 그때

필요한 인권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교육체계가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데서 만들어지면 그게 좀 현장에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도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자 1)

#### (4) 인권교육 지원 체계의 필요성 제안

참여자 3은 일관되게 별도의 인권교육 담당자의 필요성을, 참여자 3과 5는 인권담당관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그 담당 업무 지정 (...) 휘슬블로어처럼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하고 우리 시대에 있어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휘슬블로어가 있어서 다니면서 뽀 뽀하고 “이거 한번 봅시다, 같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 규정 그것은 아니고 이 정도 하세요” 이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계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누군가는 정말 필요한 누군가는 있어야 돼요. 담당자가 있어야지 이거는 그렇게 아니면 못해요. (참여자 3)

특수한 것으로 들어와서 그런 대중성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걸 만약에 하게 되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좋은 분야 중에 하나가 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담당관을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잖아요. 장애인 분야에서 인권담당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누군가 그런 분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못해요. 새로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도 계속 처음부터 주장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을 지정해 주시는 것이 이런 활동의 중요성을 높인다고 인식되어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제 뭔가 하는 가봐.’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자 3)

마지막으로는 아까 ○ 선생님 말씀하셨던 건데 기관 안의 인권 담당자는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업무의 가중이 사실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저는 감히 제안하자면 사회서비스원에 지금 장애 분야가 공공성이 없잖아요, 사실은.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거기에 인권담당관을 자치구별로 둔다거나 순환근무를 시킨다거나 해가지고 인권 점검도 하고 문화도 만들고 강사도 섭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민간도 인권친화적인 시설을 만드는 게 관에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업무 분담을 해주시면 좋겠다. (참여자 5)

# 제5장

## 결론 및 제언



## 제5장 결론 및 제언

### 제1절 | 모니터링 결과 요약

본 모니터링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의무교육으로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인권교육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 체계별로 고찰하여 현황 및 실태자료를 분석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에 관한 실증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양적 분석,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의 현황 및 전문가 인식조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본 모니터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의무교육의 개별법상 법적 근거 및 현황 등을 분석하고, 현행 문제점 및 쟁점 등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종사자로서 전문적 역량을 갖추어나가도록 하는 인권교육의 목적을 확인하였다. 사회복지분야의 인권교육은 크게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인권교육과 사회복지사보수교육 내의 인권교육으로 나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개별법에 기반하여 장애인 인식교육,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인권관련 교육들이 실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내 사회복지분야의 인권교육이 개별법 내에서 인권교육, 인권침해, 인권교육, 인권침해 예방교육, 인식개선교육, 학대예방 교육 등의 명칭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같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일지라도 법체계 내에서 인권교육을 의무화한 법률이 있는가하면 인권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는 법률도 있는 등 법제도내에서 일률적으로 구현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육시간에 있어서도 개별법에서 연1회 4시간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법과 신고의무자 교육만 1시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교육시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법체계 내에서의 공통된 규정이 부재함을 파악하였다. 또한 교육기관이나 운영주체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교육관리주체가 없고 교육운영기관, 교육실시기관, 위탁기관, 심사기관이 혼재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분야 의무 인권교육의 문제점으로 현장 활용도가

떨어지는 반복적이고 비현실적인 교육내용과 집합교육 형태의 수동적인 교육방식, 강사 별 상이한 교육 역량, 교육관리 주체의 부재, 획일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소규모의 사례중심 교육방법으로의 변화, 기관의 종류 및 대상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전문화된 인권교육 성과지표 구성, 인권교육 관련 전담기구 구성, 전문성 있는 인권교육 강사 양성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 을 제작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 등록된 보수교육 의무 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유의표집과 편의표집하여 수집된 결과를 분석하였다. 응답시설은 이용시설이 53.5%로 생활시설보다 높았으며, 보건복지부의 비중이 94.4%로 여성가족부보다 높았다. 응답자의 성 별은 여성이 66.5%, 연령대는 40대가 34.2%, 직급은 최고관리자(시설장)가 30.1%, 직무는 사회복지직(생활지도원 포함)이 84.1%로 가장 높았다. 인권교육 시행의 바탕이 되는 근거법 률은 86.4%가 인지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응답 시설의 86.5%에서 인권교육 담당 실무자 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9년 인권교육 진행여부 조사 결과 92.3%의 시설이 인권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권교육 미실시 사유는 현행 직무교육에 유사 교육 과정이 있다가 31.8%로 가장 많았다. 또한 교육 진행 방법은 외부교육에 참여한 비율이 41.1%로 가장 높았다.

내부 인권교육의 연간 평균 교육횟수는 2.49회, 연간 총 참여시간 평균은 4.69시간, 회당 평균 참여인원은 15.57명으로 조사되었다. 응답 시설의 51.3%는 시설장이 최고관리자 대 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별도로 수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소관부처의 지침의 인지율은 81.4%, 지침 확인여부는 67.3%로 나타났다. 시설 자체 교육 기준으로 교육 진행강사는 각종 협회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자의 비율이 24.1%로 가장 많았고, 38.5%의 시설에서 내부 종 사자가 인권교육 진행강사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부 인권교육 시 강사 섭 외가 곤란했던 이유로는 '강사비 등 예산 부족'의 문제가 44.5%로 가장 높았고, 인권교육 설 계 및 강사 섭외 과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29.2%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을 진행한 강사의 전문성 수준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46.3%), 강사료 지급 기준은 시설 및 법인 자체 기준이 56.9%, 지급 강사비는 시간당 평균 59,62원으로 조사 되었다. 인권교육은 대부분 업무시간에 진행(87.0%)하고 있으며, 업무 시간 외 진행 시설에 서 수당 지급 여부는 미지급이 51.2%로 나타났다.

외부 인권교육은 연간 평균 2.38회 실시되며, 연간 평균 9.06시간의 인권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부교육의 회당 평균 교육시간은 3.47시간, 회당 평균 인권교육 참여 인원은 10.85명으로 나타났다. 주최 기관은 각종 협회 등 직능단체가 20.6%로 나타났고, 수강 방법은 출장 또는 교육 공가가 72.1%, 개인 휴가 사용도 23.5% 나타났다. 인권교육 수강 방법은 근무시간 내 교육이 77%이고, 업무 외 시간 교육 참여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여부는 비지급이 70.7%로 조사되었다. 인권교육의 강사의 경력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29.7%로 가장 높았고, 각종 협회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인 경우가 27.1%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의 수강 내용은 이용자 인권(아동/장애인/노인학대 등)이 90.4%로 가장 많았고, 교육 수강의 방법은 강의 중심 교육이 82.8%로 가장 높았다. 교육 수강의 정보는 지자체 관련 부서에서 얻는 경우가 38.9%로 가장 많았다. 의무 인권교육의 만족도는 1순위 응답이 평소에 몰랐던 인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며, 2순위 응답은 이용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교육 불만족과 관련해서는 반복되는 교육으로 유사한 내용 반복이 1순위와 2순위에서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평가 경험이 있는 시설은 55.8%로 조사되었고, 평가를 통한 인권교육 효과성은 43.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평가 시 인권교육과 관련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서류 위주의 형식적인 평가 문제(42.6%)가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헌연구 및 설문조사로 탐색하기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의 쟁점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해 의무 인권교육의 현안과 쟁점, 문제점 탐색 및 개선점을 파악하였다. 질적 분석 결과 인권교육은 사회복지 업무의 인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한 필수 교육이며 타 직무교육과 변별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사이버교육의 운영 현실, 교육예산의 부족, 인권 강사 섭외 범위와 강사 특성에 따른 문제점 등을 한계로 언급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토론시간의 포함, 상시교육체계의 마련, 인권교육 전담자 체계 도입 등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이버 교육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강시간을 제공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현재와 같은 법체계별 인권교육의 진행에 대하여는 업무 내용상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하나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관련법에 보다 구체적인 안내와 제시가 포함될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다. 또한 이용자 인권과 종사자 인권에 대한 교육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 역시 현재로서는 시스템적으로는 불가피하나 통합적인 부분이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강사의 역할, 다른 체계의 병행, 향후 통합 지향 등을 제시하였고, 각 교육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적의 차이로 분리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되었다.

또한 인권교육이 사회복지 현장으로 연계되는지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라면서 인권교육은 지식의 습득이 아닌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이기에 인권의 체화를 지원하는 교육이어야 할 것이며, 현장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화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사참여자들은 사회복지사 인권교육의 실질화를 위하여 시의적절할 인권교육 콘텐츠 마련을 통한 강사의 지속적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으로 체계적인 인권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교육방법과 콘텐츠를 통하여 인권교육의 심리적 접근성을 높일 것과, 무엇보다 인권교육 전담자 및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 제2절 | 제언 및 한계

### 1. 종합 제언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5조 및 개별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시설 종사자들은 해당 분야 인권교육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국내 사회복지분야의 인권교육은 개별법 내에서 인권교육, 인식개선 교육, 학대예방 교육 등의 명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도와 지침상에 의무화한 법률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법률도 있다. 또한 개별법 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된 인권 관련 조례를 통해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생기고 있지만 이 또한 일률적으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의 문제점과 제시한 구체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1) 인권교육 관련 법률체계의 정비

인권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인권교육은 각 분야마다 내용과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체계내 다양한 전달체계와의 유기적 협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인권교육 관련규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정신건강증진법」 및 「노숙인복지법」 등의 개별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권교육은 법률체계내에서 인권교육, 인권침해 예방교육, 인식개선 교육, 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등 다양한 명칭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각 개별법마다 의무화 규정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 각 분야별로 실시되는 인권교육의 양과 질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개별 법률에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분야의 경우 인권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관리되는 반면, 모호하게 명시하고 있거나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은 분야에 있어서는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 사회복지시설 평가자료나 사회복지종사자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

되었다.

법률체계 및 행정적 지침에 있어서 인권교육의 내용 및 정도의 편차가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법률 상에 인권교육에 대한 의무화 규정이 없는 법(청소년복지법)도 있고, 인권교육의 미 실시 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규정을 상세히 명시한 법(노숙인복지법)도 있으며, 인권교육을 위한 지침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 분야와 연간 사업안내 지침 내에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분야도 있는 등 분야간 편차가 크다.

대상자의 인권 취약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제정하여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개별법 내에서도 인권교육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있는 조항도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의무 인권교육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교육의 대상이 동법 제3조에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으로 명시되어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가 제외되어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만성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치료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정신건강 전달체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법체계 상의 의무교육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빠른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영향을 받는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권리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교육내용이나 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고,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 등 사회복지현장의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법정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 교육의 질에 있어 우려가 된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탑재된 인권교육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자주 되지 않아 매년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현장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 효과적인 종사자 인권교육에 대한 여건조성을 위한 정비가 요구된다.

이러한 인권교육 분야 법률체계의 재정비의 필요성에서 시작하여 2014년 10월에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인권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적지 않은 반대속에 무산되었다.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 및 체계적 관리방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의무교육 교육대상인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규정도 보다 명확히 하여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영양보호사, 재활치료사, 생활지도사, 관리직원 등 모든 종사자를 의무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의무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시설별로 상이하다. 시간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경우도 있고 최대 8시간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의식을 함양하는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시설별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종사자들이 자신이 경험하는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이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교육은 대부분 강의식 수업으로 피상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종사자가 자신의 인권과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의 함양, 인권침해 상황에서의 대처방안을 기를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제정을 기반으로 한 의무교육 시간과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권교육시스템이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분야별 사업안내 지침에 필수적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운영주체, 교육시간, 교육내용, 강사자격기준, 미 실시 관련 행정조항 등을 공통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서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인권교육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정책수단일 뿐 아니라, 인권을 배우는 것 자체가 바로 인권이며 그 과정을 통해 종사자는 인권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조직의 인권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인권교육이 본질적인 가치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현단계에서 지침의 수정이나 법개정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권교육지원법(안)을 재상정하여 인권교육에 관한 기본틀을 정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지원 책무를 규정, 인권교육종합계획 수립, 인권교육 실시 및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국가차원의 인권교육 체계적 지원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 인권교육 수행주체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교육의 수행주체인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신건강, 노숙인시설 종사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인권교육과 인권강사 양성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는 장애인, 노인, 아동분야 등의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청소년분야 시설의 인권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보수교육을 중심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 중이다. 그 외에도 각종

직능단체 및 분야별 협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기관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각 기관의 성격과 방침에 따라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의 질에서 편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관 자체교육의 실시도 교육내용과 품질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을 둘러싼 기관의 역할은 <표 5-1>에서 볼 수 있듯이 부분적이고 중첩되어 있다. 운영주체, 교육주체, 위탁기관, 심사기관, 평가기관이 혼재되어 있어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교육의 종합적인 방향이나 체계적 교육시스템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폭넓은 인권교육을 실시하는데 강점을 가진 기관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성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생의 선발, 훈련,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에 특화되어 있어 사회복지종사자 대상의 교육을 전담하기는 어렵다. 사회복지시설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타 기관들의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기관별 역할 정립과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관리체계를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직무별 인권교육에 있어서 법무부 인권교육, 경찰청 인권교육, 공무원 인권교육 등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직제가 있지만 각기 그 기능과 성격이 다르다. 사회복지종사자 인권교육은 다른 분야 인권교육과 차별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의 가장 직접적인 인권 보장의 현장이며, 특히 인권취약성이 높은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복지 업무 수행자에게 있어 인권교육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체화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실천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인권교육의 만족도를 분석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사회복지 업무 수행자를 위한 인권교육의 방향에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대다수의 시설에서 인권교육에 만족하였다고 하였지만, 교육이 진행되었던 10개 시설 중 1개 시설은 인권교육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 가장 빈번하게 응답된 것은 반복되는 의무교육이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었으며, 강의내용이 사회복지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아 교육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시설도

많은 편이었다. 반면, 교육에 만족했던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고,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내용과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을 만족한 이유로 답하였다. 종합해 보면, 사회복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권 전반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시설 이용자들의 특성에 맞춘 구체적 인권보호를 위한 내용과 그 실천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대다수의 시설에서 강의위주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시설의 상황을 반영한 이슈들을 논의하며 인권을 학습할 수 있는 토론이나 역할극을 활용한 참여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나타났는데, 사회복지 각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실천이란 무엇인지 논의하고 훈련해 볼 수 있는 참여형 인권교육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시설의 규모와 역할에 따라 인권교육 전담자를 두어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실질적인 인권교육 운영에 대한 시설장의 마인드가 요구된다. 외부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도 관련한 지원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나왔는데, 먼저 지역별 인권담당관제도이다. 사회서비스원 등에 지역별 인권담당자를 두어 시설 내 인권적 감수성을 자극하고 여러 인프라 지원 등은 연계, 인권문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또한 학교교육에서부터의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교육이 현장에까지 이어지는 상시적인 인권교육체계로의 확장, 필수 공통의 강좌 외에 자신의 직무 단계와 분야별로 원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통하여 인권의 개념에서부터 현장에서의 실천까지를 체계적으로 밟아가며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하여는 인권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시간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권교육의 수요를 제대로 채워줄 역량 있는 강사들의 양성 등이 중요할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도 인권교육 운영에 있어 큰 어려움 중 하나가 강사 섭외의 문제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강사 섭외의 루트 정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복지 현장에 적합한 콘텐츠를 가진 강사풀이 부족한 문제로 분석된다. 따라서 현재 인권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위에서는 일차적인 지식 중심의 강의가 아닌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

로 사회복지 현장에 적합한 인권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도록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책임 있게 이끌 필요가 있다.

한편 설문조사의 결과,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를 시설평가와 연계해 받은 경험이 있는 시설들은 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설평가와 연계해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를 받았던 시설 10곳 가운데 8곳에서 증빙할 서류가 너무 많거나, 서류 위주로 형식적인 평가가 진행되는 점을 개선사항으로 답하였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의 시설 평가와 연계된 인권교육 평가는 의무 인권교육의 실질화를 견인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인권교육을 보다 현실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현재 사회복지 분야 곳곳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싹 트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기관이 이러한 움직임들을 더욱 독려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책임과 관심이 있는 여러 단위들이 정보와 노력을 모으고 현장에 맞는 인권교육의 인프라를 확장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인권교육 협의체 정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러한 협의체 테이블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는 이를 촉진하는 코디네이터 역할과 이 협의체에 필요한 콘텐츠 등의 지원을 맡아 줄 인권 전문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 표에서 제시된 여러 주체들의 현재의 역할과 역량을 분석하여 이러한 역할에 적합한 기관이 어디일지를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역할을 할 기관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다. 다만 이 기관의 역할은 사회복지 분야 여러 주체의 인권교육 역량을 지원하는 역할이지 직접 모든 교육을 실시, 관리하는 역할자는 아니다.

표 5-1 |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 운영·교육·평가 주체

주체	기관	주요 인권교육 업무	특징
운영기관	각 개별시설	개별법과 지침에 의거하여 의무 교육 실시	
교육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및 증진기관	인권 관련 전문기관 사회복지영역의 전문성을 지닌 교육진행에는 한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기관	교육기관으로서의 장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위주 교육 개별법령에 의거 노인, 정신장애인 교육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 교육을 진행중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에서의 인권교육 실시	대상이 사회복지사만 해당 인권 특화 교육에는 약함
	각종 직능단체, 협회 등		인권교육에 특화되어 있지 않음
	시설 자체교육	자격기준을 충족한 내부강사로 진행	편의성은 있지만, 교육내용과 질의 평가가 어려움 인성교육에 머무를 가능성
강사양성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분야별 인권강사 양성	강사의 전문성과 자격기준에 대한 비판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전반적 분야 인권강사 양성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지원(강사섭외, 교육예산 지원 등)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 외 분야, 폭력예방교육 분야로 치우치도 함
	각 협회	각 분야별 인권강사 양성	장기적인 호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한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권강사양성과정 이수시 시설 운영자 자체 인권교육가능	시설 자체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재고필요
평가기관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시설 평가 위탁수행기관(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 평가 배점 5점)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적 시각을 가지기 어려움
모니터링주체	모호(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협회?)	실질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 주체의 부재	사회복지종사자 인권교육 전담기구와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도출

### 3) 인권교육 데이터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재는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교육에 대한 데이터가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 등의 관련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수집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통합된 인권교육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인권교육의 모니터링 주체도 사회복지시설평가 내 인권교육 항목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평가 및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전담하고 있는 인권교육 관리기구가 부재하여 의무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시행여부 및 교육내용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 인권교육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의 부재는 인권교육이 형식적, 피상적 교육에만 머무르게 하는 이유이자 장기적으로 인권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큰 틀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다양한 기관과 조직 수준에서 수합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권교육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교육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재 각 기관 및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의무 인권교육 및 보수교육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전담기관내 사회복지종사자 인권교육 사이트를 제작해서 의무교육 이수여부, 교육시간 등을 직접 교육대상자가 입력할 수 있게 하고 수수료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여 사회복지종사자 인권교육에 대한 One-Stop Service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하위메뉴로는 사회복지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육정보 안내, 교육강사 섭외가 바로 가능하도록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의 통합정보시스템을 연동하고, 인권교육 관련 통계, 교육매뉴얼 등의 통합정보데이터 DB를 구축함을 통해 인권교육 대상자가 한눈에 인권과 인권교육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관리자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인권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지역별, 시설유형별, 대상자별 의무교육 이수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행정적 용이성이 있으며, 데이터 축적시 연도별 인권교육 현황 데이터를 통해서 인권교육의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2 | 인권교육 영역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

영역	평가	개선방안
법령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명칭의 혼재</li> <li>개별법 상 인권교육에 대한 규정이 상이</li> <li>각 분야간 편차가 발생. 예를들어 법령과 지침이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는 정신건강 분야 같은 경우는 실제 교육평가 점수도 높고 체계적 운영, 청소년 복지법의 경우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이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교육지원법 제정 2014년 시도되었으나 중단, 인권교육지원법(안) 제정에 대한 재고려 필요</li> <li>정신건강법상 정신건강센터 종사자 인권교육에 대한 조항 추가</li> <li>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 법 체계 재정비</li> </ul>
교육수행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수행주체가 여러곳.</li> <li>운영주체, 교육주체, 평가주체 등이 혼재</li> <li>체계적 교육관리주체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수행주체는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각 직능단체 및 협회 등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인권증진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성을 담보로 한 영역의 교육에는 한계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와 타 기관들의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기관별 역할 정립과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관리체계를 재구성 해야함.</li> <li>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전담기관을 설치</li> <li>방법은 신규설치던 기존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도 좋음.</li> </ul>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획일적, 피상적 교육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제 사회복지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li> <li>각 분야별 양질의 표준 교육교재 및 콘텐츠 개발, 보급</li> </ul>
교육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방적, 강의식 교육</li> <li>사이버교육의 문제점. 제대로 듣는지 여부도 파악이 잘 안되는 문제</li> <li>직급별 차별화된 교육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고민.</li> <li>토론, 역할극, 생방향 수업, 플립트러닝 시청각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한 고민 필요</li> <li>사이버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li> <li>직급별, 역할별 차별화된 교육 진행</li> </ul>
강사자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사자격기준관리 필요</li> <li>사회복지영역에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강사 양성교육 필요</li> <li>지역에서는 역량있는 강사섭외 어려움</li> <li>강사역량 관리 필요</li> <li>일부 교육은 인성교육, 힐링차원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야별, 지역별 강사 양성</li> <li>강사의 역량 검증 및 교육모니터링필요</li> <li>강사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필요(보수교육 또는 강사역량지원 자문시스템 등)</li> </ul>
모니터링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니터링 주체도 다양(보수교육은 사회보장정보원, 의무교육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안되어 있음) 수행여부 파악도 안되고, 질적인 부분의 관리에 대해 책임기관이 부재</li> <li>인권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기준 상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무교육 DB 제작</li> <li>전담기관내 관리사이트 제작해서 교육시간, 이수여부 등 직접 교육대상자가 직접 입력하고 수료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li> <li>인권교육 미이수기관 미이수자에 대한 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의견수렴필요</li> </ul>	<p>마련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의견수렴필요</li> <li>교육참여자들이 인권교육관련 정책과 제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채널 마련</li> </ul>
<p>인권교육 지원시스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기관의 인권교육 기획 경험이나 역량 부족</li> <li>일부 지자체 또는 일부 영역에서만 인권교육강사를 파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li> <li>개별 기관의 상황에 맞는 인권교육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하고 지원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강사파견 등)</li> <li>시설장의 인권책무에 대한 자각과 인권의식이 시설의 인권역량과 연결되므로 시설장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정신건강 시설의 경우와 같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교육은 개별기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므로 각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li> <li>중앙차원의 인권교육전담기관 설치도 필요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인권도시, 아동친화도시 등 지자체의 정책과 조화를 이룬 인권교육 지원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li> <li>단기적으로는 예산이 없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인권교육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전문성있는 강사를 파견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li> <li>시설장, 최고중간관리자교육은 지자체 및 관련 협회가 진행할 수 있는 체계필요</li> <li>교육강사 섭외, 교육정보 안내 제공</li> </ul>

부  
록

부록에 제시된 지역별, 시설유형별 인권교육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교차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연구진의 분석과 결과해석 방향과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의무 인권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표본은 비확률 유의표집과 편의표집 방식으로 선정되었고, 교차분석에 필요한 지역별, 시설별로 최소한의 표본을 구성하도록 할당하는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교차표에 제시된 결과를 토대로 지역 및 시설유형별 특성을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 [부록 1 : 설문조사 결과 교차표]

〈표 1〉 운영주체(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사회 복지 법인		사단 법인		재단 법인		학교 법인		의료 법인		종교 법인		비법인 민간 단체		개인 운영		국립·지방 자치 단체		기타		총계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1,336	41.8	410	12.8	217	6.8	29	0.9	12	0.4	65	2.0	56	1.8	987	30.9	28	0.9	58	1.8	3,198	100.0	
세 부 유 형	노인	410	38.2	43	4.0	54	5.0	6	0.6	8	0.7	13	1.2	16	1.5	498	46.5	8	0.7	16	1.5	1,072	100.0
	아동	174	23.6	70	9.5	65	8.8	0	0.0	0	0.0	24	3.3	15	2.0	362	49.1	6	0.8	21	2.8	737	100.0
	장애인	534	59.4	223	24.8	52	5.8	1	0.1	0	0.0	10	1.1	2	0.2	59	6.6	5	0.6	13	1.4	899	100.0
	정신보건	40	39.6	8	7.9	7	6.9	4	4.0	3	3.0	2	2.0	2	2.0	30	29.7	1	1.0	4	4.0	101	100.0
	노숙인	25	51.0	8	16.3	7	14.3	0	0.0	0	0.0	1	2.0	4	8.2	4	8.2	0	0.0	0	0.0	49	100.0
	지역사회 복지관	87	68.0	10	7.8	13	10.2	10	7.8	0	0.0	3	2.3	1	0.8	0	0.0	3	2.3	1	0.8	128	100.0
	지역자활 센터	10	29.4	10	29.4	4	11.8	2	5.9	0	0.0	2	5.9	2	5.9	0	0.0	2	5.9	2	5.9	34	100.0
	여성	23	24.5	29	30.9	5	5.3	1	1.1	1	1.1	6	6.4	9	9.6	19	20.2	0	0.0	1	1.1	94	100.0
	한부모 가족	20	71.4	1	3.6	5	17.9	0	0.0	0	0.0	1	3.6	0	0.0	1	3.6	0	0.0	0	0.0	28	100.0
	다문화 가족	11	35.5	6	19.4	0	0.0	5	16.1	0	0.0	2	6.5	4	12.9	1	3.2	2	6.5	0	0.0	31	100.0
청소년	2	8.0	2	8.0	5	20.0	0	0.0	0	0.0	1	4.0	1	4.0	13	52.0	1	4.0	0	0.0	25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209	42.7	88	18.0	47	9.6	9	1.8	1	0.2	14	2.9	6	1.2	94	19.2	7	1.4	15	3.1	490	100.0
	부산	95	51.4	24	13.0	14	7.6	2	1.1	1	0.5	3	1.6	3	1.6	38	20.5	3	1.6	2	1.1	185	100.0
	대구	69	46.0	16	10.7	6	4.0	0	0.0	2	1.3	3	2.0	2	1.3	51	34.0	1	0.7	0	0.0	150	100.0
	인천	41	26.5	27	17.4	13	8.4	1	0.6	1	0.6	4	2.6	5	3.2	53	34.2	5	3.2	5	3.2	155	100.0
	광주	42	33.3	23	18.3	7	5.6	0	0.0	0	0.0	2	1.6	1	0.8	48	38.1	2	1.6	1	0.8	126	100.0
	대전	47	40.9	9	7.8	4	3.5	2	1.7	0	0.0	2	1.7	0	0.0	51	44.3	0	0.0	0	0.0	115	100.0
	울산	44	61.1	11	15.3	0	0.0	0	0.0	0	0.0	3	4.2	1	1.4	11	15.3	1	1.4	1	1.4	72	100.0
	경기	206	34.7	54	9.1	40	6.7	5	0.8	2	0.3	11	1.9	10	1.7	249	41.9	4	0.7	13	2.2	594	100.0
	강원	83	50.9	23	14.1	7	4.3	1	0.6	1	0.6	1	0.6	3	1.8	39	23.9	3	1.8	2	1.2	163	100.0
	충북	36	24.8	25	17.2	23	15.9	1	0.7	0	0.0	1	0.7	7	4.8	47	32.4	0	0.0	5	3.4	145	100.0
	충남	56	37.1	15	9.9	10	6.6	0	0.0	0	0.0	3	2.0	3	2.0	64	42.4	0	0.0	0	0.0	151	100.0
	전북	80	47.9	15	9.0	7	4.2	1	0.6	0	0.0	4	2.4	2	1.2	56	33.5	0	0.0	2	1.2	167	100.0
	전남	91	43.5	22	10.5	8	3.8	3	1.4	0	0.0	4	1.9	2	1.0	73	34.9	1	0.5	5	2.4	209	100.0
	경북	115	50.4	29	12.7	11	4.8	2	0.9	3	1.3	3	1.3	3	1.3	57	25.0	1	0.4	4	1.8	228	100.0
	경남	79	45.7	16	9.2	16	9.2	2	1.2	0	0.0	7	4.0	7	4.0	44	25.4	0	0.0	2	1.2	173	100.0
제주	31	54.4	12	21.1	4	7.0	0	0.0	0	0.0	0	0.0	0	0.0	9	15.8	0	0.0	1	1.8	57	100.0	
세종	12	66.7	1	5.6	0	0.0	0	0.0	1	5.6	0	0.0	1	5.6	3	16.7	0	0.0	0	0.0	18	100.0	
시 설 유 형	생활 시설	732	49.2	88	5.9	95	6.4	3	0.2	8	0.5	18	1	14	0.9	515	34.6	6	0.4	9	0.6	1,488	100.0
	이용 시설	604	35.3	322	18.8	122	7.1	26	1.5	4	0.2	47	3	42	2.5	472	27.6	22	1.3	49	2.9	1,710	100.0

〈표 2〉 시설설립 년 수(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5년 이하		6~10년 이하		11~20년 이하		21~30년 이하		31년 이상		총계		
	N	%	N	%	N	%	N	%	N	%	N	%	
전체	586	18.4	568	17.8	1,348	42.3	406	12.7	279	8.8	3,187	100.0	
세 부 유 형	노인	324	30.3	239	22.4	400	37.5	73	6.8	32	3.0	1,068	100.0
	아동	104	14.1	119	16.2	386	52.4	31	4.2	96	13.0	736	100.0
	장애인	110	12.3	155	17.3	367	41.0	168	18.8	95	10.6	895	100.0
	정신보건	10	9.9	18	17.8	43	42.6	17	16.8	13	12.9	101	100.0
	노숙인	4	8.2	6	12.2	15	30.6	10	20.4	14	28.6	49	100.0
	지역사회 복지관	11	8.6	3	2.3	20	15.6	76	59.4	18	14.1	128	100.0
	지역자활 센터	4	11.8	1	2.9	14	41.2	15	44.1	0	0.0	34	100.0
	여성	8	8.6	14	15.1	55	59.1	13	14.0	3	3.2	93	100.0
	한부모 가족	1	3.6	5	17.9	12	42.9	2	7.1	8	28.6	28	100.0
	다문화 가족	1	3.3	5	16.7	24	80.0	0	0.0	0	0.0	30	100.0
	청소년	9	36.0	3	12.0	12	48.0	1	4.0	0	0.0	25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81	16.6	97	19.8	186	38.0	81	16.6	44	9.0	489	100.0
	부산	39	21.1	25	13.5	73	39.5	26	14.1	22	11.9	185	100.0
	대구	19	12.7	31	20.7	60	40.0	23	15.3	17	11.3	150	100.0
	인천	36	23.4	22	14.3	60	39.0	28	18.2	8	5.2	154	100.0
	광주	17	13.5	30	23.8	48	38.1	18	14.3	13	10.3	126	100.0
	대전	17	14.9	20	17.5	44	38.6	21	18.4	12	10.5	114	100.0
	울산	17	23.6	11	15.3	31	43.1	9	12.5	4	5.6	72	100.0
	경기	164	27.8	99	16.8	219	37.1	60	10.2	48	8.1	590	100.0
	강원	25	15.4	27	16.7	76	46.9	24	14.8	10	6.2	162	100.0
	충북	27	18.6	21	14.5	69	47.6	15	10.3	13	9.0	145	100.0
	충남	27	17.9	34	22.5	68	45.0	8	5.3	14	9.3	151	100.0
	전북	27	16.2	24	14.4	79	47.3	19	11.4	18	10.8	167	100.0
	전남	25	12.0	39	18.7	110	52.6	19	9.1	16	7.7	209	100.0
	경북	25	11.1	45	19.9	107	47.3	30	13.3	19	8.4	226	100.0
	경남	27	15.6	32	18.5	85	49.1	16	9.2	13	7.5	173	100.0
	제주	10	17.9	8	14.3	26	46.4	6	10.7	6	10.7	56	100.0
세종	3	16.7	3	16.7	7	38.9	3	16.7	2	11.1	18	10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278	18.7	296	19.9	539	36.2	149	10.0	225	15.1	1,487	100.0
	이용시설	308	18.1	272	16.0	809	47.6	257	15.1	54	3.2	1,700	100.0

〈표 3〉 종사자 수(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5인 이하		6~20인		21인 이상		총계		
	N	%	N	%	N	%	N	%	
전체	1,168	37.8	1,061	34.4	857	27.8	3,086	100.0	
세 부 유 형	노인	68	6.6	547	53.3	412	40.1	1,027	100.0
	아동	590	82.6	50	7.0	74	10.4	714	100.0
	장애인	332	38.2	262	30.1	276	31.7	870	100.0
	정신보건	51	50.5	31	30.7	19	18.8	101	100.0
	노숙인	15	33.3	22	48.9	8	17.8	45	100.0
	지역사회 복지관	5	4.0	65	52.0	55	44.0	125	100.0
	지역자활 센터	4	12.1	27	81.8	2	6.1	33	100.0
	여성	58	64.4	32	35.6	0	0.0	90	100.0
	한부모 가족	21	75.0	7	25.0	0	0.0	28	100.0
	다문화 가족	4	13.8	15	51.7	10	34.5	29	100.0
	청소년	20	83.3	3	12.5	1	4.2	24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206	43.6	147	31.1	120	25.4	473
부산		73	40.8	49	27.4	57	31.8	179	100.0
대구		70	46.7	43	28.7	37	24.7	150	100.0
인천		62	41.3	53	35.3	35	23.3	150	100.0
광주		52	43.0	42	34.7	27	22.3	121	100.0
대전		47	43.1	32	29.4	30	27.5	109	100.0
울산		36	50.7	19	26.8	16	22.5	71	100.0
경기		161	28.2	231	40.5	179	31.3	571	100.0
강원		57	36.5	60	38.5	39	25.0	156	100.0
충북		50	35.5	50	35.5	41	29.1	141	100.0
충남		56	39.2	45	31.5	42	29.4	143	100.0
전북		62	39.0	53	33.3	44	27.7	159	100.0
전남		73	36.1	71	35.1	58	28.7	202	100.0
경북		83	37.7	79	35.9	58	26.4	220	100.0
경남		62	36.7	53	31.4	54	32.0	169	100.0
제주		14	25.9	26	48.1	14	25.9	54	100.0
세종		4	22.2	8	44.4	6	33.3	18	10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364	25.4	512	35.7	559	39.0	1,435	100.0
	이용시설	804	48.7	549	33.3	298	18.0	1,651	100.0

〈표 4〉 이용시설 이용자 수(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1~49명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		총계		
	N	%	N	%	N	%	N	%	N	%	N	%	
전체	1,123	69.2	103	6.3	143	8.8	72	4.4	182	11.2	1,623	100.0	
세 부 유 형	노인	192	51.1	48	12.8	47	12.5	20	5.3	69	18.4	376	100.0
	아동	507	98.6	1	0.2	2	0.4	1	0.2	3	0.6	514	100.0
	장애인	338	74.3	33	7.3	40	8.8	15	3.3	29	6.4	455	100.0
	정신보건	34	75.6	7	15.6	3	6.7	0	0.0	1	2.2	45	100.0
	노숙인	5	45.5	1	9.1	1	9.1	1	9.1	3	27.3	11	100.0
	지역사회 복지관	8	7.3	2	1.8	16	14.7	26	23.9	57	52.3	109	100.0
	지역자활 센터	2	5.9	9	26.5	20	58.8	1	2.9	2	5.9	34	100.0
	여성	27	52.9	1	2.0	9	17.6	4	7.8	10	19.6	51	100.0
	한부모 가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문화 가족	10	35.7	1	3.6	5	17.9	4	14.3	8	28.6	28	100.0
	청소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204	68.5	19	6.4	25	8.4	13	4.4	37	12.4	298	100.0
	부산	59	59.6	5	5.1	13	13.1	7	7.1	15	15.2	99	100.0
	대구	67	72.8	2	2.2	9	9.8	2	2.2	12	13.0	92	100.0
	인천	49	65.3	5	6.7	7	9.3	4	5.3	10	13.3	75	100.0
	광주	58	76.3	3	3.9	4	5.3	3	3.9	8	10.5	76	100.0
	대전	36	70.6	2	3.9	5	9.8	3	5.9	5	9.8	51	100.0
	울산	26	65.0	2	5.0	1	2.5	1	2.5	10	25.0	40	100.0
	경기	175	71.1	18	7.3	12	4.9	9	3.7	32	13.0	246	100.0
	강원	55	73.3	4	5.3	8	10.7	0	0.0	8	10.7	75	100.0
	충북	49	66.2	4	5.4	10	13.5	6	8.1	5	6.8	74	100.0
	충남	52	73.2	3	4.2	8	11.3	2	2.8	6	8.5	71	100.0
	전북	52	69.3	7	9.3	7	9.3	5	6.7	4	5.3	75	100.0
	전남	67	69.1	13	13.4	7	7.2	7	7.2	3	3.1	97	100.0
	경북	77	68.1	6	5.3	12	10.6	6	5.3	12	10.6	113	100.0
	경남	67	67.0	7	7.0	11	11.0	4	4.0	11	11.0	100	100.0
	제주	27	81.8	2	6.1	2	6.1	0	0.0	2	6.1	33	100.0
	세종	3	37.5	1	12.5	2	25.0	0	0.0	2	25.0	8	10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이용시설	1,123	69.2	103	6.3	143	8.8	72	4.4	182	11.2	1,623	100.0

〈표 5〉 생활시설 이용자 수(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1~49명		5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총계		
	N	%	N	%	N	%	N	%	N	%	
전체	1,116	77.2	255	17.6	70	4.8	5	0.3	1,446	100.0	
세 부 유 형	노인	462	72.3	143	22.4	33	5.2	1	0.2	639	100.0
	아동	171	80.7	37	17.5	3	1.4	1	0.5	212	100.0
	장애인	340	82.9	59	14.4	11	2.7	0	0.0	410	100.0
	정신보건	38	69.1	3	5.5	13	23.6	1	1.8	55	100.0
	노숙인	20	52.6	8	21.1	9	23.7	1	2.6	38	100.0
	지역사회 복지관	0	0.0	0	0.0	0	0.0	0	0.0	0	0.0
	지역자활 센터	0	0.0	0	0.0	0	0.0	0	0.0	0	0.0
	여성	36	90.0	2	5.0	1	2.5	1	2.5	40	100.0
	한부모 가족	26	92.9	2	7.1	0	0.0	0	0.0	28	100.0
	다문화 가족	0	0.0	0	0.0	0	0.0	0	0.0	0	0.0
	청소년	23	95.8	1	4.2	0	0.0	0	0.0	24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137	84.0	21	12.9	5	3.1	0	0.0	163	100.0
	부산	57	77.0	12	16.2	5	6.8	0	0.0	74	100.0
	대구	37	66.1	11	19.6	7	12.5	1	1.8	56	100.0
	인천	60	83.3	11	15.3	1	1.4	0	0.0	72	100.0
	광주	38	80.9	6	12.8	2	4.3	1	2.1	47	100.0
	대전	49	79.0	10	16.1	2	3.2	1	1.6	62	100.0
	울산	22	81.5	4	14.8	1	3.7	0	0.0	27	100.0
	경기	241	73.7	67	20.5	19	5.8	0	0.0	327	100.0
	강원	63	75.9	18	21.7	2	2.4	0	0.0	83	100.0
	충북	45	68.2	12	18.2	7	10.6	2	3.0	66	100.0
	충남	61	82.4	10	13.5	3	4.1	0	0.0	74	100.0
	전북	76	88.4	8	9.3	2	2.3	0	0.0	86	100.0
	전남	82	78.1	20	19.0	3	2.9	0	0.0	105	100.0
	경북	87	81.3	16	15.0	4	3.7	0	0.0	107	100.0
	경남	42	64.6	18	27.7	5	7.7	0	0.0	65	100.0
	제주	14	63.6	8	36.4	0	0.0	0	0.0	22	100.0
	세종	5	50.0	3	30.0	2	20.0	0	0.0	10	10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1,116	77.2	255	17.6	70	4.8	5	0.3	1,446	100.0
	이용시설	0	0.0	0	0.0	0	0.0	0	0.0	0	0.0

〈표 6〉 인권교육 시행 법적 근거(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인권교육 시행의 근거법을 인지 여부		국가인권 위원회법		정신 보건법		노숙인 자립지원 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 사업법		아동 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장애인 복지법		노인복지 법		장애인고 용 촉진 및 직업재활 법		노인장기 요양보험 법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2,763	86.4	976	35.3	168	6.1	68	2.5	1,189	43.0	602	21.8	76	2.8	599	21.7	744	26.9	116	4.2	418	15.1	
세 부 유 형	노인	971	90.6	341	35.1	28	2.9	12	1.2	342	35.2	47	4.8	5	.5	35	3.6	706	72.7	19	2.0	409	42.1
	아동	590	80.1	205	34.7	12	2.0	0	0.0	218	36.9	475	80.5	30	5.1	7	1.2	4	.7	6	1.0	0	0.0
	장애인	791	88.0	280	35.4	22	2.8	8	1.0	405	51.2	16	2.0	7	.9	512	64.7	6	.8	73	9.2	3	.4
	정신보건	97	96.0	31	32.0	88	90.7	0	0.0	23	23.7	1	1.0	0	0.0	9	9.3	0	0.0	0	0.0	0	0.0
	노숙인	48	98.0	16	33.3	10	20.8	43	89.6	6	12.5	1	2.1	1	2.1	2	4.2	2	4.2	1	2.1	1	2.1
	지역사회 복지관	108	84.4	53	49.1	4	3.7	3	2.8	81	75.0	10	9.3	1	.9	9	8.3	11	10.2	6	5.6	3	2.8
	지역자활 센터	20	58.8	6	30.0	0	0.0	0	0.0	15	75.0	2	10.0	1	5.0	3	15.0	0	0.0	1	5.0	1	5.0
	여성	69	73.4	21	30.4	4	5.8	2	2.9	50	72.5	25	36.2	17	24.6	18	26.1	10	14.5	4	5.8	0	0.0
	한부모 가족	25	89.3	12	48.0	0	0.0	0	0.0	22	88.0	1	4.0	1	4.0	0	0.0	0	0.0	1	4.0	0	0.0
	다문화 가족	22	71.0	5	22.7	0	0.0	0	0.0	19	86.4	7	31.8	2	9.1	4	18.2	5	22.7	5	22.7	1	4.5
	청소년	22	88.0	6	27.3	0	0.0	0	0.0	8	36.4	17	77.3	11	50.0	0	0.0	0	0.0	0	0.0	0	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420	85.7	137	32.6	40	9.5	14	3.3	177	42.1	93	22.1	11	2.6	91	21.7	108	25.7	25	6.0	58	13.8
	부산	162	87.6	60	37.0	12	7.4	5	3.1	79	48.8	34	21.0	2	1.2	37	22.8	40	24.7	5	3.1	23	14.2
	대구	133	88.7	38	28.6	7	5.3	4	3.0	58	43.6	36	27.1	3	2.3	26	19.5	32	24.1	3	2.3	18	13.5
	인천	127	81.9	59	46.5	10	7.9	3	2.4	59	46.5	26	20.5	6	4.7	26	20.5	35	27.6	5	3.9	21	16.5
	광주	112	88.9	41	36.6	7	6.3	0	0.0	57	50.9	29	25.9	6	5.4	23	20.5	22	19.6	3	2.7	14	12.5
	대전	102	88.7	38	37.3	9	8.8	4	3.9	49	48.0	18	17.6	3	2.9	25	24.5	19	18.6	1	1.0	10	9.8
	울산	66	91.7	18	27.3	3	4.5	3	4.5	33	50.0	11	16.7	3	4.5	23	34.8	16	24.2	4	6.1	6	9.1
	경기	523	88.0	202	38.6	34	6.5	16	3.1	224	42.8	89	17.0	15	2.9	109	20.8	173	33.1	25	4.8	98	18.7
	강원	144	88.3	50	34.7	2	1.4	2	1.4	50	34.7	36	25.0	4	2.8	38	26.4	42	29.2	7	4.9	25	17.4
	충북	122	84.1	35	28.7	4	3.3	2	1.6	55	45.1	29	23.8	4	3.3	30	24.6	38	31.1	3	2.5	20	16.4
	충남	125	82.8	41	32.8	9	7.2	2	1.6	37	29.6	30	24.0	1	.8	20	16.0	34	27.2	8	6.4	17	13.6
	전북	145	86.8	54	37.2	6	4.1	3	2.1	56	38.6	38	26.2	1	.7	25	17.2	39	26.9	4	2.8	21	14.5
	전남	183	87.6	60	32.8	9	4.9	2	1.1	80	43.7	52	28.4	6	3.3	38	20.8	50	27.3	8	4.4	25	13.7
	경북	194	85.1	71	36.6	11	5.7	5	2.6	85	43.8	39	20.1	5	2.6	42	21.6	46	23.7	6	3.1	28	14.4
	경남	140	80.9	53	37.9	3	2.1	2	1.4	61	43.6	34	24.3	5	3.6	34	24.3	33	23.6	8	5.7	24	17.1
	제주	51	89.5	15	29.4	1	2.0	1	2.0	23	45.1	7	13.7	1	2.0	11	21.6	14	27.5	1	2.0	6	11.8
	세종	14	77.8	4	28.6	1	7.1	0	0.0	6	42.9	1	7.1	0	0.0	1	7.1	3	21.4	0	0.0	4	28.6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1,357	91.2	520	38.3	90	6.6	42	3.1	552	40.7	187	13.8	34	2.5	306	22.5	455	33.5	31	2.3	273	20.1
	이용시설	1,406	82.2	456	32.4	78	5.5	26	1.8	637	45.3	415	29.5	42	3.0	293	20.8	289	20.6	85	6.0	145	10.3

〈표 7〉 인권교육 시행 방법(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근거 법률 중복 시, 인권교육 방법		시설 내 인권교육 업무 담당자 지정 여부		시설 연간 운영계획서 내 의무 인권교육 계획 포함 여부		
	N	%	N	%	N	%	
전체	1,029	75.8	2,765	86.5	2,956	92.4	
세 부 유 형	노인	408	73.4	970	90.5	1,008	94.0
	아동	227	84.1	587	79.6	671	91.0
	장애인	266	74.3	798	88.8	848	94.3
	정신보건	26	60.5	92	91.1	100	99.0
	노숙인	14	73.7	43	87.8	47	95.9
	지역사회 복지관	30	73.2	119	93.0	122	95.3
	지역자활 센터	5	100.0	23	67.6	21	61.8
	여성	30	85.7	72	76.6	70	74.5
	한부모 가족	5	45.5	24	85.7	26	92.9
	다문화 가족	9	100.0	19	61.3	19	61.3
	청소년	9	81.8	18	72.0	24	96.0
	시 설 소 재 지	서울	141	68.8	420	85.7	459
부산		56	67.5	158	85.4	171	92.4
대구		51	85.0	135	90.0	141	94.0
인천		54	75.0	133	85.8	141	91.0
광주		43	70.5	117	92.9	119	94.4
대전		37	77.1	102	88.7	108	93.9
울산		19	67.9	60	83.3	68	94.4
경기		214	80.1	527	88.7	552	92.9
강원		48	72.7	145	89.0	152	93.3
충북		48	72.7	123	84.8	131	90.3
충남		42	77.8	123	81.5	138	91.4
전북		57	82.6	146	87.4	160	95.8
전남		71	81.6	177	84.7	195	93.3
경북		69	75.0	188	82.5	204	89.5
경남		55	76.4	146	84.4	149	86.1
제주		20	87.0	51	89.5	53	93.0
세종		4	80.0	14	77.8	15	83.3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534	76.3	1,341	90.1	1,428	96.0
	이용시설	495	75.2	1,424	83.3	1,528	89.4

〈표 8〉 2019년 인권교육 실시 여부와 미 실시 사유(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2019년 1년간 인권교육 진행 여부		인권교육 미 실시 사유														
			시설종사자 요구 없음		상급기관 지침 없음		현행 직무교육에 유사 교육과정 있음		관리자가 필요성 느끼지 못함		교육진행 예산 부족		교육진행 인력 부족		기타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2,953	92.3	17	6.9	54	22.0	78	31.8	6	2.4	22	9.0	30	12.2	110	44.9	
세 부 유 형	노인	997	93.0	3	4.0	9	12.0	15	20.0	0	0.0	7	9.3	6	8.0	49	65.3
	아동	671	91.0	4	6.1	14	21.2	33	50.0	1	1.5	5	7.6	9	13.6	26	39.4
	장애인	866	96.3	2	6.1	4	12.1	8	24.2	0	0.0	2	6.1	7	21.2	20	60.6
	정신보건	97	96.0	0	0.0	0	0.0	2	50.0	0	0.0	0	0.0	1	25.0	3	75.0
	노숙인	48	98.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지역사회 복지관	115	89.8	3	23.1	3	23.1	3	23.1	1	7.7	1	7.7	2	15.4	3	23.1
	지역자활 센터	23	67.6	2	18.2	4	36.4	3	27.3	0	0.0	1	9.1	1	9.1	2	18.2
	여성	69	73.4	1	4.0	13	52.0	4	16.0	2	8.0	5	20.0	3	12.0	3	12.0
	한부모 가족	26	92.9	0	0.0	1	50.0	0	0.0	0	0.0	0	0.0	0	0.0	1	50.0
	다문화 가족	20	64.5	1	9.1	6	54.5	7	63.6	1	9.1	1	9.1	1	9.1	2	18.2
	청소년	21	84.0	1	25.0	0	0.0	2	50.0	1	25.0	0	0.0	0	0.0	0	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454	92.7	1	2.8	9	25.0	14	38.9	0	0.0	0	0.0	2	5.6	20	55.6
	부산	173	93.5	0	0.0	1	8.3	5	41.7	0	0.0	1	8.3	1	8.3	7	58.3
	대구	140	93.3	2	20.0	4	40.0	5	50.0	0	0.0	1	10.0	2	20.0	3	30.0
	인천	135	87.1	2	10.0	3	15.0	6	30.0	1	5.0	0	0.0	6	30.0	9	45.0
	광주	121	96.0	0	0.0	0	0.0	3	60.0	0	0.0	1	20.0	0	0.0	1	20.0
	대전	108	93.9	0	0.0	2	28.6	4	57.1	1	14.3	0	0.0	0	0.0	3	42.9
	울산	68	94.4	0	0.0	1	25.0	2	50.0	0	0.0	0	0.0	0	0.0	1	25.0
	경기	543	91.4	4	7.8	6	11.8	9	17.6	0	0.0	6	11.8	9	17.6	29	56.9
	강원	153	93.9	0	0.0	2	20.0	3	30.0	0	0.0	1	10.0	3	30.0	2	20.0
	충북	137	94.5	0	0.0	2	25.0	3	37.5	1	12.5	1	12.5	1	12.5	3	37.5
	충남	139	92.1	1	8.3	4	33.3	2	16.7	0	0.0	0	0.0	0	0.0	8	66.7
	전북	154	92.2	1	7.7	3	23.1	5	38.5	1	7.7	0	0.0	0	0.0	4	30.8
	전남	196	93.8	2	15.4	4	30.8	4	30.8	1	7.7	2	15.4	0	0.0	5	38.5
	경북	214	93.9	1	7.1	5	35.7	3	21.4	1	7.1	4	28.6	1	7.1	4	28.6
	경남	152	87.9	2	9.5	6	28.6	8	38.1	0	0.0	1	4.8	3	14.3	6	28.6
	제주	51	89.5	1	16.7	2	33.3	1	16.7	0	0.0	3	50.0	1	16.7	4	66.7
	세종	15	83.3	0	0.0	0	0.0	1	33.3	0	0.0	1	33.3	1	33.3	1	33.3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1,413	95.0	3	4.0	12	16.0	19	25.3	2	2.7	12	16.0	9	12.0	37	49.3
	이용시설	1,540	90.1	14	8.2	42	24.7	59	34.7	4	2.4	10	5.9	21	12.4	73	42.9

〈표 9〉 인권교육 미실시 불이익 인지 및 경험 여부(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인권교육 미실시 경우 불이익이 있음을 알고 있음		인권교육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경험		
	N	%	N	%	
전체	1,675	52.4	37	1.2	
세 부 유 형	노인	613	57.2	14	1.3
	아동	343	46.5	9	1.2
	장애인	501	55.7	7	0.8
	정신보건	60	59.4	1	1.0
	노숙인	34	69.4	0	0.0
	지역사회 복지관	58	45.3	3	2.3
	지역자활 센터	9	26.5	0	0.0
	여성	30	31.9	1	1.1
	한부모 가족	10	35.7	1	3.6
	다문화 가족	4	12.9	0	0.0
	청소년	13	52.0	1	4.0
	시 설 소 재 지	서울	253	51.6	6
부산		92	49.7	2	1.1
대구		74	49.3	2	1.3
인천		62	40.0	2	1.3
광주		68	54.0	1	0.8
대전		67	58.3	0	0.0
울산		36	50.0	0	0.0
경기		334	56.2	5	0.8
강원		84	51.5	1	0.6
충북		78	53.8	3	2.1
충남		74	49.0	2	1.3
전북		100	59.9	6	3.6
전남		122	58.4	2	1.0
경북		112	49.1	2	0.9
경남		85	49.1	2	1.2
제주		27	47.4	1	1.8
세종		7	38.9	0	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898	60.3	20	1.3
	이용시설	777	45.4	17	1.0

〈표 10〉 2019년 인권교육의 방법(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외부교육 참여		시설 자체 진행		시설 자체+외부 교육참여		총계		
	N	%	N	%	N	%	N	%	
전체	1,214	41.1	703	23.8	1,035	35.1	2,952	100.0	
세 부 유 형	노인	433	43.5	191	19.2	372	37.3	996	100.0
	아동	295	44.0	159	23.7	217	32.3	671	100.0
	장애인	300	34.6	233	26.9	333	38.5	866	100.0
	정신보건	70	72.2	7	7.2	20	20.6	97	100.0
	노숙인	37	77.1	2	4.2	9	18.8	48	100.0
	지역사회 복지관	29	25.2	48	41.7	38	33.0	115	100.0
	지역자활 센터	7	30.4	11	47.8	5	21.7	23	100.0
	여성	18	26.1	29	42.0	22	31.9	69	100.0
	한부모 가족	10	38.5	8	30.8	8	30.8	26	100.0
	다문화 가족	4	20.0	11	55.0	5	25.0	20	100.0
	청소년	11	52.4	4	19.0	6	28.6	21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199	43.9	98	21.6	156	34.4	453
부산		81	46.8	35	20.2	57	32.9	173	100.0
대구		57	40.7	29	20.7	54	38.6	140	100.0
인천		55	40.7	37	27.4	43	31.9	135	100.0
광주		59	48.8	11	9.1	51	42.1	121	100.0
대전		43	39.8	25	23.1	40	37.0	108	100.0
울산		26	38.2	16	23.5	26	38.2	68	100.0
경기		208	38.3	131	24.1	204	37.6	543	100.0
강원		58	37.9	54	35.3	41	26.8	153	100.0
충북		52	38.0	39	28.5	46	33.6	137	100.0
충남		58	41.7	39	28.1	42	30.2	139	100.0
전북		65	42.2	29	18.8	60	39.0	154	100.0
전남		90	45.9	33	16.8	73	37.2	196	100.0
경북		85	39.7	61	28.5	68	31.8	214	100.0
경남		56	36.8	42	27.6	54	35.5	152	100.0
제주		17	33.3	18	35.3	16	31.4	51	100.0
세종		5	33.3	6	40.0	4	26.7	15	10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541	38.3	272	19.2	600	42.5	1,413	100.0
	이용시설	673	43.7	431	28.0	435	28.3	1,539	100.0

〈표 11〉 내부교육 연간 횟수(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1회		2회		3~4회		5~9회		10회 이상		총계		
	N	%	N	%	N	%	N	%	N	%	N	%	
전체	894	44.2	657	32.5	310	15.3	92	4.6	68	3.4	2,021	100.0	
세 부 유 형	노인	258	38.7	212	31.8	113	16.9	45	6.7	39	5.8	667	100.0
	아동	289	60.5	135	28.2	42	8.8	10	2.1	2	0.4	478	100.0
	장애인	201	32.7	246	40.0	125	20.3	26	4.2	17	2.8	615	100.0
	정신보건	24	68.6	8	22.9	2	5.7	0	0.0	1	2.9	35	100.0
	노숙인	13	68.4	1	5.3	2	10.5	0	0.0	3	15.8	19	100.0
	지역사회 복지관	51	56.7	30	33.3	4	4.4	2	2.2	3	3.3	90	100.0
	지역자활 센터	13	72.2	2	11.1	2	11.1	1	5.6	0	0.0	18	100.0
	여성	25	48.1	11	21.2	12	23.1	2	3.8	2	3.8	52	100.0
	한부모 가족	10	62.5	2	12.5	2	12.5	2	12.5	0	0.0	16	100.0
	다문화 가족	4	26.7	4	26.7	3	20.0	4	26.7	0	0.0	15	100.0
	청소년	6	37.5	6	37.5	3	18.8	0	0.0	1	6.3	16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139	46.3	89	29.7	47	15.7	16	5.3	9	3.0	300	100.0
	부산	50	46.7	35	32.7	13	12.1	5	4.7	4	3.7	107	100.0
	대구	46	48.4	33	34.7	10	10.5	5	5.3	1	1.1	95	100.0
	인천	43	44.8	26	27.1	17	17.7	2	2.1	8	8.3	96	100.0
	광주	21	29.2	37	51.4	13	18.1	1	1.4	0	0.0	72	100.0
	대전	36	48.6	24	32.4	10	13.5	3	4.1	1	1.4	74	100.0
	울산	17	37.0	18	39.1	6	13.0	3	6.5	2	4.3	46	100.0
	경기	165	42.3	126	32.3	60	15.4	22	5.6	17	4.4	390	100.0
	강원	52	49.1	35	33.0	12	11.3	5	4.7	2	1.9	106	100.0
	충북	41	41.4	36	36.4	14	14.1	5	5.1	3	3.0	99	100.0
	충남	50	52.6	27	28.4	15	15.8	1	1.1	2	2.1	95	100.0
	전북	39	35.8	33	30.3	25	22.9	9	8.3	3	2.8	109	100.0
	전남	66	47.1	40	28.6	22	15.7	4	2.9	8	5.7	140	100.0
	경북	63	43.8	51	35.4	22	15.3	5	3.5	3	2.1	144	100.0
	경남	48	47.1	35	34.3	13	12.7	2	2.0	4	3.9	102	100.0
	제주	14	37.8	11	29.7	7	18.9	4	10.8	1	2.7	37	100.0
	세종	4	44.4	1	11.1	4	44.4	0	0.0	0	0.0	9	10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307	31.2	361	36.7	215	21.8	57	5.8	44	4.5	984	100.0
	이용시설	587	56.6	296	28.5	95	9.2	35	3.4	24	2.3	1,037	100.0

〈표 12〉 내부교육 연간 총 참여시간(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1시간		2시간		3~4시간		5~9시간		10~19시간		20시간 이상		총계		
	N	%	N	%	N	%	N	%	N	%	N	%	N	%	
전체	396	19.9	387	19.5	593	29.9	447	22.5	127	6.4	35	1.8	1,985	100.0	
세 부 유 형	노인	136	21.0	152	23.4	138	21.3	149	23.0	55	8.5	19	2.9	649	100.0
	아동	168	35.9	120	25.6	131	28.0	39	8.3	8	1.7	2	0.4	468	100.0
	장애인	44	7.2	66	10.9	227	37.3	215	35.4	47	7.7	9	1.5	608	100.0
	정신보건	3	8.6	5	14.3	17	48.6	5	14.3	3	8.6	2	5.7	35	100.0
	노숙인	6	31.6	4	21.1	5	26.3	0	0.0	4	21.1	0	0.0	19	100.0
	지역사회 복지관	9	9.9	19	20.9	45	49.5	13	14.3	5	5.5	0	0.0	91	100.0
	지역자활 센터	5	29.4	3	17.6	3	17.6	5	29.4	1	5.9	0	0.0	17	100.0
	여성	14	27.5	9	17.6	14	27.5	10	19.6	3	5.9	1	2.0	51	100.0
	한부모 가족	5	31.3	3	18.8	3	18.8	5	31.3	0	0.0	0	0.0	16	100.0
	다문화 가족	3	20.0	2	13.3	4	26.7	4	26.7	1	6.7	1	6.7	15	100.0
	청소년	3	18.8	4	25.0	6	37.5	2	12.5	0	0.0	1	6.3	16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53	17.8	57	19.2	99	33.3	56	18.9	28	9.4	4	1.3	297	100.0
	부산	24	22.2	18	16.7	34	31.5	25	23.1	3	2.8	4	3.7	108	100.0
	대구	25	27.2	23	25.0	20	21.7	18	19.6	4	4.3	2	2.2	92	100.0
	인천	18	19.4	21	22.6	21	22.6	20	21.5	10	10.8	3	3.2	93	100.0
	광주	7	9.6	21	28.8	30	41.1	10	13.7	5	6.8	0	0.0	73	100.0
	대전	14	18.9	11	14.9	31	41.9	16	21.6	1	1.4	1	1.4	74	100.0
	울산	5	10.9	7	15.2	19	41.3	13	28.3	1	2.2	1	2.2	46	100.0
	경기	83	21.7	67	17.5	111	29.1	89	23.3	28	7.3	4	1.0	382	100.0
	강원	25	24.0	20	19.2	26	25.0	24	23.1	9	8.7	0	0.0	104	100.0
	충북	20	21.3	18	19.1	23	24.5	25	26.6	6	6.4	2	2.1	94	100.0
	충남	19	19.8	20	20.8	24	25.0	28	29.2	3	3.1	2	2.1	96	100.0
	전북	11	10.3	27	25.2	29	27.1	33	30.8	4	3.7	3	2.8	107	100.0
	전남	31	22.8	35	25.7	39	28.7	18	13.2	8	5.9	5	3.7	136	100.0
	경북	31	21.7	21	14.7	39	27.3	42	29.4	7	4.9	3	2.1	143	100.0
	경남	23	24.2	14	14.7	35	36.8	16	16.8	6	6.3	1	1.1	95	100.0
	제주	7	19.4	5	13.9	9	25.0	11	30.6	4	11.1	0	0.0	36	100.0
	세종	0	0.0	2	22.2	4	44.4	3	33.3	0	0.0	0	0.0	9	10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130	13.5	170	17.6	267	27.6	295	30.5	80	8.3	24	2.5	966	100.0
	이용시설	266	26.1	217	21.3	326	32.0	152	14.9	47	4.6	11	1.1	1,019	100.0

〈표 13〉 내부교육 회당 평균 교육시간(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1시간		2시간		3~4시간		5~9시간		10시간 이상		총계		
	N	%	N	%	N	%	N	%	N	%	N	%	
전체	836	43.2	583	30.1	373	19.3	119	6.1	24	1.2	1,935	100.0	
세 부 유 형	노인	407	66.3	70	11.4	43	7.0	76	12.4	18	2.9	614	100.0
	아동	258	56.1	152	33.0	42	9.1	5	1.1	3	0.7	460	100.0
	장애인	85	14.1	266	44.0	227	37.6	25	4.1	1	0.2	604	100.0
	정신보건	8	22.9	9	25.7	14	40.0	3	8.6	1	2.9	35	100.0
	노숙인	9	47.4	7	36.8	3	15.8	0	0.0	0	0.0	19	100.0
	지역사회 복지관	14	15.6	37	41.1	35	38.9	3	3.3	1	1.1	90	100.0
	지역자활 센터	5	29.4	8	47.1	1	5.9	3	17.6	0	0.0	17	100.0
	여성	28	53.8	19	36.5	3	5.8	2	3.8	0	0.0	52	100.0
	한부모 가족	7	43.8	6	37.5	2	12.5	1	6.3	0	0.0	16	100.0
	다문화 가족	6	40.0	7	46.7	1	6.7	1	6.7	0	0.0	15	100.0
	청소년	9	69.2	2	15.4	2	15.4	0	0.0	0	0.0	13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115	39.2	98	33.4	59	20.1	18	6.1	3	1.0	293	100.0
	부산	45	42.9	33	31.4	21	20.0	6	5.7	0	0.0	105	100.0
	대구	40	44.0	34	37.4	9	9.9	8	8.8	0	0.0	91	100.0
	인천	40	44.0	26	28.6	20	22.0	5	5.5	0	0.0	91	100.0
	광주	27	37.0	39	53.4	6	8.2	1	1.4	0	0.0	73	100.0
	대전	24	34.3	17	24.3	23	32.9	5	7.1	1	1.4	70	100.0
	울산	10	22.2	22	48.9	11	24.4	2	4.4	0	0.0	45	100.0
	경기	182	49.9	96	26.3	56	15.3	24	6.6	7	1.9	365	100.0
	강원	47	46.5	13	12.9	27	26.7	13	12.9	1	1.0	101	100.0
	충북	41	43.6	30	31.9	16	17.0	7	7.4	0	0.0	94	100.0
	충남	35	38.0	24	26.1	19	20.7	10	10.9	4	4.3	92	100.0
	전북	42	39.3	45	42.1	17	15.9	3	2.8	0	0.0	107	100.0
	전남	71	54.6	39	30.0	14	10.8	3	2.3	3	2.3	130	100.0
	경북	56	40.9	25	18.2	47	34.3	7	5.1	2	1.5	137	100.0
	경남	42	44.2	27	28.4	19	20.0	4	4.2	3	3.2	95	100.0
	제주	14	37.8	15	40.5	6	16.2	2	5.4	0	0.0	37	100.0
	세종	5	55.6	0	0.0	3	33.3	1	11.1	0	0.0	9	10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415	44.5	249	26.7	195	20.9	61	6.5	13	1.4	933	100.0
	이용시설	421	42.0	334	33.3	178	17.8	58	5.8	11	1.1	1,002	100.0

〈표 14〉 내부교육 회당 평균 참여인원(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5명 미만		5~9명		10~19명		20~29명		30명 이상		총계		
	N	%	N	%	N	%	N	%	N	%	N	%	
전체	545	27.7	390	19.9	419	21.3	289	14.7	321	16.3	1,964	100.0	
세 부 유 형	노인	68	10.6	136	21.1	208	32.3	69	10.7	163	25.3	644	100.0
	아동	305	65.6	60	12.9	28	6.0	50	10.8	22	4.7	465	100.0
	장애인	121	20.2	130	21.7	111	18.5	126	21.0	112	18.7	600	100.0
	정신보건	6	17.1	12	34.3	8	22.9	5	14.3	4	11.4	35	100.0
	노숙인	1	5.3	11	57.9	5	26.3	2	10.5	0	0.0	19	100.0
	지역사회 복지관	3	3.3	4	4.3	39	42.4	32	34.8	14	15.2	92	100.0
	지역자활 센터	1	7.7	4	30.8	4	30.8	0	0.0	4	30.8	13	100.0
	여성	21	41.2	23	45.1	5	9.8	2	3.9	0	0.0	51	100.0
	한부모 가족	9	56.3	6	37.5	1	6.3	0	0.0	0	0.0	16	100.0
	다문화 가족	3	20.0	0	0.0	10	66.7	0	0.0	2	13.3	15	100.0
	청소년	7	50.0	4	28.6	0	0.0	3	21.4	0	0.0	14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77	26.1	69	23.4	53	18.0	44	14.9	52	17.6	295	100.0
	부산	34	31.5	11	10.2	21	19.4	23	21.3	19	17.6	108	100.0
	대구	37	41.6	11	12.4	18	20.2	5	5.6	18	20.2	89	100.0
	인천	24	25.8	17	18.3	24	25.8	11	11.8	17	18.3	93	100.0
	광주	24	33.8	12	16.9	18	25.4	11	15.5	6	8.5	71	100.0
	대전	23	31.9	15	20.8	13	18.1	11	15.3	10	13.9	72	100.0
	울산	12	26.7	11	24.4	9	20.0	7	15.6	6	13.3	45	100.0
	경기	73	19.3	87	23.0	96	25.3	52	13.7	71	18.7	379	100.0
	강원	31	30.7	22	21.8	22	21.8	11	10.9	15	14.9	101	100.0
	충북	26	27.1	21	21.9	24	25.0	10	10.4	15	15.6	96	100.0
	충남	30	32.3	21	22.6	15	16.1	14	15.1	13	14.0	93	100.0
	전북	35	32.4	14	13.0	25	23.1	23	21.3	11	10.2	108	100.0
	전남	37	27.6	26	19.4	22	16.4	30	22.4	19	14.2	134	100.0
	경북	44	31.0	26	18.3	32	22.5	20	14.1	20	14.1	142	100.0
	경남	30	31.9	15	16.0	13	13.8	15	16.0	21	22.3	94	100.0
	제주	6	17.1	11	31.4	9	25.7	2	5.7	7	20.0	35	100.0
	세종	2	22.2	1	11.1	5	55.6	0	0.0	1	11.1	9	10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180	18.7	192	20.0	230	23.9	184	19.1	175	18.2	961	100.0
	이용시설	365	36.4	198	19.7	189	18.8	105	10.5	146	14.6	1,003	100.0

〈표 15〉 2019 내부 인권교육 총 수료인원(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5명 미만		5~9명		10~19명		20~29명		30~49명		50명 이상		총계		
	N	%	N	%	N	%	N	%	N	%	N	%	N	%	
전체	461	23.3	385	19.5	379	19.2	276	13.9	286	14.5	192	9.7	1,979	100.0	
세 부 유 형 별	노인	23	3.5	129	19.6	215	32.7	72	10.9	110	16.7	109	16.6	658	100.0
	아동	297	63.6	65	13.9	24	5.1	43	9.2	33	7.1	5	1.1	467	100.0
	장애인	99	16.5	124	20.7	77	12.8	109	18.2	125	20.8	66	11.0	600	100.0
	정신보건	5	13.9	13	36.1	8	22.2	6	16.7	3	8.3	1	2.8	36	100.0
	노숙인	1	5.3	11	57.9	4	21.1	3	15.8	0	0.0	0	0.0	19	100.0
	지역사회 복지관	3	3.4	2	2.2	29	32.6	35	39.3	13	14.6	7	7.9	89	100.0
	지역자활 센터	1	7.7	4	30.8	4	30.8	0	0.0	0	0.0	4	30.8	13	100.0
	여성	16	32.0	25	50.0	6	12.0	3	6.0	0	0.0	0	0.0	50	100.0
	한부모 가족	7	43.8	6	37.5	3	18.8	0	0.0	0	0.0	0	0.0	16	100.0
	다문화 가족	1	6.7	2	13.3	8	53.3	2	13.3	2	13.3	0	0.0	15	100.0
	청소년	8	50.0	4	25.0	1	6.3	3	18.8	0	0.0	0	0.0	16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69	23.5	65	22.1	51	17.3	44	15.0	47	16.0	18	6.1	294	100.0
	부산	30	27.3	12	10.9	21	19.1	19	17.3	18	16.4	10	9.1	110	100.0
	대구	37	40.7	10	11.0	18	19.8	5	5.5	9	9.9	12	13.2	91	100.0
	인천	19	20.0	21	22.1	20	21.1	13	13.7	12	12.6	10	10.5	95	100.0
	광주	24	32.9	12	16.4	15	20.5	9	12.3	5	6.8	8	11.0	73	100.0
	대전	20	27.4	14	19.2	8	11.0	15	20.5	9	12.3	7	9.6	73	100.0
	울산	12	26.7	9	20.0	8	17.8	6	13.3	6	13.3	4	8.9	45	100.0
	경기	53	13.8	82	21.4	85	22.2	51	13.3	66	17.2	46	12.0	383	100.0
	강원	28	26.7	21	20.0	25	23.8	10	9.5	14	13.3	7	6.7	105	100.0
	충북	18	19.4	22	23.7	19	20.4	9	9.7	14	15.1	11	11.8	93	100.0
	충남	23	24.7	22	23.7	13	14.0	15	16.1	11	11.8	9	9.7	93	100.0
	전북	28	25.5	16	14.5	23	20.9	19	17.3	12	10.9	12	10.9	110	100.0
	전남	34	25.6	25	18.8	19	14.3	25	18.8	20	15.0	10	7.5	133	100.0
	경북	33	23.7	28	20.1	24	17.3	23	16.5	20	14.4	11	7.9	139	100.0
	경남	28	28.9	16	16.5	17	17.5	10	10.3	14	14.4	12	12.4	97	100.0
	제주	4	11.1	8	22.2	9	25.0	3	8.3	8	22.2	4	11.1	36	100.0
	세종	1	11.1	2	22.2	4	44.4	0	0.0	1	11.1	1	11.1	9	100.0
시 설 유 형 별	생활시설	128	13.1	186	19.1	201	20.6	171	17.5	172	17.6	117	12.0	975	100.0
	이용시설	333	33.2	199	19.8	178	17.7	105	10.5	114	11.4	75	7.5	1,004	100.0

〈표 16〉 내부교육에 시설장 참여 여부(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안함		참여함		총계		
	N	%	N	%	N	%	
전체	258	12.8	1,763	87.2	2,021	100.0	
세 부 유 형	노인	78	11.7	589	88.3	667	100.0
	아동	60	12.6	418	87.4	478	100.0
	장애인	90	14.6	525	85.4	615	100.0
	정신보건	9	25.7	26	74.3	35	100.0
	노숙인	1	5.3	18	94.7	19	100.0
	지역사회 복지관	7	7.8	83	92.2	90	100.0
	지역자활 센터	4	22.2	14	77.8	18	100.0
	여성	4	7.7	48	92.3	52	100.0
	한부모 가족	1	6.3	15	93.8	16	100.0
	다문화 가족	2	13.3	13	86.7	15	100.0
	청소년	2	12.5	14	87.5	16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36	12.0	264	88.0	300
부산		12	11.2	95	88.8	107	100.0
대구		16	16.8	79	83.2	95	100.0
인천		13	13.5	83	86.5	96	100.0
광주		8	11.1	64	88.9	72	100.0
대전		7	9.5	67	90.5	74	100.0
울산		7	15.2	39	84.8	46	100.0
경기		46	11.8	344	88.2	390	100.0
강원		21	19.8	85	80.2	106	100.0
충북		9	9.1	90	90.9	99	100.0
충남		14	14.7	81	85.3	95	100.0
전북		10	9.2	99	90.8	109	100.0
전남		21	15.0	119	85.0	140	100.0
경북		21	14.6	123	85.4	144	100.0
경남		11	10.8	91	89.2	102	100.0
제주		5	13.5	32	86.5	37	100.0
세종		1	11.1	8	88.9	9	10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135	13.7	849	86.3	984	100.0
	이용시설	123	11.9	914	88.1	1,037	100.0

〈표 17〉 외부교육 연간 횟수(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1회		2회		3~4회		5~9회		10회 이상		총계		
	N	%	N	%	N	%	N	%	N	%	N	%	
전체	1,253	56.5	537	24.2	226	10.2	135	6.1	68	3.1	2,219	100.0	
세 부 유 형	노인	530	70.2	112	14.8	47	6.2	38	5.0	28	3.7	755	100.0
	아동	322	63.0	126	24.7	42	8.2	17	3.3	4	0.8	511	100.0
	장애인	231	35.5	239	36.7	107	16.4	57	8.8	17	2.6	651	100.0
	정신보건	45	50.0	19	21.1	8	8.9	12	13.3	6	6.7	90	100.0
	노숙인	25	53.2	6	12.8	8	17.0	4	8.5	4	8.5	47	100.0
	지역사회 복지관	46	66.7	19	27.5	1	1.4	0	0.0	3	4.3	69	100.0
	지역자활 센터	8	80.0	2	20.0	0	0.0	0	0.0	0	0.0	10	100.0
	여성	22	52.4	6	14.3	5	11.9	5	11.9	4	9.5	42	100.0
	한부모 가족	9	56.3	3	18.8	2	12.5	1	6.3	1	6.3	16	100.0
	다문화 가족	6	54.5	1	9.1	3	27.3	0	0.0	1	9.1	11	100.0
	청소년	9	52.9	4	23.5	3	17.6	1	5.9	0	0.0	17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187	54.0	77	22.3	42	12.1	33	9.5	7	2.0	346	100.0
	부산	74	55.2	28	20.9	18	13.4	10	7.5	4	3.0	134	100.0
	대구	64	61.5	27	26.0	10	9.6	2	1.9	1	1.0	104	100.0
	인천	48	49.0	21	21.4	14	14.3	7	7.1	8	8.2	98	100.0
	광주	30	28.0	47	43.9	8	7.5	15	14.0	7	6.5	107	100.0
	대전	37	46.3	28	35.0	10	12.5	3	3.8	2	2.5	80	100.0
	울산	25	51.0	12	24.5	7	14.3	4	8.2	1	2.0	49	100.0
	경기	238	60.3	86	21.8	29	7.3	29	7.3	13	3.3	395	100.0
	강원	65	64.4	22	21.8	11	10.9	1	1.0	2	2.0	101	100.0
	충북	52	54.7	26	27.4	9	9.5	5	5.3	3	3.2	95	100.0
	충남	62	58.5	25	23.6	11	10.4	4	3.8	4	3.8	106	100.0
	전북	80	66.1	20	16.5	10	8.3	9	7.4	2	1.7	121	100.0
	전남	105	66.0	33	20.8	12	7.5	6	3.8	3	1.9	159	100.0
	경북	89	53.3	49	29.3	22	13.2	1	0.6	6	3.6	167	100.0
	경남	68	64.2	22	20.8	8	7.5	5	4.7	3	2.8	106	100.0
	제주	22	55.0	11	27.5	4	10.0	1	2.5	2	5.0	40	100.0
	세종	7	63.6	3	27.3	1	9.1	0	0.0	0	0.0	11	10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586	51.5	293	25.7	143	12.6	82	7.2	34	3.0	1,138	100.0
	이용시설	667	61.7	244	22.6	83	7.7	53	4.9	34	3.1	1,081	100.0

〈표 18〉 외부교육 연간 총 참여시간(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1시간		2시간		3~4시간		5~9시간		10~19시간		20시간 이상		총계		
	N	%	N	%	N	%	N	%	N	%	N	%	N	%	
전체	271	12.4	320	14.6	664	30.3	613	28.0	178	8.1	142	6.5	2,188	100.0	
세 부 유 형 별	노인	89	12.0	44	5.9	210	28.4	294	39.7	56	7.6	47	6.4	740	100.0
	아동	132	26.0	157	31.0	130	25.6	55	10.8	21	4.1	12	2.4	507	100.0
	장애인	27	4.2	75	11.6	221	34.3	203	31.5	77	12.0	41	6.4	644	100.0
	정신보건	0	0.0	2	2.3	39	44.3	20	22.7	10	11.4	17	19.3	88	100.0
	노숙인	2	4.3	1	2.1	18	38.3	7	14.9	4	8.5	15	31.9	47	100.0
	지역사회 복지관	7	10.1	17	24.6	25	36.2	16	23.2	1	1.4	3	4.3	69	100.0
	지역자활 센터	1	10.0	4	40.0	3	30.0	2	20.0	0	0.0	0	0.0	10	100.0
	여성	7	17.5	10	25.0	6	15.0	7	17.5	6	15.0	4	10.0	40	100.0
	한부모 가족	2	12.5	3	18.8	5	31.3	4	25.0	1	6.3	1	6.3	16	100.0
	다문화 가족	1	10.0	5	50.0	0	0.0	3	30.0	0	0.0	1	10.0	10	100.0
	청소년	3	17.6	2	11.8	7	41.2	2	11.8	2	11.8	1	5.9	17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24	7.0	58	17.0	95	27.9	101	29.6	37	10.9	26	7.6	341	100.0
	부산	20	15.5	18	14.0	42	32.6	27	20.9	9	7.0	13	10.1	129	100.0
	대구	17	16.5	23	22.3	28	27.2	23	22.3	5	4.9	7	6.8	103	100.0
	인천	9	9.3	13	13.4	23	23.7	28	28.9	16	16.5	8	8.2	97	100.0
	광주	10	9.4	12	11.3	39	36.8	25	23.6	9	8.5	11	10.4	106	100.0
	대전	4	5.1	12	15.2	24	30.4	25	31.6	10	12.7	4	5.1	79	100.0
	울산	6	12.2	5	10.2	16	32.7	14	28.6	3	6.1	5	10.2	49	100.0
	경기	61	15.7	39	10.1	110	28.4	129	33.2	29	7.5	20	5.2	388	100.0
	강원	17	16.8	12	11.9	32	31.7	27	26.7	4	4.0	9	8.9	101	100.0
	충북	15	15.8	17	17.9	31	32.6	16	16.8	8	8.4	8	8.4	95	100.0
	충남	7	6.8	12	11.7	33	32.0	38	36.9	8	7.8	5	4.9	103	100.0
	전북	11	9.2	28	23.3	36	30.0	30	25.0	8	6.7	7	5.8	120	100.0
	전남	26	16.5	28	17.7	46	29.1	42	26.6	12	7.6	4	2.5	158	100.0
	경북	19	11.8	20	12.4	54	33.5	52	32.3	9	5.6	7	4.3	161	100.0
	경남	18	16.8	13	12.1	36	33.6	28	26.2	7	6.5	5	4.7	107	100.0
	제주	6	15.0	9	22.5	13	32.5	5	12.5	4	10.0	3	7.5	40	100.0
	세종	1	9.1	1	9.1	6	54.5	3	27.3	0	0.0	0	0.0	11	100.0
시 설 유 형 별	생활시설	97	8.6	95	8.5	342	30.5	393	35.0	116	10.3	80	7.1	1,123	100.0
	이용시설	174	16.3	225	21.1	322	30.2	220	20.7	62	5.8	62	5.8	1,065	100.0

〈표 19〉 외부교육 회당 평균 교육시간(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1시간		2시간		3~4시간		5~9시간		10시간 이상		총계		
	N	%	N	%	N	%	N	%	N	%	N	%	
전체	415	19.5	538	25.2	785	36.8	363	17.0	30	1.4	2,131	100.0	
세 부 유 형	노인	153	21.5	51	7.2	239	33.6	252	35.4	17	2.4	712	100.0
	아동	173	34.9	220	44.4	85	17.2	14	2.8	3	0.6	495	100.0
	장애인	49	7.7	202	31.9	320	50.6	56	8.8	6	0.9	633	100.0
	정신보건	3	3.5	3	3.5	66	76.7	13	15.1	1	1.2	86	100.0
	노숙인	1	2.1	2	4.3	37	78.7	6	12.8	1	2.1	47	100.0
	지역사회 복지관	10	14.7	24	35.3	22	32.4	12	17.6	0	0.0	68	100.0
	지역자활 센터	2	20.0	4	40.0	2	20.0	2	20.0	0	0.0	10	100.0
	여성	12	31.6	15	39.5	5	13.2	5	13.2	1	2.6	38	100.0
	한부모 가족	4	25.0	6	37.5	4	25.0	2	12.5	0	0.0	16	100.0
	다문화 가족	3	30.0	6	60.0	1	10.0	0	0.0	0	0.0	10	100.0
	청소년	5	31.3	5	31.3	4	25.0	1	6.3	1	6.3	16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43	12.9	100	29.9	120	35.9	64	19.2	7	2.1	334	100.0
	부산	24	18.8	38	29.7	52	40.6	13	10.2	1	0.8	128	100.0
	대구	27	26.5	39	38.2	19	18.6	16	15.7	1	1.0	102	100.0
	인천	15	15.5	25	25.8	41	42.3	15	15.5	1	1.0	97	100.0
	광주	16	15.1	39	36.8	41	38.7	10	9.4	0	0.0	106	100.0
	대전	11	13.9	19	24.1	35	44.3	14	17.7	0	0.0	79	100.0
	울산	11	22.4	13	26.5	15	30.6	10	20.4	0	0.0	49	100.0
	경기	86	23.0	56	15.0	142	38.0	84	22.5	6	1.6	374	100.0
	강원	25	25.8	15	15.5	35	36.1	20	20.6	2	2.1	97	100.0
	충북	20	21.5	28	30.1	35	37.6	10	10.8	0	0.0	93	100.0
	충남	15	15.5	13	13.4	46	47.4	20	20.6	3	3.1	97	100.0
	전북	17	14.7	50	43.1	29	25.0	18	15.5	2	1.7	116	100.0
	전남	40	26.1	37	24.2	51	33.3	24	15.7	1	0.7	153	100.0
	경북	31	20.0	22	14.2	77	49.7	20	12.9	5	3.2	155	100.0
	경남	26	25.5	26	25.5	32	31.4	18	17.6	0	0.0	102	100.0
	제주	7	17.9	16	41.0	9	23.1	6	15.4	1	2.6	39	100.0
	세종	1	10.0	2	20.0	6	60.0	1	10.0	0	0.0	10	10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164	15.0	209	19.1	491	44.9	213	19.5	16	1.5	1,093	100.0
	이용시설	251	24.2	329	31.7	294	28.3	150	14.5	14	1.3	1,038	100.0

〈표 20〉 외부교육 회당 평균 참여인원(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5명 미만		5~9명		10~19명		20~29명		30명 이상		총계		
	N	%	N	%	N	%	N	%	N	%	N	%	
전체	1038	49.0	359	16.9	341	16.1	166	7.8	215	10.1	2119	100.0	
세 부 유 형	노인	169	24.1	148	21.1	188	26.8	60	8.6	136	19.4	701	100.0
	아동	397	79.4	32	6.4	28	5.6	27	5.4	16	3.2	500	100.0
	장애인	331	52.6	111	17.6	75	11.9	63	10.0	49	7.8	629	100.0
	정신보건	54	62.8	22	25.6	7	8.1	3	3.5	0	0.0	86	100.0
	노숙인	17	36.2	18	38.3	9	19.1	1	2.1	2	4.3	47	100.0
	지역사회 복지관	12	17.9	11	16.4	25	37.3	12	17.9	7	10.4	67	100.0
	지역자활 센터	0	0.0	2	25.0	4	50.0	0	0.0	2	25.0	8	100.0
	여성	26	66.7	10	25.6	1	2.6	0	0.0	2	5.1	39	100.0
	한부모 가족	13	81.3	3	18.8	0	0.0	0	0.0	0	0.0	16	100.0
	다문화 가족	5	50.0	1	10.0	4	40.0	0	0.0	0	0.0	10	100.0
	청소년	14	87.5	1	6.3	0	0.0	0	0.0	1	6.3	16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199	60.3	42	12.7	49	14.8	19	5.8	21	6.4	330	100.0
	부산	67	53.2	18	14.3	22	17.5	12	9.5	7	5.6	126	100.0
	대구	53	52.0	18	17.6	14	13.7	3	2.9	14	13.7	102	100.0
	인천	50	52.1	16	16.7	19	19.8	5	5.2	6	6.3	96	100.0
	광주	56	53.8	17	16.3	17	16.3	4	3.8	10	9.6	104	100.0
	대전	40	51.3	16	20.5	6	7.7	6	7.7	10	12.8	78	100.0
	울산	24	50.0	6	12.5	6	12.5	8	16.7	4	8.3	48	100.0
	경기	152	40.4	69	18.4	70	18.6	34	9.0	51	13.6	376	100.0
	강원	47	48.0	13	13.3	20	20.4	5	5.1	13	13.3	98	100.0
	충북	48	53.9	20	22.5	9	10.1	5	5.6	7	7.9	89	100.0
	충남	50	52.6	16	16.8	10	10.5	9	9.5	10	10.5	95	100.0
	전북	58	50.4	20	17.4	16	13.9	12	10.4	9	7.8	115	100.0
	전남	67	43.5	29	18.8	23	14.9	17	11.0	18	11.7	154	100.0
	경북	69	43.7	26	16.5	34	21.5	14	8.9	15	9.5	158	100.0
	경남	39	38.6	20	19.8	15	14.9	12	11.9	15	14.9	101	100.0
	제주	15	38.5	10	25.6	8	20.5	1	2.6	5	12.8	39	100.0
	세종	4	40.0	3	30.0	3	30.0	0	0.0	0	0.0	10	10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447	40.8	202	18.4	197	18.0	112	10.2	137	12.5	1095	100.0
	이용시설	591	57.7	157	15.3	144	14.1	54	5.3	78	7.6	1024	100.0

〈표 21〉 2019 외부 인권교육 총 수료인원(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5명 미만		5~9명		10~19명		20~29명		30~49명		50명 이상		총계		
	N	%	N	%	N	%	N	%	N	%	N	%	N	%	
전체	821	38.2	399	18.5	380	17.7	208	9.7	190	8.8	154	7.2	2152	100.0	
세 부 유 형 별	노인	87	11.9	141	19.3	225	30.7	74	10.1	105	14.3	100	13.7	732	100.0
	아동	388	77.8	36	7.2	21	4.2	36	7.2	12	2.4	6	1.2	499	100.0
	장애인	248	39.5	144	22.9	75	11.9	67	10.7	61	9.7	33	5.3	628	100.0
	정신보건	37	42.0	28	31.8	10	11.4	9	10.2	3	3.4	1	1.1	88	100.0
	노숙인	7	14.9	16	34.0	13	27.7	7	14.9	3	6.4	1	2.1	47	100.0
	지역사회 복지관	9	13.4	9	13.4	25	37.3	14	20.9	4	6.0	6	9.0	67	100.0
	지역자활 센터	0	0.0	0	0.0	4	40.0	0	0.0	1	10.0	5	50.0	10	100.0
	여성	17	44.7	14	36.8	4	10.5	0	0.0	1	2.6	2	5.3	38	100.0
	한부모 가족	10	62.5	6	37.5	0	0.0	0	0.0	0	0.0	0	0.0	16	100.0
	다문화 가족	3	30.0	3	30.0	3	30.0	1	10.0	0	0.0	0	0.0	10	100.0
	청소년	15	88.2	2	11.8	0	0.0	0	0.0	0	0.0	0	0.0	17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150	45.3	79	23.9	49	14.8	23	6.9	17	5.1	13	3.9	331	100.0
	부산	56	43.1	16	12.3	27	20.8	13	10.0	12	9.2	6	4.6	130	100.0
	대구	47	47.0	15	15.0	19	19.0	3	3.0	9	9.0	7	7.0	100	100.0
	인천	43	43.4	18	18.2	18	18.2	9	9.1	6	6.1	5	5.1	99	100.0
	광주	40	37.7	16	15.1	18	17.0	13	12.3	10	9.4	9	8.5	106	100.0
	대전	35	43.8	18	22.5	6	7.5	8	10.0	10	12.5	3	3.8	80	100.0
	울산	21	42.9	6	12.2	8	16.3	6	12.2	5	10.2	3	6.1	49	100.0
	경기	115	29.9	77	20.1	73	19.0	41	10.7	43	11.2	35	9.1	384	100.0
	강원	38	38.0	12	12.0	24	24.0	8	8.0	9	9.0	9	9.0	100	100.0
	충북	36	39.1	24	26.1	11	12.0	5	5.4	8	8.7	8	8.7	92	100.0
	충남	40	40.8	16	16.3	14	14.3	13	13.3	8	8.2	7	7.1	98	100.0
	전북	49	42.6	16	13.9	20	17.4	15	13.0	7	6.1	8	7.0	115	100.0
	전남	51	32.9	25	16.1	33	21.3	20	12.9	13	8.4	13	8.4	155	100.0
	경북	50	31.3	31	19.4	38	23.8	14	8.8	14	8.8	13	8.1	160	100.0
	경남	34	32.4	20	19.0	11	10.5	12	11.4	17	16.2	11	10.5	105	100.0
	제주	13	34.2	8	21.1	7	18.4	4	10.5	2	5.3	4	10.5	38	100.0
	세종	3	30.0	2	20.0	4	40.0	1	10.0	0	0.0	0	0.0	10	100.0
시 설 유 형 별	생활시설	323	29.0	201	18.1	215	19.3	144	12.9	134	12.0	96	8.6	1113	100.0
	이용시설	498	47.9	198	19.1	165	15.9	64	6.2	56	5.4	58	5.6	1039	100.0

〈표 22〉 외부교육에 시설장 참여 여부(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안함		참여함		총계		
	N	%	N	%	N	%	
전체	387	17.4	1832	82.6	2219	100.0	
세 부 유 형	노인	118	15.6	637	84.4	755	100.0
	아동	77	15.1	434	84.9	511	100.0
	장애인	121	18.6	530	81.4	651	100.0
	정신보건	16	17.8	74	82.2	90	100.0
	노숙인	7	14.9	40	85.1	47	100.0
	지역사회 복지관	24	34.8	45	65.2	69	100.0
	지역자활 센터	2	20.0	8	80.0	10	100.0
	여성	13	31.0	29	69.0	42	100.0
	한부모 가족	0	0.0	16	100.0	16	100.0
	다문화 가족	5	45.5	6	54.5	11	100.0
	청소년	4	23.5	13	76.5	17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59	17.1	287	82.9	346
부산		21	15.7	113	84.3	134	100.0
대구		13	12.5	91	87.5	104	100.0
인천		18	18.4	80	81.6	98	100.0
광주		18	16.8	89	83.2	107	100.0
대전		14	17.5	66	82.5	80	100.0
울산		7	14.3	42	85.7	49	100.0
경기		77	19.5	318	80.5	395	100.0
강원		19	18.8	82	81.2	101	100.0
충북		10	10.5	85	89.5	95	100.0
충남		20	18.9	86	81.1	106	100.0
전북		16	13.2	105	86.8	121	100.0
전남		28	17.6	131	82.4	159	100.0
경북		38	22.8	129	77.2	167	100.0
경남		20	18.9	86	81.1	106	100.0
제주		6	15.0	34	85.0	40	100.0
세종		3	27.3	8	72.7	11	10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174	15.3	964	84.7	1138	100.0
	이용시설	213	19.7	868	80.3	1081	100.0

〈표 23〉 시설장의 최고관리자 인권교육 수강 여부(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예		아니오		총계		
	N	%	N	%	N	%	
전체	1,520	51.3	1,441	48.7	2,961	100.0	
세 부 유 형	노인	468	46.9	530	53.1	998	100.0
	아동	313	46.4	362	53.6	675	100.0
	장애인	538	62.0	330	38.0	868	100.0
	정신보건	93	95.9	4	4.1	97	100.0
	노숙인	16	33.3	32	66.7	48	100.0
	지역사회 복지관	35	30.4	80	69.6	115	100.0
	지역자활 센터	4	17.4	19	82.6	23	100.0
	여성	26	37.1	44	62.9	70	100.0
	한부모 가족	5	19.2	21	80.8	26	100.0
	다문화 가족	10	50.0	10	50.0	20	100.0
	청소년	12	57.1	9	42.9	21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232	51.0	223	49.0	455
부산		89	51.1	85	48.9	174	100.0
대구		72	51.4	68	48.6	140	100.0
인천		78	57.8	57	42.2	135	100.0
광주		49	40.5	72	59.5	121	100.0
대전		60	55.6	48	44.4	108	100.0
울산		27	39.1	42	60.9	69	100.0
경기		276	50.6	269	49.4	545	100.0
강원		75	48.7	79	51.3	154	100.0
충북		67	48.9	70	51.1	137	100.0
충남		73	51.8	68	48.2	141	100.0
전북		84	54.5	70	45.5	154	100.0
전남		110	56.1	86	43.9	196	100.0
경북		122	57.0	92	43.0	214	100.0
경남		74	48.7	78	51.3	152	100.0
제주		23	45.1	28	54.9	51	100.0
세종		9	60.0	6	40.0	15	10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861	60.8	554	39.2	1,415	100.0
	이용시설	659	42.6	887	57.4	1,546	100.0

〈표 24〉 인권교육시 종사자 집단 구분(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구분하지 않음		직급/직종/기타 방식으로 구분		총계		
	N	%	N	%	N	%	
전체	2,373	80.4	579	19.6	2,952	100.0	
세 부 유 형	노인	802	80.5	194	19.5	996	100.0
	아동	522	77.8	149	22.2	671	100.0
	장애인	727	83.9	139	16.1	866	100.0
	정신보건	50	51.5	47	48.5	97	100.0
	노숙인	40	83.3	8	16.7	48	100.0
	지역사회 복지관	101	87.8	14	12.2	115	100.0
	지역자활 센터	20	87.0	3	13.0	23	100.0
	여성	60	87.0	9	13.0	69	100.0
	한부모 가족	21	80.8	5	19.2	26	100.0
	다문화 가족	18	90.0	2	10.0	20	100.0
	청소년	12	57.1	9	42.9	21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354	78.1	99	21.9	453
부산		141	81.5	32	18.5	173	100.0
대구		113	80.7	27	19.3	140	100.0
인천		105	77.8	30	22.2	135	100.0
광주		92	76.0	29	24.0	121	100.0
대전		80	74.1	28	25.9	108	100.0
울산		61	89.7	7	10.3	68	100.0
경기		437	80.5	106	19.5	543	100.0
강원		134	87.6	19	12.4	153	100.0
충북		111	81.0	26	19.0	137	100.0
충남		108	77.7	31	22.3	139	100.0
전북		130	84.4	24	15.6	154	100.0
전남		155	79.1	41	20.9	196	100.0
경북		177	82.7	37	17.3	214	100.0
경남		126	82.9	26	17.1	152	100.0
제주		38	74.5	13	25.5	51	100.0
세종	11	73.3	4	26.7	15	10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1,123	79.5	290	20.5	1,413	100.0
	이용시설	1,250	81.2	289	18.8	1,539	100.0

〈표 25〉 인권교육관련 소관부처의 지침 인지 여부(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알고 있음		모름		총계		
	N	%	N	%	N	%	
전체	2,404	81.4	548	18.6	2,952	100.0	
세 부 유 형	노인	795	79.8	201	20.2	996	100.0
	아동	569	84.8	102	15.2	671	100.0
	장애인	726	83.8	140	16.2	866	100.0
	정신보건	88	90.7	9	9.3	97	100.0
	노숙인	42	87.5	6	12.5	48	100.0
	지역사회 복지관	69	60.0	46	40.0	115	100.0
	지역자활 센터	15	65.2	8	34.8	23	100.0
	여성	56	81.2	13	18.8	69	100.0
	한부모 가족	12	46.2	14	53.8	26	100.0
	다문화 가족	14	70.0	6	30.0	20	100.0
	청소년	18	85.7	3	14.3	21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366	80.8	87	19.2	453
부산		140	80.9	33	19.1	173	100.0
대구		116	82.9	24	17.1	140	100.0
인천		113	83.7	22	16.3	135	100.0
광주		103	85.1	18	14.9	121	100.0
대전		87	80.6	21	19.4	108	100.0
울산		55	80.9	13	19.1	68	100.0
경기		441	81.2	102	18.8	543	100.0
강원		123	80.4	30	19.6	153	100.0
충북		108	78.8	29	21.2	137	100.0
충남		111	79.9	28	20.1	139	100.0
전북		131	85.1	23	14.9	154	100.0
전남		155	79.1	41	20.9	196	100.0
경북		168	78.5	46	21.5	214	100.0
경남		132	86.8	20	13.2	152	100.0
제주		42	82.4	9	17.6	51	100.0
세종		13	86.7	2	13.3	15	10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1,204	85.2	209	14.8	1,413	100.0
	이용시설	1,200	78.0	339	22.0	1,539	100.0

〈표 26〉 인권교육 전 소관부처 지침 확인 여부(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확인했음		확인 안함		총계		
	N	%	N	%	N	%	
전체	1,986	67.3	966	32.7	2,952	100.0	
세 부 유 형	노인	676	67.9	320	32.1	996	100.0
	아동	417	62.1	254	37.9	671	100.0
	장애인	622	71.8	244	28.2	866	100.0
	정신보건	75	77.3	22	22.7	97	100.0
	노숙인	34	70.8	14	29.2	48	100.0
	지역사회 복지관	68	59.1	47	40.9	115	100.0
	지역자활 센터	12	52.2	11	47.8	23	100.0
	여성	44	63.8	25	36.2	69	100.0
	한부모 가족	10	38.5	16	61.5	26	100.0
	다문화 가족	13	65.0	7	35.0	20	100.0
	청소년	15	71.4	6	28.6	21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296	65.3	157	34.7	453
부산		122	70.5	51	29.5	173	100.0
대구		94	67.1	46	32.9	140	100.0
인천		93	68.9	42	31.1	135	100.0
광주		82	67.8	39	32.2	121	100.0
대전		76	70.4	32	29.6	108	100.0
울산		42	61.8	26	38.2	68	100.0
경기		356	65.6	187	34.4	543	100.0
강원		104	68.0	49	32.0	153	100.0
충북		91	66.4	46	33.6	137	100.0
충남		90	64.7	49	35.3	139	100.0
전북		114	74.0	40	26.0	154	100.0
전남		130	66.3	66	33.7	196	100.0
경북		143	66.8	71	33.2	214	100.0
경남		111	73.0	41	27.0	152	100.0
제주		31	60.8	20	39.2	51	100.0
세종		11	73.3	4	26.7	15	10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1,027	72.7	386	27.3	1,413
	이용시설	959	62.3	580	37.7	1,539	100.0

〈표 27〉 내부교육 진행 강사(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국가인권위 관계자		국가인권위 위촉강사		현재 인권위 위촉 아니나, 과거 인권위 양성과정 수료자		지자체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각종 협회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시민단체/민 간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사회복지학 과 교수		인권단체 3년+활동한 자		모르겠음		
	N	%	N	%	N	%	N	%	N	%	N	%	%	%	N	%	N	%	
전체	84	4.8	349	20.1	118	6.8	232	13.3	419	24.1	228	13.1	147	8.5	175	10.1	212	12.2	
세 부 유 형	노인	29	5.2	67	11.9	15	2.7	53	9.4	88	15.6	73	13.0	24	4.3	31	5.5	77	13.7
	아동	19	5.1	54	14.4	16	4.3	52	13.8	66	17.6	50	13.3	31	8.2	24	6.4	84	22.3
	장애인	24	4.2	179	31.6	77	13.6	107	18.9	217	38.3	73	12.9	76	13.4	100	17.7	29	5.1
	정신보건	3	11.1	8	29.6	3	11.1	1	3.7	7	25.9	2	7.4	2	7.4	1	3.7	1	3.7
	노숙인	2	18.2	4	36.4	2	18.2	0	0.0	3	27.3	2	18.2	0	0.0	0	0.0	1	9.1
	지역사회 복지관	3	3.5	27	31.4	3	3.5	10	11.6	18	20.9	9	10.5	4	4.7	5	5.8	7	8.1
	지역자활 센터	0	0.0	3	18.8	1	6.3	1	6.3	3	18.8	2	12.5	0	0.0	2	12.5	3	18.8
	여성	1	2.0	5	9.8	1	2.0	5	9.8	10	19.6	9	17.6	6	11.8	11	21.6	8	15.7
	한부모 가족	0	0.0	1	6.3	0	0.0	0	0.0	2	12.5	1	6.3	0	0.0	1	6.3	2	12.5
	다문화 가족	2	12.5	1	6.3	0	0.0	1	6.3	3	18.8	4	25.0	4	25.0	0	0.0	0	0.0
	청소년	1	10.0	0	0.0	0	0.0	2	20.0	2	20.0	3	30.0	0	0.0	0	0.0	0	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11	4.3	45	17.7	24	9.4	34	13.4	59	23.2	44	17.3	22	8.7	25	9.8	28	11.0
	부산	10	10.9	27	29.3	2	2.2	7	7.6	19	20.7	10	10.9	4	4.3	2	2.2	11	12.0
	대구	2	2.4	24	28.9	9	10.8	7	8.4	12	14.5	5	6.0	10	12.0	4	4.8	13	15.7
	인천	3	3.8	14	17.5	2	2.5	11	13.8	20	25.0	13	16.3	9	11.3	8	10.0	5	6.3
	광주	5	8.1	14	22.6	7	11.3	15	24.2	12	19.4	8	12.9	11	17.7	13	21.0	5	8.1
	대전	1	1.5	20	30.8	3	4.6	4	6.2	17	26.2	9	13.8	8	12.3	7	10.8	5	7.7
	울산	1	2.4	8	19.0	3	7.1	7	16.7	14	33.3	7	16.7	1	2.4	11	26.2	3	7.1
	경기	18	5.4	61	18.2	18	5.4	61	18.2	74	22.1	47	14.0	24	7.2	28	8.4	46	13.7
	강원	3	3.2	9	9.5	4	4.2	9	9.5	26	27.4	8	8.4	10	10.5	10	10.5	15	15.8
	충북	3	3.5	20	23.5	5	5.9	15	17.6	25	29.4	10	11.8	4	4.7	13	15.3	9	10.6
	충남	4	4.9	19	23.5	5	6.2	9	11.1	15	18.5	8	9.9	7	8.6	6	7.4	15	18.5
	전북	9	10.1	20	22.5	10	11.2	8	9.0	27	30.3	15	16.9	4	4.5	14	15.7	6	6.7
	전남	3	2.8	14	13.2	4	3.8	13	12.3	28	26.4	8	7.5	11	10.4	13	12.3	19	17.9
	경북	7	5.4	22	17.1	11	8.5	16	12.4	33	25.6	18	14.0	10	7.8	7	5.4	16	12.4
	경남	2	2.1	21	21.9	6	6.3	10	10.4	28	29.2	12	12.5	10	10.4	5	5.2	13	13.5
	제주	2	5.9	9	26.5	5	14.7	5	14.7	8	23.5	5	14.7	0	0.0	8	23.5	1	2.9
	세종	0	0.0	2	20.0	0	0.0	1	10.0	2	20.0	1	10.0	2	20.0	1	10.0	2	2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52	6.0	194	22.2	70	8.0	117	13.4	229	26.3	113	13.0	78	8.9	92	10.6	80
이용시설		32	3.7	155	17.9	48	5.5	115	13.3	190	21.9	115	13.3	69	8.0	83	9.6	132	15.2

〈표 28〉 내부 종사자가 교육 진행강사로 활용된 경험 유무와 활용 이유(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시설 내부종사자가 2019 인권교육 진행강사로 참여		내부 종사자 진행 이유										
			내부인력 활용의 편의성		수강생에 대한 이해 높음		외부 강사진에 대한 정보 없음		비용절감 위해		과거 외부 강사에 대한 불만족		
			N	%	N	%	N	%	N	%	N	%	
전체	669	38.5	424	63.4	174	26.0	41	6.1	143	21.4	31	4.6	
세부유형	노인	308	54.7	216	70.1	69	22.4	17	5.5	45	14.6	16	5.2
	아동	131	34.8	86	65.6	18	13.7	14	10.7	34	26.0	7	5.3
	장애인	156	27.6	78	50.0	68	43.6	6	3.8	45	28.8	6	3.8
	정신보건	12	44.4	10	83.3	3	25.0	1	8.3	0	0.0	1	8.3
	노숙인	6	54.5	4	66.7	2	33.3	0	0.0	1	16.7	0	0.0
	지역사회 복지관	14	16.3	4	28.6	5	35.7	0	0.0	7	50.0	0	0.0
	지역자활 센터	3	18.8	3	100.0	0	0.0	0	0.0	0	0.0	0	0.0
	여성	22	43.1	15	68.2	5	22.7	1	4.5	6	27.3	0	0.0
	한부모 가족	2	12.5	1	50.0	0	0.0	0	0.0	1	50.0	0	0.0
	다문화 가족	8	50.0	2	25.0	1	12.5	1	12.5	3	37.5	1	12.5
	청소년	7	70.0	5	71.4	3	42.9	1	14.3	1	14.3	0	0.0
시설소재지	서울	92	36.2	54	58.7	25	27.2	4	4.3	24	26.1	4	4.3
	부산	26	28.3	17	65.4	5	19.2	2	7.7	9	34.6	1	3.8
	대구	28	33.7	18	64.3	4	14.3	4	14.3	5	17.9	2	7.1
	인천	36	45.0	22	61.1	19	52.8	0	0.0	7	19.4	2	5.6
	광주	24	38.7	15	62.5	3	12.5	1	4.2	4	16.7	0	0.0
	대전	30	46.2	17	56.7	9	30.0	1	3.3	8	26.7	1	3.3
	울산	15	35.7	7	46.7	2	13.3	1	6.7	5	33.3	0	0.0
	경기	142	42.4	93	65.5	34	23.9	13	9.2	27	19.0	11	7.7
	강원	45	47.4	28	62.2	8	17.8	3	6.7	9	20.0	1	2.2
	충북	36	42.4	22	61.1	12	33.3	2	5.6	6	16.7	3	8.3
	충남	33	40.7	21	63.6	9	27.3	4	12.1	6	18.2	0	0.0
	전북	28	31.5	18	64.3	8	28.6	2	7.1	2	7.1	1	3.6
	전남	43	40.6	31	72.1	11	25.6	3	7.0	9	20.9	2	4.7
	경북	39	30.2	29	74.4	9	23.1	1	2.6	9	23.1	1	2.6
	경남	40	41.7	24	60.0	14	35.0	0	0.0	12	30.0	1	2.5
	제주	8	23.5	5	62.5	0	0.0	0	0.0	1	12.5	0	0.0
	세종	4	40.0	3	75.0	2	50.0	0	0.0	0	0.0	1	25.0
시설유형	생활시설	403	46.2	266	66.0	116	28.8	18	4.5	75	18.6	18	4.5
	이용시설	266	30.7	158	59.4	58	21.8	23	8.6	68	25.6	13	4.9

〈표 29〉 내부교육을 위한 외부 강사섭외 방법(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인권위 연계		지자체 문의/협조		각종 직능협회		시민단체/민간업체		시설이 확보한 기존 강사풀		기타		
	N	%	N	%	N	%	N	%	N	%	N	%	
전체	210	12.1	275	15.8	335	19.3	299	17.2	531	30.6	471	27.1	
세 부 유 형	노인	59	10.5	95	16.9	99	17.6	87	15.5	95	16.9	212	37.7
	아동	34	9.0	68	18.1	52	13.8	64	17.0	86	22.9	121	32.2
	장애인	88	15.5	87	15.4	151	26.7	103	18.2	269	47.5	77	13.6
	정신보건	6	22.2	1	3.7	6	22.2	1	3.7	15	55.6	7	25.9
	노숙인	0	0.0	2	18.2	1	9.1	1	9.1	6	54.5	2	18.2
	지역사회 복지관	14	16.3	11	12.8	16	18.6	21	24.4	28	32.6	12	14.0
	지역자활 센터	0	0.0	2	12.5	3	18.8	2	12.5	6	37.5	3	18.8
	여성	2	3.9	3	5.9	4	7.8	14	27.5	18	35.3	16	31.4
	한부모 가족	2	12.5	2	12.5	2	12.5	3	18.8	3	18.8	8	50.0
	다문화 가족	4	25.0	1	6.3	1	6.3	2	12.5	2	12.5	8	50.0
청소년	1	10.0	3	30.0		0.0	1	10.0	3	30.0	5	5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28	11.0	40	15.7	43	16.9	61	24.0	80	31.5	64	25.2
	부산	18	19.6	11	12.0	14	15.2	13	14.1	25	27.2	29	31.5
	대구	15	18.1	9	10.8	18	21.7	5	6.0	23	27.7	26	31.3
	인천	9	11.3	10	12.5	19	23.8	11	13.8	25	31.3	27	33.8
	광주	10	16.1	25	40.3	17	27.4	12	19.4	8	12.9	13	21.0
	대전	8	12.3	7	10.8	14	21.5	16	24.6	22	33.8	9	13.8
	울산	7	16.7	4	9.5	11	26.2	9	21.4	16	38.1	7	16.7
	경기	36	10.7	65	19.4	55	16.4	55	16.4	103	30.7	100	29.9
	강원	7	7.4	14	14.7	20	21.1	14	14.7	22	23.2	28	29.5
	충북	11	12.9	18	21.2	24	28.2	14	16.5	29	34.1	21	24.7
	충남	4	4.9	18	22.2	16	19.8	8	9.9	22	27.2	27	33.3
	전북	12	13.5	9	10.1	19	21.3	17	19.1	28	31.5	24	27.0
	전남	7	6.6	15	14.2	19	17.9	17	16.0	39	36.8	27	25.5
	경북	19	14.7	14	10.9	19	14.7	22	17.1	42	32.6	36	27.9
	경남	14	14.6	11	11.5	18	18.8	12	12.5	35	36.5	23	24.0
	제주	5	14.7	5	14.7	7	20.6	9	26.5	9	26.5	8	23.5
세종	0	0.0	0	0.0	2	20.0	4	40.0	3	30.0	2	2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112	12.8	138	15.8	165	18.9	147	16.9	293	33.6	245	28.1
	이용시설	98	11.3	137	15.8	170	19.6	152	17.6	238	27.5	226	26.1

〈표 30〉 내부교육의 외부강사 섭외가 어려웠던 이유(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섭외에 대한 정보 부족		강사비 등 예산부족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		교육장소 부족		시설/분야에 대한 강사의 이해부족		수강인원 미달		
	N	%	N	%	N	%	N	%	N	%	N	%	
전체	665	38.3	774	44.5	225	12.9	102	5.9	205	11.8	201	11.6	
세 부 유 형	노인	207	36.8	202	35.9	73	13.0	37	6.6	52	9.2	78	13.9
	아동	112	29.8	203	54.0	32	8.5	18	4.8	34	9.0	70	18.6
	장애인	256	45.2	261	46.1	107	18.9	36	6.4	86	15.2	32	5.7
	정신보건	9	33.3	12	44.4	5	18.5	1	3.7	5	18.5	1	3.7
	노숙인	2	18.2	3	27.3	1	9.1	1	9.1	4	36.4	2	18.2
	지역사회 복지관	50	58.1	42	48.8	4	4.7	0	0.0	10	11.6	1	1.2
	지역자활 센터	6	37.5	4	25.0	0	0.0	4	25.0	4	25.0	1	6.3
	여성	11	21.6	29	56.9	3	5.9	2	3.9	7	13.7	5	9.8
	한부모 가족	4	25.0	5	31.3	0	0.0	0	0.0	2	12.5	6	37.5
	다문화 가족	7	43.8	8	50.0	0	0.0	1	6.3	1	6.3	3	18.8
	청소년	1	10.0	5	50.0	0	0.0	2	20.0	0	0.0	2	2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108	42.5	120	47.2	7	2.8	18	7.1	32	12.6	35	13.8
	부산	38	41.3	40	43.5	5	5.4	2	2.2	11	12.0	7	7.6
	대구	29	34.9	34	41.0	1	1.2	4	4.8	6	7.2	9	10.8
	인천	30	37.5	37	46.3	8	10.0	7	8.8	13	16.3	6	7.5
	광주	21	33.9	26	41.9	6	9.7	5	8.1	8	12.9	4	6.5
	대전	18	27.7	45	69.2	5	7.7	2	3.1	6	9.2	5	7.7
	울산	17	40.5	21	50.0	4	9.5	0	0.0	5	11.9	7	16.7
	경기	128	38.2	142	42.4	37	11.0	23	6.9	44	13.1	44	13.1
	강원	41	43.2	36	37.9	24	25.3	7	7.4	5	5.3	13	13.7
	충북	36	42.4	35	41.2	14	16.5	5	5.9	16	18.8	8	9.4
	충남	24	29.6	37	45.7	12	14.8	5	6.2	9	11.1	8	9.9
	전북	34	38.2	40	44.9	11	12.4	3	3.4	12	13.5	12	13.5
	전남	42	39.6	44	41.5	26	24.5	5	4.7	15	14.2	18	17.0
	경북	42	32.6	52	40.3	32	24.8	8	6.2	10	7.8	14	10.9
	경남	40	41.7	48	50.0	26	27.1	6	6.3	10	10.4	8	8.3
	제주	12	35.3	14	41.2	6	17.6	1	2.9	2	5.9	3	8.8
세종	5	50.0	3	30.0	1	10.0	1	10.0	1	10.0	0	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329	37.7	360	41.3	138	15.8	56	6.4	119	13.6	103	11.8
	이용시설	336	38.8	414	47.8	87	10.0	46	5.3	86	9.9	98	11.3

〈표 31〉 인권교육 프로그램 설계/강사섭외에서 도움을 받은 기관(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인권위(중앙+지방사무소)		지자체 관련부서		협회		타 복지기관		개별강사		특별한 도움받지 못함		기타		총계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164	9.4	168	9.7	355	20.4	251	14.4	165	9.5	455	26.2	180	10.4	1738	100.0	
세부 유형	노인	47	8.3	72	12.8	83	14.7	57	10.1	42	7.5	165	29.3	97	17.2	563	100.0
	아동	26	6.9	43	11.4	88	23.4	35	9.3	33	8.8	113	30.1	38	10.1	376	100.0
	장애인	59	10.4	32	5.7	153	27.0	119	21.0	74	13.1	111	19.6	18	3.2	566	100.0
	정신보건	5	18.5	0	0.0	5	18.5	4	14.8	5	18.5	4	14.8	4	14.8	27	100.0
	노숙인	2	18.2	1	9.1	0	0.0	2	18.2	1	9.1	2	18.2	3	27.3	11	100.0
	지역사회 복지관	13	15.1	7	8.1	13	15.1	19	22.1	6	7.0	21	24.4	7	8.1	86	100.0
	지역자활 센터	2	12.5	3	18.8	3	18.8	1	6.3	0	0.0	5	31.3	2	12.5	16	100.0
	여성	4	7.8	4	7.8	5	9.8	11	21.6	4	7.8	16	31.4	7	13.7	51	100.0
	한부모 가족	1	6.3	2	12.5	0	0.0	2	12.5	0	0.0	11	68.8	0	0.0	16	100.0
	다문화 가족	4	25.0	2	12.5	3	18.8	1	6.3	0	0.0	4	25.0	2	12.5	16	100.0
	청소년	1	10.0	2	20.0	2	20.0	0	0.0	0	0.0	3	30.0	2	20.0	10	100.0
시설 소재지	서울	23	9.1	25	9.8	60	23.6	32	12.6	24	9.4	67	26.4	23	9.1	254	100.0
	부산	24	26.1	4	4.3	16	17.4	11	12.0	7	7.6	22	23.9	8	8.7	92	100.0
	대구	11	13.3	4	4.8	24	28.9	9	10.8	5	6.0	15	18.1	15	18.1	83	100.0
	인천	8	10.0	5	6.3	18	22.5	17	21.3	4	5.0	18	22.5	10	12.5	80	100.0
	광주	3	4.8	22	35.5	10	16.1	5	8.1	7	11.3	9	14.5	6	9.7	62	100.0
	대전	6	9.2	4	6.2	15	23.1	12	18.5	5	7.7	17	26.2	6	9.2	65	100.0
	울산	4	9.5	2	4.8	13	31.0	11	26.2	3	7.1	7	16.7	2	4.8	42	100.0
	경기	26	7.8	39	11.6	65	19.4	49	14.6	35	10.4	85	25.4	36	10.7	335	100.0
	강원	9	9.5	8	8.4	21	22.1	9	9.5	9	9.5	34	35.8	5	5.3	95	100.0
	충북	5	5.9	9	10.6	13	15.3	11	12.9	7	8.2	28	32.9	12	14.1	85	100.0
	충남	5	6.2	12	14.8	16	19.8	8	9.9	7	8.6	29	35.8	4	4.9	81	100.0
	전북	8	9.0	8	9.0	16	18.0	14	15.7	14	15.7	19	21.3	10	11.2	89	100.0
	전남	5	4.7	12	11.3	13	12.3	14	13.2	18	17.0	33	31.1	11	10.4	106	100.0
	경북	13	10.1	6	4.7	27	20.9	27	20.9	8	6.2	31	24.0	17	13.2	129	100.0
	경남	10	10.4	6	6.3	23	24.0	10	10.4	8	8.3	28	29.2	11	11.5	96	100.0
	제주	4	11.8	2	5.9	4	11.8	11	32.4	3	8.8	8	23.5	2	5.9	34	100.0
	세종	0	0.0	0	0.0	1	10.0	1	10.0	1	10.0	5	50.0	2	20.0	10	100.0
시설 유형	생활시설	80	9.2	84	9.6	194	22.2	117	13.4	86	9.9	216	24.8	95	10.9	872	100.0
	이용시설	84	9.7	84	9.7	161	18.6	134	15.5	79	9.1	239	27.6	85	9.8	866	100.0

〈표 32〉 다른 교육과 비교 시 2019년 인권교육 강사의 전문성 수준(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총계		
	N	%	N	%	N	%	N	%	N	%	N	%	
전체	24	1.5	79	5.1	556	35.7	722	46.3	177	11.4	1558	100.0	
세 부 유 형	노인	9	1.9	29	6.2	192	41.2	189	40.6	47	10.1	466	100.0
	아동	2	0.6	15	4.4	131	38.8	159	47.0	31	9.2	338	100.0
	장애인	7	1.3	24	4.4	157	28.6	282	51.5	78	14.2	548	100.0
	정신보건	0	0.0	0	0.0	10	43.5	11	47.8	2	8.7	23	100.0
	노숙인	0	0.0	2	25.0	3	37.5	3	37.5	0	0.0	8	100.0
	지역사회 복지관	1	1.3	3	3.8	31	39.2	34	43.0	10	12.7	79	100.0
	지역자활 센터	1	7.1	2	14.3	5	35.7	6	42.9	0	0.0	14	100.0
	여성	2	4.5	1	2.3	14	31.8	21	47.7	6	13.6	44	100.0
	한부모 가족	0	0.0	2	12.5	6	37.5	6	37.5	2	12.5	16	100.0
	다문화 가족	1	7.1	0	0.0	7	50.0	5	35.7	1	7.1	14	100.0
	청소년	1	12.5	1	12.5	0	0.0	6	75.0	0	0.0	8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3	1.3	15	6.5	83	35.9	98	42.4	32	13.9	231	100.0
	부산	3	3.6	3	3.6	28	33.3	39	46.4	11	13.1	84	100.0
	대구	1	1.5	6	8.8	17	25.0	37	54.4	7	10.3	68	100.0
	인천	0	0.0	3	4.3	25	35.7	33	47.1	9	12.9	70	100.0
	광주	0	0.0	3	5.4	24	42.9	28	50.0	1	1.8	56	100.0
	대전	2	3.4	1	1.7	17	28.8	26	44.1	13	22.0	59	100.0
	울산	0	0.0	4	10.0	9	22.5	21	52.5	6	15.0	40	100.0
	경기	2	0.7	13	4.3	126	42.1	128	42.8	30	10.0	299	100.0
	강원	3	3.3	6	6.7	30	33.3	46	51.1	5	5.6	90	100.0
	충북	1	1.4	4	5.5	31	42.5	31	42.5	6	8.2	73	100.0
	충남	1	1.3	2	2.6	26	33.8	38	49.4	10	13.0	77	100.0
	전북	1	1.3	4	5.1	23	29.1	48	60.8	3	3.8	79	100.0
	전남	1	1.1	2	2.1	37	38.9	42	44.2	13	13.7	95	100.0
	경북	1	0.9	7	6.3	37	33.0	53	47.3	14	12.5	112	100.0
	경남	4	4.7	5	5.9	27	31.8	36	42.4	13	15.3	85	100.0
	제주	1	3.1	1	3.1	11	34.4	17	53.1	2	6.3	32	100.0
	세종	0	0.0	0	0.0	5	62.5	1	12.5	2	25.0	8	10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12	1.5	37	4.8	264	34.0	356	45.8	108	13.9	777	100.0
	이용시설	12	1.5	42	5.4	292	37.4	366	46.9	69	8.8	781	100.0

〈표 33〉 인권교육 강사로 지급기준(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시설 및 법인 자체기준		공동모금회 기준		지자체 기준		기타		총계		
	N	%	N	%	N	%	N	%	N	%	
전체	668	38.4	172	9.9	333	19.2	565	32.5	1738	100.0	
세 부 유 형 별	노인	207	36.8	15	2.7	81	14.4	260	46.2	563	100.0
	아동	124	33.0	21	5.6	76	20.2	155	41.2	376	100.0
	장애인	251	44.3	105	18.6	123	21.7	87	15.4	566	100.0
	정신보건	10	37.0	4	14.8	4	14.8	9	33.3	27	100.0
	노숙인	3	27.3	2	18.2	2	18.2	4	36.4	11	100.0
	지역사회 복지관	34	39.5	19	22.1	21	24.4	12	14.0	86	100.0
	지역자활 센터	5	31.3	3	18.8	6	37.5	2	12.5	16	100.0
	여성	21	41.2	1	2.0	13	25.5	16	31.4	51	100.0
	한부모 가족	7	43.8	1	6.3	1	6.3	7	43.8	16	100.0
	다문화 가족	5	31.3	0	0.0	4	25.0	7	43.8	16	100.0
	청소년	1	10.0	1	10.0	2	20.0	6	60.0	10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101	39.8	23	9.1	54	21.3	76	29.9	254	100.0
	부산	38	41.3	9	9.8	15	16.3	30	32.6	92	100.0
	대구	36	43.4	5	6.0	8	9.6	34	41.0	83	100.0
	인천	22	27.5	3	3.8	33	41.3	22	27.5	80	100.0
	광주	19	30.6	6	9.7	21	33.9	16	25.8	62	100.0
	대전	30	46.2	8	12.3	9	13.8	18	27.7	65	100.0
	울산	22	52.4	8	19.0	6	14.3	6	14.3	42	100.0
	경기	137	40.9	29	8.7	52	15.5	117	34.9	335	100.0
	강원	30	31.6	10	10.5	21	22.1	34	35.8	95	100.0
	충북	26	30.6	10	11.8	17	20.0	32	37.6	85	100.0
	충남	26	32.1	11	13.6	19	23.5	25	30.9	81	100.0
	전북	36	40.4	11	12.4	10	11.2	32	36.0	89	100.0
	전남	42	39.6	11	10.4	17	16.0	36	34.0	106	100.0
	경북	45	34.9	13	10.1	28	21.7	43	33.3	129	100.0
	경남	40	41.7	12	12.5	13	13.5	31	32.3	96	100.0
	제주	16	47.1	1	2.9	8	23.5	9	26.5	34	100.0
	세종	2	20.0	2	20.0	2	20.0	4	40.0	10	100.0
시 설 유 형 별	생활시설	354	40.6	97	11.1	129	14.8	292	33.5	872	100.0
	이용시설	314	36.3	75	8.7	204	23.6	273	31.5	866	100.0

〈표 34〉 인권교육 강사비(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강사비 없음 (무료 및 외부단체지원)		5만원 미만		5만-10만원 미만		10만-20만원 미만		20만-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총계		
	N	%	N	%	N	%	N	%	N	%	N	%	N	%	
전체	373	33.3	55	4.9	305	27.2	363	32.4	20	1.8	4	0.1	1120	100.0	
세 부 유 형	노인	172	51.5	8	2.4	91	27.2	59	17.7	3	0.9	1	0.3	334	100.0
	아동	84	40.0	19	9.0	55	26.2	51	24.3	0	0.0	1	0.5	210	100.0
	장애인	52	13.1	24	6.0	116	29.1	193	48.5	12	3.0	1	0.3	398	100.0
	정신보건	12	54.5	0	0.0	4	18.2	5	22.7	0	0.0	1	4.5	22	100.0
	노숙인	5	62.5	0	0.0	1	12.5	2	25.0	0	0.0	0	0.0	8	100.0
	지역사회 복지관	19	27.5	1	1.4	18	26.1	27	39.1	4	5.8	0	0.0	69	100.0
	지역자활 센터	2	14.3	0	0.0	5	35.7	7	50.0	0	0.0	0	0.0	14	100.0
	여성	14	41.2	1	2.9	6	17.6	12	35.3	1	2.9	0	0.0	34	100.0
	한부모 가족	6	46.2	0	0.0	4	30.8	3	23.1	0	0.0	0	0.0	13	100.0
	다문화 가족	4	33.3	0	0.0	4	33.3	4	33.3	0	0.0	0	0.0	12	100.0
	청소년	5	35.7	3	21.4	5	35.7	1	7.1	0	0.0	0	0.0	14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56	33.1	7	4.1	36	21.3	66	39.1	4	2.4	0	0.0	169	100.0
	부산	26	44.1	1	1.7	11	18.6	20	33.9	0	0.0	1	1.7	59	100.0
	대구	18	33.3	1	1.9	16	29.6	19	35.2	0	0.0	0	0.0	54	100.0
	인천	20	36.4	1	1.8	13	23.6	18	32.7	3	5.5	0	0.0	55	100.0
	광주	8	18.6	2	4.7	23	53.5	10	23.3	0	0.0	0	0.0	43	100.0
	대전	11	25.0	2	4.5	20	45.5	11	25.0	0	0.0	0	0.0	44	100.0
	울산	6	17.6	2	5.9	11	32.4	13	38.2	1	2.9	1	2.9	34	100.0
	경기	69	35.0	12	6.1	42	21.3	67	34.0	7	3.6	0	0.0	197	100.0
	강원	22	37.3	6	10.2	16	27.1	15	25.4	0	0.0	0	0.0	59	100.0
	충북	14	25.5	5	9.1	18	32.7	17	30.9	1	1.8	0	0.0	55	100.0
	충남	16	32.0	4	8.0	12	24.0	16	32.0	1	2.0	1	2.0	50	100.0
	전북	23	40.4	3	5.3	14	24.6	17	29.8	0	0.0	0	0.0	57	100.0
	전남	29	38.7	3	4.0	24	32.0	19	25.3	0	0.0	0	0.0	75	100.0
	경북	29	35.4	4	4.9	26	31.7	22	26.8	1	1.2	0	0.0	82	100.0
	경남	19	36.5	1	1.9	15	28.8	15	28.8	2	3.8	0	0.0	52	100.0
	제주	5	17.9	1	3.6	6	21.4	15	53.6	0	0.0	1	3.6	28	100.0
	세종	2	28.6	0	0.0	2	28.6	3	42.9	0	0.0	0	0.0	7	10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184	33.2	26	4.7	143	25.8	193	34.8	7	1.3	2	0.4	555	100.0
	이용시설	164	34.9	28	6.0	135	28.7	132	28.1	9	1.9	2	0.4	470	100.0

〈표 35〉 인권교육 진행방법(업무시간 내/외)(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업무시간에 진행		업무시간 외 진행		총계		
	N	%	N	%	N	%	
전체	1,391	87.0	207	13.0	1,598	100.0	
세 부 유 형	노인	416	83.9	80	16.1	496	100.0
	아동	308	88.0	42	12.0	350	100.0
	장애인	452	86.3	72	13.7	524	100.0
	정신보건	24	92.3	2	7.7	26	100.0
	노숙인	10	90.9	1	9.1	11	100.0
	지역사회 복지관	82	96.5	3	3.5	85	100.0
	지역자활 센터	14	87.5	2	12.5	16	100.0
	여성	47	95.9	2	4.1	49	100.0
	한부모 가족	15	100.0	0	0.0	15	100.0
	다문화 가족	15	93.8	1	6.3	16	100.0
	청소년	8	80.0	2	20.0	10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207	87.3	30	12.7	237
부산		71	82.6	15	17.4	86	100.0
대구		69	88.5	9	11.5	78	100.0
인천		68	90.7	7	9.3	75	100.0
광주		49	84.5	9	15.5	58	100.0
대전		52	88.1	7	11.9	59	100.0
울산		31	83.8	6	16.2	37	100.0
경기		247	81.8	55	18.2	302	100.0
강원		83	92.2	7	7.8	90	100.0
충북		67	90.5	7	9.5	74	100.0
충남		67	89.3	8	10.7	75	100.0
전북		71	89.9	8	10.1	79	100.0
전남		90	90.9	9	9.1	99	100.0
경북		106	89.1	13	10.9	119	100.0
경남		77	87.5	11	12.5	88	100.0
제주		27	84.4	5	15.6	32	100.0
세종		9	90.0	1	10.0	10	10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674	86.4	106	13.6	780	100.0
	이용시설	717	87.7	101	12.3	818	100.0

〈표 36〉 내부교육 시간 외 실시 시 수당지급여부(업무시간 내/외)(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수당지급		수당 미지급		총계		
	N	%	N	%	N	%	
전체	101	48.8	106	51.2	207	100.0	
세 부 유 형	노인	29	36.3	51	63.8	80	100.0
	아동	11	26.2	31	73.8	42	100.0
	장애인	53	73.6	19	26.4	72	100.0
	정신보건	1	50.0	1	50.0	2	100.0
	노숙인	1	100.0	0	0.0	1	100.0
	지역사회 복지관	3	100.0	0	0.0	3	100.0
	지역자활 센터	1	50.0	1	50.0	2	100.0
	여성	2	100.0	0	0.0	2	100.0
	한부모 가족	0	0.0	0	0.0	0	0.0
	다문화 가족	0	0.0	1	100.0	1	100.0
	청소년	0	0.0	2	100.0	2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18	60.0	12	40.0	30
부산		5	33.3	10	66.7	15	100.0
대구		4	44.4	5	55.6	9	100.0
인천		4	57.1	3	42.9	7	100.0
광주		0	0.0	9	100.0	9	100.0
대전		3	42.9	4	57.1	7	100.0
울산		3	50.0	3	50.0	6	100.0
경기		29	52.7	26	47.3	55	100.0
강원		4	57.1	3	42.9	7	100.0
충북		5	71.4	2	28.6	7	100.0
충남		3	37.5	5	62.5	8	100.0
전북		4	50.0	4	50.0	8	100.0
전남		1	11.1	8	88.9	9	100.0
경북		6	46.2	7	53.8	13	100.0
경남		8	72.7	3	27.3	11	100.0
제주		4	80.0	1	20.0	5	100.0
세종		0	0.0	1	100.0	1	10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50	47.2	56	52.8	106	100.0
	이용시설	51	50.5	50	49.5	101	100.0

〈표 37〉 외부교육으로 참여했던 기관(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국가인권위		중앙정부(복지부, 교육부/교육청)		지자체/산하 인재개발원		정부산하 교육기관 (인력개발원 등)		협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회 등)		대학/평생교육원		
	N	%	N	%	N	%	N	%	N	%	N	%	
전체	458	21.7	90	4.3	387	18.3	611	28.9	946	44.8	50	2.4	
세 부 유 형	노인	201	26.7	32	4.3	128	17.0	374	49.7	130	17.3	24	3.2
	아동	43	9.0	22	4.6	96	20.0	108	22.5	278	58.0	10	2.1
	장애인	119	20.2	25	4.2	133	22.6	49	8.3	411	69.8	12	2.0
	정신보건	23	25.6	6	6.7	4	4.4	42	46.7	48	53.3	0	0.0
	노숙인	46	100.0	0	0.0	1	2.2	0	0.0	3	6.5	0	0.0
	지역사회 복지관	12	19.7	3	4.9	12	19.7	11	18.0	30	49.2	2	3.3
	지역자활 센터	0	0.0	0	0.0	2	20.0	2	20.0	6	60.0	0	0.0
	여성	5	12.5	1	2.5	7	17.5	12	30.0	21	52.5	1	2.5
	한부모 가족	5	27.8	0	0.0	1	5.6	6	33.3	10	55.6	0	0.0
	다문화 가족	1	11.1	0	0.0	1	11.1	4	44.4	1	11.1	0	0.0
	청소년	3	17.6	1	5.9	2	11.8	3	17.6	8	47.1	1	5.9
시 설 소 재 지	서울	76	22.4	15	4.4	72	21.2	90	26.5	159	46.9	10	2.9
	부산	37	28.2	6	4.6	24	18.3	38	29.0	56	42.7	2	1.5
	대구	25	23.6	3	2.8	27	25.5	29	27.4	45	42.5	2	1.9
	인천	17	19.1	7	7.9	21	23.6	27	30.3	36	40.4	1	1.1
	광주	15	14.2	2	1.9	14	13.2	29	27.4	64	60.4	4	3.8
	대전	22	27.5	5	6.3	9	11.3	15	18.8	44	55.0	3	3.8
	울산	7	15.2	3	6.5	10	21.7	7	15.2	25	54.3	0	0.0
	경기	95	25.1	18	4.8	61	16.1	112	29.6	151	39.9	9	2.4
	강원	21	22.8	1	1.1	15	16.3	31	33.7	39	42.4	3	3.3
	충북	18	19.6	3	3.3	14	15.2	30	32.6	49	53.3	1	1.1
	충남	14	14.6	3	3.1	22	22.9	34	35.4	32	33.3	2	2.1
	전북	24	20.2	8	6.7	27	22.7	30	25.2	50	42.0	1	0.8
	전남	20	13.2	7	4.6	30	19.7	48	31.6	63	41.4	5	3.3
	경북	33	22.6	7	4.8	22	15.1	53	36.3	68	46.6	4	2.7
	경남	23	23.5	2	2.0	15	15.3	28	28.6	41	41.8	3	3.1
	제주	8	24.2	0	0.0	3	9.1	6	18.2	21	63.6	0	0.0
	세종	3	37.5	0	0.0	1	12.5	4	50.0	3	37.5	0	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280	26.1	45	4.2	219	20.4	328	30.5	448	41.7	25	2.3
	이용시설	178	17.2	45	4.3	168	16.2	283	27.3	498	48.0	25	2.4

〈표 38〉 외부교육을 수강한 기관을 선정한 이유(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교육주최기관의 신뢰성		의무 참여교육으로 참석(지자체 교육 등)		응교육 주체기관의 홍보를 보고		교육장소의 접근성		교육일정이 기관의 일정에 부합하여		기타		
	N	%	N	%	N	%	N	%	N	%	N	%	
전체	597	28.3	1089	51.6	247	11.7	300	14.2	406	19.2	180	8.5	
세 부 유 형	노인	215	28.6	368	48.9	67	8.9	86	11.4	110	14.6	88	11.7
	아동	110	23.0	327	68.3	38	7.9	56	11.7	69	14.4	21	4.4
	장애인	173	29.4	278	47.2	104	17.7	105	17.8	157	26.7	47	8.0
	정신보건	38	42.2	30	33.3	11	12.2	20	22.2	26	28.9	9	10.0
	노숙인	17	37.0	28	60.9	4	8.7	8	17.4	5	10.9	1	2.2
	지역사회 복지관	25	41.0	16	26.2	9	14.8	10	16.4	17	27.9	5	8.2
	지역자활 센터	0	0.0	4	40.0	2	20.0	3	30.0	4	40.0	0	0.0
	여성	7	17.5	17	42.5	8	20.0	7	17.5	9	22.5	6	15.0
	한부모 가족	3	16.7	9	50.0	3	16.7	2	11.1	3	16.7	2	11.1
	다문화 가족	5	55.6	4	44.4	0	0.0	1	11.1	3	33.3	0	0.0
	청소년	4	23.5	8	47.1	1	5.9	2	11.8	3	17.6	1	5.9
시 설 소 재 지	서울	104	30.7	168	49.6	45	13.3	60	17.7	70	20.6	31	9.1
	부산	38	29.0	67	51.1	12	9.2	16	12.2	28	21.4	11	8.4
	대구	29	27.4	55	51.9	12	11.3	13	12.3	24	22.6	8	7.5
	인천	31	34.8	52	58.4	8	9.0	9	10.1	11	12.4	7	7.9
	광주	38	35.8	55	51.9	15	14.2	13	12.3	23	21.7	8	7.5
	대전	18	22.5	35	43.8	8	10.0	11	13.8	20	25.0	10	12.5
	울산	11	23.9	31	67.4	7	15.2	4	8.7	9	19.6	2	4.3
	경기	109	28.8	182	48.1	43	11.4	53	14.0	62	16.4	36	9.5
	강원	24	26.1	56	60.9	6	6.5	15	16.3	15	16.3	5	5.4
	충북	22	23.9	48	52.2	10	10.9	7	7.6	19	20.7	14	15.2
	충남	23	24.0	51	53.1	10	10.4	12	12.5	21	21.9	1	1.0
	전북	44	37.0	66	55.5	11	9.2	16	13.4	16	13.4	6	5.0
	전남	34	22.4	85	55.9	16	10.5	29	19.1	29	19.1	12	7.9
	경북	34	23.3	73	50.0	20	13.7	22	15.1	31	21.2	14	9.6
	경남	25	25.5	46	46.9	11	11.2	11	11.2	19	19.4	14	14.3
	제주	10	30.3	15	45.5	12	36.4	8	24.2	7	21.2	1	3.0
세종	3	37.5	4	50.0	1	12.5	1	12.5	2	25.0	0	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330	30.7	541	50.4	125	11.6	160	14.9	195	18.2	96	8.9
	이용시설	267	25.7	548	52.8	122	11.8	140	13.5	211	20.3	84	8.1

〈표 39〉 외부기관의 인권교육에 참여한 방법(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출장 또는 교육 공가		개인휴가 사용		인터넷 수강 등 기타 방법		총계		
	N	%	N	%	N	%	N	%	
전체	1,503	71.2	112	5.3	496	23.5	2,111	100.0	
세 부 유 형	노인	353	46.9	89	11.8	310	41.2	752	100.0
	아동	409	85.4	12	2.5	58	12.1	479	100.0
	장애인	489	83.0	10	1.7	90	15.3	589	100.0
	정신보건	84	93.3	0	0.0	6	6.7	90	100.0
	노숙인	46	100.0	0	0.0	0	0.0	46	100.0
	지역사회 복지관	47	77.0	0	0.0	14	23.0	61	100.0
	지역자활 센터	6	60.0	0	0.0	4	40.0	10	100.0
	여성	31	77.5	1	2.5	8	20.0	40	100.0
	한부모 가족	16	88.9	0	0.0	2	11.1	18	100.0
	다문화 가족	7	77.8	0	0.0	2	22.2	9	100.0
	청소년	15	88.2	0	0.0	2	11.8	17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249	73.5	16	4.7	74	21.8	339
부산		91	69.5	7	5.3	33	25.2	131	100.0
대구		78	73.6	4	3.8	24	22.6	106	100.0
인천		68	76.4	7	7.9	14	15.7	89	100.0
광주		85	80.2	6	5.7	15	14.2	106	100.0
대전		59	73.8	4	5.0	17	21.3	80	100.0
울산		35	76.1	1	2.2	10	21.7	46	100.0
경기		243	64.3	27	7.1	108	28.6	378	100.0
강원		65	70.7	7	7.6	20	21.7	92	100.0
충북		66	71.7	5	5.4	21	22.8	92	100.0
충남		74	77.1	4	4.2	18	18.8	96	100.0
전북		84	70.6	5	4.2	30	25.2	119	100.0
전남		105	69.1	7	4.6	40	26.3	152	100.0
경북		99	67.8	7	4.8	40	27.4	146	100.0
경남		70	71.4	2	2.0	26	26.5	98	100.0
제주		26	78.8	2	6.1	5	15.2	33	100.0
세종		6	75.0	1	12.5	1	12.5	8	10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736	68.5	73	6.8	265	24.7	1,074	100.0
	이용시설	767	74.0	39	3.8	231	22.3	1,037	100.0

〈표 40〉 근무시간 외 외부기관의 인권교육 참여 여부(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근무시간 내 교육		근무시간 외 교육		총계		
	N	%	N	%	N	%	
전체	1,626	77.0	485	23.0	2,111	100.0	
세 부 유 형	노인	589	78.3	163	21.7	752	100.0
	아동	362	75.6	117	24.4	479	100.0
	장애인	432	73.3	157	26.7	589	100.0
	정신보건	73	81.1	17	18.9	90	100.0
	노숙인	42	91.3	4	8.7	46	100.0
	지역사회 복지관	55	90.2	6	9.8	61	100.0
	지역자활 센터	10	100.0	0	0.0	10	100.0
	여성	29	72.5	11	27.5	40	100.0
	한부모 가족	13	72.2	5	27.8	18	100.0
	다문화 가족	8	88.9	1	11.1	9	100.0
	청소년	13	76.5	4	23.5	17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259	76.4	80	23.6	339
부산		105	80.2	26	19.8	131	100.0
대구		92	86.8	14	13.2	106	100.0
인천		61	68.5	28	31.5	89	100.0
광주		78	73.6	28	26.4	106	100.0
대전		66	82.5	14	17.5	80	100.0
울산		39	84.8	7	15.2	46	100.0
경기		284	75.1	94	24.9	378	100.0
강원		69	75.0	23	25.0	92	100.0
충북		69	75.0	23	25.0	92	100.0
충남		68	70.8	28	29.2	96	100.0
전북		93	78.2	26	21.8	119	100.0
전남		121	79.6	31	20.4	152	100.0
경북		110	75.3	36	24.7	146	100.0
경남		82	83.7	16	16.3	98	100.0
제주		25	75.8	8	24.2	33	100.0
세종		5	62.5	3	37.5	8	10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767	71.4	307	28.6	1,074	100.0
	이용시설	859	82.8	178	17.2	1,037	100.0

〈표 41〉 근무시간 외 외부교육 참여시 수당지급 여부(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초과 근무수당 지급		초과 근무수당 미지급		총계			
	N	%	N	%	N	%		
전체	142	29.3	343	70.7	485	100.0		
세 부 유 형	노인	34	20.9	129	79.1	163	100.0	
	아동	14	12.0	103	88.0	117	100.0	
	장애인	81	51.6	76	48.4	157	100.0	
	정신보건	7	41.2	10	58.8	17	100.0	
	노숙인	1	25.0	3	75.0	4	100.0	
	지역사회 복지관	1	16.7	5	83.3	6	100.0	
	지역자활 센터	0	0.0	0	0.0	0	0.0	
	여성	1	9.1	10	90.9	11	100.0	
	한부모 가족	1	20.0	4	80.0	5	100.0	
	다문화 가족	1	100.0	0	0.0	1	100.0	
	청소년	1	25.0	3	75.0	4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25	31.3	55	68.8	80	100.0
		부산	10	38.5	16	61.5	26	100.0
대구		3	21.4	11	78.6	14	100.0	
인천		8	28.6	20	71.4	28	100.0	
광주		8	28.6	20	71.4	28	100.0	
대전		6	42.9	8	57.1	14	100.0	
울산		3	42.9	4	57.1	7	100.0	
경기		25	26.6	69	73.4	94	100.0	
강원		9	39.1	14	60.9	23	100.0	
충북		7	30.4	16	69.6	23	100.0	
충남		10	35.7	18	64.3	28	100.0	
전북		7	26.9	19	73.1	26	100.0	
전남		5	16.1	26	83.9	31	100.0	
경북		9	25.0	27	75.0	36	100.0	
경남		3	18.8	13	81.3	16	100.0	
제주		3	37.5	5	62.5	8	100.0	
세종		1	33.3	2	66.7	3	10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105	34.2	202	65.8	307	100.0
	이용시설	37	20.8	141	79.2	178	100.0	

〈표 42〉 외부기관 교육의 방법: 대면 vs. 비대면(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대면(집합) 교육		비대면 온라인 교육		총계		
	N	%	N	%	N	%	
전체	1,516	71.8	595	28.2	2,111	100.0	
세 부 유 형	노인	366	48.7	386	51.3	752	100.0
	아동	392	81.8	87	18.2	479	100.0
	장애인	528	89.6	61	10.4	589	100.0
	정신보건	71	78.9	19	21.1	90	100.0
	노숙인	46	100.0	0	0.0	46	100.0
	지역사회 복지관	49	80.3	12	19.7	61	100.0
	지역자활 센터	9	90.0	1	10.0	10	100.0
	여성	23	57.5	17	42.5	40	100.0
	한부모 가족	14	77.8	4	22.2	18	100.0
	다문화 가족	4	44.4	5	55.6	9	100.0
	청소년	14	82.4	3	17.6	17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238	70.2	101	29.8	339	100.0
	부산	89	67.9	42	32.1	131	100.0
	대구	73	68.9	33	31.1	106	100.0
	인천	63	70.8	26	29.2	89	100.0
	광주	91	85.8	15	14.2	106	100.0
	대전	60	75.0	20	25.0	80	100.0
	울산	38	82.6	8	17.4	46	100.0
	경기	251	66.4	127	33.6	378	100.0
	강원	66	71.7	26	28.3	92	100.0
	충북	71	77.2	21	22.8	92	100.0
	충남	72	75.0	24	25.0	96	100.0
	전북	96	80.7	23	19.3	119	100.0
	전남	109	71.7	43	28.3	152	100.0
	경북	97	66.4	49	33.6	146	100.0
	경남	70	71.4	28	28.6	98	100.0
	제주	27	81.8	6	18.2	33	100.0
	세종	5	62.5	3	37.5	8	10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768	71.5	306	28.5	1,074	100.0
	이용시설	748	72.1	289	27.9	1,037	100.0

〈표 43〉 인권교육 진행 강사(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국가인권위 관계자		국가인권위 위촉강사		현재 국가인권위 위촉강사 아님, 과거 인권위 양성과정 수료자		지자체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각종 협회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시민단체/민간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모르겠음		
	N	%	N	%	N	%	N	%	N	%	N	%	%	%	N	%	N	%	
전체	221	10.5	429	20.3	75	3.6	330	15.6	572	27.1	193	9.1	210	9.9	175	8.3	627	29.7	
세 부 유 형 별	노인	82	10.9	109	14.5	11	1.5	93	12.4	189	25.1	45	6.0	33	4.4	26	3.5	305	40.6
	아동	28	5.8	62	12.9	10	2.1	94	19.6	121	25.3	51	10.6	48	10.0	40	8.4	150	31.3
	장애인	58	9.8	159	27.0	44	7.5	114	19.4	198	33.6	70	11.9	104	17.7	86	14.6	108	18.3
	정신보건	14	15.6	37	41.1	4	4.4	10	11.1	33	36.7	5	5.6	7	7.8	7	7.8	17	18.9
	노숙인	20	43.5	37	80.4	1	2.2	1	2.2	1	2.2	2	4.3	0	0.0	0	0.0	4	8.7
	지역사회 복지관	9	14.8	16	26.2	2	3.3	6	9.8	9	14.8	5	8.2	5	8.2	3	4.9	16	26.2
	지역자활 센터	0	0.0	2	20.0	0	0.0	0	0.0	3	30.0	0	0.0	0	0.0	2	20.0	3	30.0
	여성	1	2.5	2	5.0	1	2.5	5	12.5	10	25.0	9	22.5	6	15.0	7	17.5	16	40.0
	한부모 가족	5	27.8	3	16.7	1	5.6	1	5.6	2	11.1	3	16.7	3	16.7	2	11.1	4	22.2
	다문화 가족	2	22.2	1	11.1	1	11.1	2	22.2	1	11.1	2	22.2	1	11.1	0	0.0	2	22.2
	청소년	2	11.8	1	5.9	0	0.0	4	23.5	5	29.4	1	5.9	3	17.6	2	11.8	2	11.8
시 설 소 재 지	서울	29	8.6	73	21.5	12	3.5	70	20.6	82	24.2	27	8.0	37	10.9	24	7.1	120	35.4
	부산	24	18.3	23	17.6	5	3.8	16	12.2	25	19.1	4	3.1	9	6.9	10	7.6	47	35.9
	대구	14	13.2	30	28.3	1	0.9	7	6.6	23	21.7	7	6.6	10	9.4	5	4.7	36	34.0
	인천	9	10.1	21	23.6	2	2.2	18	20.2	23	25.8	14	15.7	10	11.2	8	9.0	31	34.8
	광주	10	9.4	22	20.8	6	5.7	20	18.9	32	30.2	11	10.4	19	17.9	15	14.2	25	23.6
	대전	8	10.0	20	25.0	3	3.8	6	7.5	20	25.0	11	13.8	9	11.3	10	12.5	23	28.8
	울산	4	8.7	1	2.2	2	4.3	8	17.4	19	41.3	10	21.7	1	2.2	9	19.6	12	26.1
	경기	41	10.8	76	20.1	12	3.2	74	19.6	88	23.3	34	9.0	37	9.8	30	7.9	111	29.4
	강원	4	4.3	11	12.0	3	3.3	9	9.8	33	35.9	10	10.9	16	17.4	10	10.9	29	31.5
	충북	9	9.8	19	20.7	4	4.3	13	14.1	33	35.9	7	7.6	9	9.8	8	8.7	20	21.7
	충남	6	6.3	22	22.9	2	2.1	13	13.5	30	31.3	4	4.2	9	9.4	6	6.3	24	25.0
	전북	11	9.2	30	25.2	7	5.9	21	17.6	45	37.8	16	13.4	8	6.7	9	7.6	22	18.5
	전남	9	5.9	22	14.5	4	2.6	22	14.5	40	26.3	10	6.6	17	11.2	10	6.6	52	34.2
	경북	25	17.1	26	17.8	7	4.8	18	12.3	42	28.8	17	11.6	13	8.9	11	7.5	30	20.5
	경남	11	11.2	19	19.4	4	4.1	9	9.2	28	28.6	9	9.2	5	5.1	3	3.1	34	34.7
	제주	4	12.1	13	39.4	1	3.0	5	15.2	9	27.3	2	6.1	1	3.0	7	21.2	7	21.2
	세종	3	37.5	1	12.5	0	0.0	1	12.5	0	0.0	0	0.0	0	0.0	0	0.0	4	50.0
시 설 유 형 별	생활시설	140	13.0	252	23.5	48	4.5	170	15.8	320	29.8	85	7.9	120	11.2	92	8.6	273	25.4
	이용시설	81	7.8	177	17.1	27	2.6	160	15.4	252	24.3	108	10.4	90	8.7	83	8.0	354	34.1

〈표 44〉 인권교육 수강내용(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인권개념 및 역사		인권과 법/정책		국제인권기준		인권 내용(사회권, 자유권, 차별)		이용자 인권 (아동/장애인/노인학대)		시설 종사자 인권 (노동권, 직장내괴롭힘/조직운영)		인권침해 시 도움받는 절차/기관		
	N	%	N	%	N	%	N	%	N	%	N	%	N	%	
전체	2,017	68.3	1,823	61.7	1,768	59.9	2,409	81.6	2,670	90.4	2,304	78.0	2,147	72.7	
세 부 유 형	노인	782	78.4	712	71.4	636	63.8	829	83.1	937	94.0	842	84.5	817	81.9
	아동	380	56.6	329	49.0	455	67.8	520	77.5	577	86.0	461	68.7	414	61.7
	장애인	585	67.6	519	59.9	464	53.6	741	85.6	810	93.5	672	77.6	639	73.8
	정신보건	75	77.3	75	77.3	50	51.5	78	80.4	86	88.7	68	70.1	62	63.9
	노숙인	35	72.9	36	75.0	28	58.3	39	81.3	39	81.3	37	77.1	40	83.3
	지역사회 복지관	77	67.0	78	67.8	64	55.7	96	83.5	100	87.0	100	87.0	82	71.3
	지역자활 센터	9	39.1	12	52.2	8	34.8	15	65.2	17	73.9	15	65.2	12	52.2
	여성	33	47.8	25	36.2	25	36.2	39	56.5	53	76.8	54	78.3	40	58.0
	한부모 가족	17	65.4	12	46.2	15	57.7	21	80.8	20	76.9	24	92.3	17	65.4
	다문화 가족	8	40.0	10	50.0	9	45.0	12	60.0	14	70.0	14	70.0	10	50.0
시 설 소 재 지	청소년	16	76.2	15	71.4	14	66.7	19	90.5	17	81.0	17	81.0	14	66.7
	서울	302	66.5	282	62.1	284	62.6	374	82.4	413	91.0	342	75.3	324	71.4
	부산	114	65.9	106	61.3	97	56.1	127	73.4	158	91.3	135	78.0	120	69.4
	대구	95	67.9	85	60.7	88	62.9	114	81.4	120	85.7	113	80.7	105	75.0
	인천	98	72.6	84	62.2	90	66.7	112	83.0	120	88.9	101	74.8	96	71.1
	광주	73	60.3	59	48.8	49	40.5	95	78.5	109	90.1	90	74.4	78	64.5
	대전	82	75.9	78	72.2	67	62.0	94	87.0	97	89.8	95	88.0	83	76.9
	울산	47	69.1	44	64.7	40	58.8	51	75.0	64	94.1	51	75.0	50	73.5
	경기	386	71.1	348	64.1	324	59.7	455	83.8	499	91.9	422	77.7	415	76.4
	강원	108	70.6	98	64.1	108	70.6	129	84.3	139	90.8	116	75.8	112	73.2
	충북	95	69.3	82	59.9	83	60.6	113	82.5	128	93.4	105	76.6	96	70.1
	충남	96	69.1	88	63.3	84	60.4	109	78.4	121	87.1	112	80.6	105	75.5
	전북	111	72.1	107	69.5	106	68.8	132	85.7	141	91.6	128	83.1	114	74.0
	전남	133	67.9	123	62.8	116	59.2	147	75.0	177	90.3	155	79.1	145	74.0
	경북	139	65.0	125	58.4	120	56.1	172	80.4	193	90.2	174	81.3	154	72.0
	경남	96	63.2	80	52.6	80	52.6	129	84.9	136	89.5	119	78.3	100	65.8
	제주	29	56.9	22	43.1	24	47.1	43	84.3	41	80.4	35	68.6	36	70.6
세종	13	86.7	12	80.0	8	53.3	13	86.7	14	93.3	11	73.3	14	93.3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1,038	73.5	945	66.9	869	61.5	1,186	83.9	1,290	91.3	1,133	80.2	1,088	77.0
	이용시설	979	63.6	878	57.0	899	58.4	1,223	79.4	1,380	89.6	1,171	76.0	1,059	68.8

〈표 45〉 인권교육 수강방법(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강의중심		토론중심 참여형		역할극중심 참여형		캠페인, 현장방문 등 현장체험형		녹화된 강의 비디오로 시청		영화/드라마 중심		
	N	%	N	%	N	%	N	%	N	%	N	%	
전체	2,444	82.8	629	21.3	113	3.8	24	0.8	630	21.3	170	5.8	
세 부 유 형	노인	759	76.1	50	5.0	15	1.5	4	0.4	313	31.4	38	3.8
	아동	577	86.0	137	20.4	20	3.0	7	1.0	132	19.7	33	4.9
	장애인	755	87.2	339	39.1	62	7.2	10	1.2	94	10.9	63	7.3
	정신보건	93	95.9	20	20.6	1	1.0	0	0.0	17	17.5	14	14.4
	노숙인	39	81.3	31	64.6	5	10.4	0	0.0	6	12.5	6	12.5
	지역사회 복지관	96	83.5	21	18.3	3	2.6	0	0.0	21	18.3	10	8.7
	지역자활 센터	19	82.6	4	17.4	1	4.3	0	0.0	3	13.0	0	0.0
	여성	54	78.3	13	18.8	3	4.3	2	2.9	21	30.4	3	4.3
	한부모 가족	19	73.1	5	19.2	1	3.8	0	0.0	9	34.6	1	3.8
	다문화 가족	15	75.0	3	15.0	0	0.0	0	0.0	7	35.0	0	0.0
청소년	18	85.7	6	28.6	2	9.5	1	4.8	7	33.3	2	9.5	
시 설 소 재 지	서울	382	84.1	94	20.7	13	2.9	1	0.2	81	17.8	22	4.8
	부산	135	78.0	33	19.1	7	4.0	3	1.7	45	26.0	6	3.5
	대구	119	85.0	22	15.7	9	6.4	0	0.0	29	20.7	5	3.6
	인천	108	80.0	29	21.5	3	2.2	0	0.0	32	23.7	6	4.4
	광주	112	92.6	25	20.7	5	4.1	2	1.7	18	14.9	15	12.4
	대전	93	86.1	38	35.2	5	4.6	0	0.0	18	16.7	8	7.4
	울산	61	89.7	20	29.4	4	5.9	0	0.0	13	19.1	5	7.4
	경기	441	81.2	112	20.6	11	2.0	7	1.3	133	24.5	27	5.0
	강원	126	82.4	24	15.7	8	5.2	0	0.0	34	22.2	18	11.8
	충북	110	80.3	23	16.8	4	2.9	2	1.5	29	21.2	8	5.8
	충남	112	80.6	23	16.5	4	2.9	1	0.7	36	25.9	3	2.2
	전북	132	85.7	45	29.2	8	5.2	3	1.9	26	16.9	10	6.5
	전남	164	83.7	33	16.8	10	5.1	2	1.0	37	18.9	12	6.1
	경북	171	79.9	46	21.5	9	4.2	1	0.5	49	22.9	13	6.1
	경남	125	82.2	38	25.0	7	4.6	0	0.0	37	24.3	10	6.6
제주	42	82.4	19	37.3	5	9.8	2	3.9	7	13.7	1	2.0	
세종	11	73.3	5	33.3	1	6.7	0	0.0	6	40.0	1	6.7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1,153	81.6	377	26.7	66	4.7	13	0.9	307	21.7	90	6.4
	이용시설	1,291	83.8	252	16.4	47	3.1	11	0.7	323	21.0	80	5.2

〈표 46〉 인권교육 정보 획득(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국가인권위		지자체 관련 부서		각종 직능협회		시민단체/민간업체		전임자/타시설 담당자		
	N	%	N	%	N	%	N	%	N	%	
전체	706	23.9	1,150	38.9	969	32.8	348	11.8	575	19.5	
세 부 유 형 별	노인	249	25.0	504	50.6	206	20.7	88	8.8	159	15.9
	아동	113	16.8	240	35.8	244	36.4	89	13.3	115	17.1
	장애인	210	24.2	280	32.3	379	43.8	119	13.7	215	24.8
	정신보건	28	28.9	34	35.1	53	54.6	3	3.1	18	18.6
	노숙인	40	83.3	16	33.3	10	20.8	3	6.3	3	6.3
	지역사회 복지관	29	25.2	26	22.6	36	31.3	12	10.4	28	24.3
	지역자활 센터	3	13.0	7	30.4	8	34.8	1	4.3	6	26.1
	여성	11	15.9	22	31.9	16	23.2	24	34.8	18	26.1
	한부모 가족	11	42.3	7	26.9	8	30.8	4	15.4	5	19.2
	다문화 가족	5	25.0	5	25.0	2	10.0	1	5.0	4	20.0
	청소년	7	33.3	9	42.9	7	33.3	4	19.0	4	19.0
시 설 소 재 지	서울	105	23.1	176	38.8	144	31.7	58	12.8	91	20.0
	부산	50	28.9	64	37.0	54	31.2	19	11.0	31	17.9
	대구	37	26.4	57	40.7	59	42.1	9	6.4	21	15.0
	인천	36	26.7	38	28.1	51	37.8	15	11.1	28	20.7
	광주	23	19.0	52	43.0	48	39.7	20	16.5	24	19.8
	대전	26	24.1	44	40.7	31	28.7	14	13.0	14	13.0
	울산	14	20.6	30	44.1	27	39.7	8	11.8	11	16.2
	경기	135	24.9	221	40.7	159	29.3	70	12.9	111	20.4
	강원	35	22.9	56	36.6	46	30.1	14	9.2	22	14.4
	충북	26	19.0	54	39.4	40	29.2	20	14.6	32	23.4
	충남	29	20.9	50	36.0	51	36.7	11	7.9	27	19.4
	전북	36	23.4	66	42.9	60	39.0	16	10.4	23	14.9
	전남	39	19.9	85	43.4	62	31.6	26	13.3	40	20.4
	경북	57	26.6	88	41.1	69	32.2	22	10.3	46	21.5
	경남	42	27.6	46	30.3	46	30.3	16	10.5	39	25.7
	제주	14	27.5	16	31.4	17	33.3	7	13.7	12	23.5
	세종	2	13.3	7	46.7	5	33.3	3	20.0	3	20.0
시 설 유 형 별	생활시설	393	27.8	610	43.2	452	32.0	158	11.2	257	18.2
	이용시설	313	20.3	540	35.1	517	33.6	190	12.3	318	20.6

〈표 47〉 2019년 인권교육 만족 이유(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순위	평소에 몰랐던 인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		이용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 내용과 방법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		새로운 인권교육 방법을 적용해서 도움이 되었기 때문		강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뛰어났기 때문		교육을 받고 구체적으로 업무에 적용하고 개선할 수 있었기 때문		사회복지조직원 또는 종사자의 인권보호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기타		총계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1순위	704	27.0	681	26.1	455	17.4	107	4.1	68	2.6	214	8.2	367	14.1	16	0.6	2,612
	2순위	283	11.1	616	24.1	556	21.7	170	6.6	82	3.2	365	14.3	473	18.5	14	0.5	2,559	100.0	
세 부 유 형	노인	1순위	281	32.5	231	26.7	123	14.2	18	2.1	14	1.6	80	9.2	111	12.8	7	0.8	865	100.0
		2순위	102	12.1	218	25.8	180	21.3	49	5.8	14	1.7	117	13.8	160	18.9	6	0.7	846	100.0
	아동	1순위	162	26.6	147	24.1	120	19.7	29	4.8	12	2.0	48	7.9	91	14.9	1	0.2	610	100.0
		2순위	66	11.0	155	25.8	126	21.0	49	8.2	15	2.5	86	14.3	99	16.5	4	0.7	600	100.0
	장애인	1순위	166	21.6	213	27.8	143	18.6	44	5.7	30	3.9	66	8.6	99	12.9	6	0.8	767	100.0
		2순위	77	10.2	162	21.5	170	22.5	48	6.4	44	5.8	108	14.3	142	18.8	3	0.4	754	100.0
	정신보건	1순위	20	23.0	26	29.9	13	14.9	8	9.2	2	2.3	3	3.4	15	17.2	0	0.0	87	100.0
		2순위	7	8.3	12	14.3	25	29.8	7	8.3	2	2.4	12	14.3	19	22.6	0	0.0	84	100.0
	노숙인	1순위	8	19.5	9	22.0	13	31.7	4	9.8	0	0.0	3	7.3	4	9.8	0	0.0	41	100.0
		2순위	3	7.3	10	24.4	11	26.8	4	9.8	1	2.4	8	19.5	4	9.8	0	0.0	41	100.0
	지역사회 복지관	1순위	29	28.7	19	18.8	15	14.9	1	1.0	4	4.0	6	5.9	25	24.8	2	2.0	101	100.0
		2순위	9	9.4	27	28.1	17	17.7	4	4.2	2	2.1	10	10.4	26	27.1	1	1.0	96	100.0
	지역자활 센터	1순위	8	44.4	6	33.3	2	11.1	0	0.0	0	0.0	0	0.0	2	11.1	0	0.0	18	100.0
		2순위	2	12.5	5	31.3	2	12.5	0	0.0	1	6.3	2	12.5	4	25.0	0	0.0	16	100.0
	여성	1순위	13	21.3	15	24.6	17	27.9	2	3.3	3	4.9	4	6.6	7	11.5	0	0.0	61	100.0
		2순위	10	16.4	12	19.7	11	18.0	8	13.1	2	3.3	11	18.0	7	11.5	0	0.0	61	100.0
	한부모 가족	1순위	5	22.7	4	18.2	6	27.3	1	4.5	1	4.5	0	0.0	5	22.7	0	0.0	22	100.0
		2순위	2	9.1	7	31.8	6	27.3	1	4.5	0	0.0	4	18.2	2	9.1	0	0.0	22	100.0
	다문화 가족	1순위	6	30.0	3	15.0	1	5.0	0	0.0	1	5.0	2	10.0	7	35.0	0	0.0	20	100.0
		2순위	3	15.8	6	31.6	5	26.3	0	0.0	1	5.3	1	5.3	3	15.8	0	0.0	19	100.0
청소년	1순위	6	30.0	8	40.0	2	10.0	0	0.0	1	5.0	2	10.0	1	5.0	0	0.0	20	100.0	
	2순위	2	10.0	2	10.0	3	15.0	0	0.0	0	0.0	6	30.0	7	35.0	0	0.0	20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1순위	95	24.1	97	24.6	77	19.5	19	4.8	15	3.8	33	8.4	57	14.4	2	0.5	395	100.0
		2순위	42	10.8	85	21.9	84	21.6	26	6.7	12	3.1	66	17.0	71	18.3	3	0.8	389	100.0
	부산	1순위	35	22.9	31	20.3	28	18.3	5	3.3	4	2.6	18	11.8	29	19.0	3	2.0	153	100.0
		2순위	16	10.8	42	28.4	29	19.6	10	6.8	5	3.4	15	10.1	30	20.3	1	0.7	148	100.0
	대구	1순위	33	26.6	37	29.8	19	15.3	6	4.8	1	0.8	15	12.1	13	10.5	0	0.0	124	100.0
		2순위	10	8.1	32	26.0	25	20.3	4	3.3	7	5.7	16	13.0	29	23.6	0	0.0	123	100.0
	인천	1순위	26	22.6	32	27.8	26	22.6	3	2.6	4	3.5	11	9.6	12	10.4	1	0.9	115	100.0
		2순위	17	15.5	28	25.5	24	21.8	4	3.6	2	1.8	14	12.7	20	18.2	1	0.9	110	100.0
	광주	1순위	32	29.9	27	25.2	22	20.6	3	2.8	2	1.9	7	6.5	13	12.1	1	0.9	107	100.0
		2순위	9	8.8	27	26.5	25	24.5	4	3.9	4	3.9	12	11.8	20	19.6	1	1.0	102	100.0

구분	순위	평소에 몰랐던 인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		이용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 내용과 방법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		새로운 인권교육 방법을 적용해서 도움이 되었기 때문		강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뛰어났기 때문		교육을 받고 구체적으로 업무에 적용하고 개선할 수 있었기 때문		사회복지조직운영 또는 종사자의 인권보호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기타		총계		
		N	%	N	%	N	%	N	%	N	%	N	%	N	%	N	%	N	%	
대전	1순위	36	36.7	21	21.4	16	16.3	4	4.1	3	3.1	7	7.1	10	10.2	1	1.0	98	100.0	
	2순위	8	8.3	27	28.1	20	20.8	8	8.3	2	2.1	11	11.5	19	19.8	1	1.0	96	100.0	
울산	1순위	21	36.2	15	25.9	9	15.5	2	3.4	2	3.4	2	3.4	7	12.1	0	0.0	58	100.0	
	2순위	6	10.7	16	28.6	10	17.9	3	5.4	4	7.1	8	14.3	9	16.1	0	0.0	56	100.0	
경기	1순위	136	28.9	123	26.1	78	16.6	23	4.9	9	1.9	39	8.3	60	12.7	3	0.6	471	100.0	
	2순위	52	11.3	112	24.2	110	23.8	34	7.4	12	2.6	65	14.1	73	15.8	4	0.9	462	100.0	
강원	1순위	31	22.6	42	30.7	27	19.7	6	4.4	3	2.2	9	6.6	18	13.1	1	0.7	137	100.0	
	2순위	19	14.1	29	21.5	18	13.3	16	11.9	2	1.5	22	16.3	28	20.7	1	0.7	135	100.0	
충북	1순위	34	27.0	33	26.2	20	15.9	3	2.4	1	0.8	7	5.6	27	21.4	1	0.8	126	100.0	
	2순위	15	12.0	25	20.0	34	27.2	8	6.4	6	4.8	22	17.6	15	12.0	0	0.0	125	100.0	
충남	1순위	45	35.7	27	21.4	22	17.5	3	2.4	4	3.2	4	3.2	21	16.7	0	0.0	126	100.0	
	2순위	5	4.0	35	28.2	28	22.6	7	5.6	5	4.0	24	19.4	19	15.3	1	0.8	124	100.0	
전북	1순위	39	27.5	34	23.9	32	22.5	2	1.4	4	2.8	20	14.1	11	7.7	0	0.0	142	100.0	
	2순위	14	10.1	37	26.8	20	14.5	10	7.2	6	4.3	21	15.2	30	21.7	0	0.0	138	100.0	
전남	1순위	44	24.2	54	29.7	30	16.5	5	2.7	6	3.3	16	8.8	27	14.8	0	0.0	182	100.0	
	2순위	24	13.3	43	23.8	41	22.7	12	6.6	4	2.2	21	11.6	35	19.3	1	0.6	181	100.0	
경북	1순위	45	24.5	57	31.0	21	11.4	11	6.0	5	2.7	10	5.4	33	17.9	2	1.1	184	100.0	
	2순위	19	10.7	38	21.3	41	23.0	16	9.0	5	2.8	25	14.0	34	19.1	0	0.0	178	100.0	
경남	1순위	36	26.1	36	26.1	21	15.2	8	5.8	2	1.4	13	9.4	21	15.2	1	0.7	138	100.0	
	2순위	17	12.5	29	21.3	36	26.5	3	2.2	4	2.9	20	14.7	27	19.9	0	0.0	136	100.0	
제주	1순위	15	34.9	10	23.3	5	11.6	2	4.7	1	2.3	3	7.0	7	16.3	0	0.0	43	100.0	
	2순위	6	14.0	8	18.6	9	20.9	4	9.3	2	4.7	3	7.0	11	25.6	0	0.0	43	100.0	
세종	1순위	1	7.7	5	38.5	2	15.4	2	15.4	2	15.4	0	0.0	1	7.7	0	0.0	13	100.0	
	2순위	4	30.8	3	23.1	2	15.4	1	7.7	0	0.0	0	0.0	3	23.1	0	0.0	13	100.0	
시설유형	생활시설	1순위	328	26.2	329	26.3	241	19.3	51	4.1	36	2.9	120	9.6	138	11.0	7	0.6	1,250	100.0
		2순위	115	9.4	289	23.6	262	21.4	85	6.9	47	3.8	207	16.9	214	17.5	6	0.5	1,225	100.0
	이용시설	1순위	376	27.6	352	25.8	214	15.7	56	4.1	32	2.3	94	6.9	229	16.8	9	0.7	1,362	100.0
		2순위	168	12.6	327	24.5	294	22.0	85	6.4	35	2.6	158	11.8	259	19.4	8	0.6	1,334	100.0

〈표 48〉 2019년 인권교육 불만족 이유(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순위	강사의 전문성 등 역량 부족		반복되는 교육으로 유사한 내용반복*		강의위주의 교육방법		강의내용이 현실과 너무 맞지 않아서		교육장 환경-거리, 쾌적성		교육시간이 짧아서		교육시간이 길어서		기타		총계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1순위	39	12.3	154	48.7	28	8.9	52	16.5	9	2.8	2	0.6	25	7.9	7	2.2	316	100.0	
	2순위	31	10.1	91	29.7	55	18.0	71	23.2	16	5.2	3	1.0	29	9.5	10	3.3	306	100.0	
세 부 유 형	노인	1순위	12	10.0	45	37.5	13	10.8	24	20.0	2	1.7	1	0.8	19	15.8	4	3.3	120	100.0
		2순위	5	4.3	39	33.9	23	20.0	18	15.7	8	7.0	2	1.7	14	12.2	6	5.2	115	100.0
	아동	1순위	8	14.5	31	56.4	4	7.3	9	16.4	2	3.6	1	1.8	0	0.0	0	0.0	55	100.0
		2순위	4	7.3	15	27.3	9	16.4	18	32.7	3	5.5	1	1.8	4	7.3	1	1.8	55	100.0
	장애인	1순위	11	11.6	51	53.7	7	7.4	15	15.8	5	5.3	0	0.0	4	4.2	2	2.1	95	100.0
		2순위	14	15.2	26	28.3	15	16.3	28	30.4	2	2.2	0	0.0	5	5.4	2	2.2	92	100.0
	정신보건	1순위	1	11.1	7	77.8	0	0.0	0	0.0	0	0.0	0	0.0	0	0.0	1	11.1	9	100.0
		2순위	1	11.1	1	11.1	3	33.3	3	33.3	1	11.1	0	0.0	0	0.0	0	0.0	9	100.0
	노숙인	1순위	0	0.0	5	71.4	0	0.0	2	28.6	0	0.0	0	0.0	0	0.0	0	0.0	7	100.0
		2순위	3	42.9	1	14.3	1	14.3	0	0.0	1	14.3	0	0.0	1	14.3	0	0.0	7	100.0
	지역사회 복지관	1순위	5	41.7	3	25.0	2	16.7	1	8.3	0	0.0	0	0.0	1	8.3	0	0.0	12	100.0
		2순위	2	18.2	6	54.5	0	0.0	2	18.2	0	0.0	0	0.0	1	9.1	0	0.0	11	100.0
	지역자활 센터	1순위	1	20.0	3	60.0	0	0.0	1	20.0	0	0.0	0	0.0	0	0.0	0	0.0	5	100.0
		2순위	1	20.0	2	40.0	1	20.0	0	0.0	0	0.0	0	0.0	1	20.0	0	0.0	5	100.0
	여성	1순위	1	12.5	5	62.5	1	12.5	0	0.0	0	0.0	0	0.0	1	12.5	0	0.0	8	100.0
		2순위	0	0.0	1	14.3	2	28.6	1	14.3	1	14.3	0	0.0	1	14.3	1	14.3	7	100.0
	한부모 가족	1순위	0	0.0	3	75.0	1	25.0	0	0.0	0	0.0	0	0.0	0	0.0	0	0.0	4	100.0
		2순위	1	25.0	0	0.0	0	0.0	1	25.0	0	0.0	0	0.0	2	50.0	0	0.0	4	100.0
	다문화 가족	1순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순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청소년	1순위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2순위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서울	1순위	4	7.4	31	57.4	2	3.7	13	24.1	1	1.9	1	1.9	2	3.7	0	0.0	54	100.0	
	2순위	3	5.7	14	26.4	9	17.0	18	34.0	0	0.0	0	0.0	8	15.1	1	1.9	53	100.0	
부산	1순위	2	10.0	7	35.0	5	25.0	5	25.0	0	0.0	0	0.0	0	0.0	1	5.0	20	100.0	
	2순위	2	10.0	9	45.0	4	20.0	4	20.0	0	0.0	0	0.0	1	5.0	0	0.0	20	100.0	
대구	1순위	2	13.3	9	60.0	0	0.0	3	20.0	0	0.0	0	0.0	1	6.7	0	0.0	15	100.0	
	2순위	2	14.3	3	21.4	4	28.6	4	28.6	1	7.1	0	0.0	0	0.0	0	0.0	14	100.0	
인천	1순위	4	21.1	6	31.6	1	5.3	3	15.8	2	10.5	0	0.0	1	5.3	2	10.5	19	100.0	
	2순위	1	5.3	6	31.6	5	26.3	4	21.1	2	10.5	0	0.0	1	5.3	0	0.0	19	100.0	
광주	1순위	0	0.0	8	57.1	0	0.0	4	28.6	0	0.0	0	0.0	2	14.3	0	0.0	14	100.0	
	2순위	4	33.3	2	16.7	0	0.0	2	16.7	1	8.3	1	8.3	1	8.3	1	8.3	12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1순위	4	7.4	31	57.4	2	3.7	13	24.1	1	1.9	1	1.9	2	3.7	0	0.0	54	100.0
		2순위	3	5.7	14	26.4	9	17.0	18	34.0	0	0.0	0	0.0	8	15.1	1	1.9	53	100.0
부산	1순위	2	10.0	7	35.0	5	25.0	5	25.0	0	0.0	0	0.0	0	0.0	1	5.0	20	100.0	
	2순위	2	10.0	9	45.0	4	20.0	4	20.0	0	0.0	0	0.0	1	5.0	0	0.0	20	100.0	
대구	1순위	2	13.3	9	60.0	0	0.0	3	20.0	0	0.0	0	0.0	1	6.7	0	0.0	15	100.0	
	2순위	2	14.3	3	21.4	4	28.6	4	28.6	1	7.1	0	0.0	0	0.0	0	0.0	14	100.0	
인천	1순위	4	21.1	6	31.6	1	5.3	3	15.8	2	10.5	0	0.0	1	5.3	2	10.5	19	100.0	
	2순위	1	5.3	6	31.6	5	26.3	4	21.1	2	10.5	0	0.0	1	5.3	0	0.0	19	100.0	
광주	1순위	0	0.0	8	57.1	0	0.0	4	28.6	0	0.0	0	0.0	2	14.3	0	0.0	14	100.0	
	2순위	4	33.3	2	16.7	0	0.0	2	16.7	1	8.3	1	8.3	1	8.3	1	8.3	12	100.0	

구분	순위	강사의 전문성 등 역량 부족		반복되는 교육으로 유사한 내용반복*		강의위주의 교육방법		강의내용이 현실과 너무 맞지 않아서		교육장 환경-거리, 쾌적성		교육시간이 짧아서		교육시간이 길어서		기타		총계		
		N	%	N	%	N	%	N	%	N	%	N	%	N	%	N	%	N	%	
대전	1순위	1	10.0	6	60.0	0	0.0	1	10.0	0	0.0	0	0.0	1	10.0	1	10.0	10	100.0	
	2순위	2	20.0	2	20.0	0	0.0	3	30.0	1	10.0	0	0.0	1	10.0	1	10.0	10	100.0	
울산	1순위	2	22.2	5	55.6	1	11.1	1	11.1	0	0.0	0	0.0	0	0.0	0	0.0	9	100.0	
	2순위	1	14.3	0	0.0	0	0.0	4	57.1	1	14.3	1	14.3	0	0.0	0	0.0	7	100.0	
경기	1순위	9	13.4	34	50.7	7	10.4	7	10.4	3	4.5	1	1.5	6	9.0	0	0.0	67	100.0	
	2순위	7	10.9	15	23.4	15	23.4	10	15.6	5	7.8	0	0.0	8	12.5	4	6.3	64	100.0	
강원	1순위	3	20.0	7	46.7	2	13.3	2	13.3	0	0.0	0	0.0	1	6.7	0	0.0	15	100.0	
	2순위	0	0.0	7	46.7	0	0.0	6	40.0	0	0.0	0	0.0	2	13.3	0	0.0	15	100.0	
충북	1순위	1	12.5	3	37.5	1	12.5	1	12.5	0	0.0	0	0.0	1	12.5	1	12.5	8	100.0	
	2순위	1	11.1	4	44.4	2	22.2	1	11.1	0	0.0	0	0.0	1	11.1	0	0.0	9	100.0	
충남	1순위	2	18.2	5	45.5	3	27.3	1	9.1	0	0.0	0	0.0	0	0.0	0	0.0	11	100.0	
	2순위	2	18.2	2	18.2	1	9.1	2	18.2	0	0.0	1	9.1	2	18.2	1	9.1	11	100.0	
전북	1순위	2	22.2	5	55.6	0	0.0	1	11.1	0	0.0	0	0.0	1	11.1	0	0.0	9	100.0	
	2순위	1	10.0	5	50.0	1	10.0	2	20.0	0	0.0	0	0.0	1	10.0	0	0.0	10	100.0	
전남	1순위	2	16.7	7	58.3	0	0.0	1	8.3	0	0.0	0	0.0	2	16.7	0	0.0	12	100.0	
	2순위	0	0.0	3	25.0	4	33.3	4	33.3	1	8.3	0	0.0	0	0.0	0	0.0	12	100.0	
경북	1순위	1	3.3	11	36.7	2	6.7	8	26.7	3	10.0	0	0.0	4	13.3	1	3.3	30	100.0	
	2순위	2	6.9	9	31.0	7	24.1	6	20.7	3	10.3	0	0.0	1	3.4	1	3.4	29	100.0	
경남	1순위	3	23.1	5	38.5	1	7.7	1	7.7	0	0.0	0	0.0	2	15.4	1	7.7	13	100.0	
	2순위	3	27.3	4	36.4	2	18.2	1	9.1	1	9.1	0	0.0	0	0.0	0	0.0	11	100.0	
제주	1순위	1	12.5	4	50.0	2	25.0	0	0.0	0	0.0	0	0.0	1	12.5	0	0.0	8	100.0	
	2순위	0	0.0	5	62.5	1	12.5	0	0.0	0	0.0	0	0.0	1	12.5	1	12.5	8	100.0	
세종	1순위	0	0.0	1	50.0	1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2순위	0	0.0	1	50.0	0	0.0	0	0.0	0	0.0	0	0.0	1	50.0	0	0.0	2	100.0	
시설유형	생활시설	1순위	13	8.7	69	46.3	16	10.7	29	19.5	6	4.0	1	0.7	10	6.7	5	3.4	149	100.0
		2순위	15	10.4	43	29.9	22	15.3	32	22.2	9	6.3	0	0.0	18	12.5	5	3.5	144	100.0
	이용시설	1순위	26	15.6	85	50.9	12	7.2	23	13.8	3	1.8	1	0.6	15	9.0	2	1.2	167	100.0
		2순위	16	9.9	48	29.6	33	20.4	39	24.1	7	4.3	3	1.9	11	6.8	5	3.1	162	100.0

〈표 49〉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관련 사회복지시설평가 경험  
(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시설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음		시설평가를 받지 않음		총계		
	N	%	N	%	N	%	
전체	1,784	55.8	1,414	44.2	3,198	100.0	
세 부 유 형	노인	435	40.6	637	59.4	1,072	100.0
	아동	473	64.2	264	35.8	737	100.0
	장애인	580	64.5	319	35.5	899	100.0
	정신보건	82	81.2	19	18.8	101	100.0
	노숙인	36	73.5	13	26.5	49	100.0
	지역사회 복지관	89	69.5	39	30.5	128	100.0
	지역자활 센터	4	11.8	30	88.2	34	100.0
	여성	42	44.7	52	55.3	94	100.0
	한부모 가족	21	75.0	7	25.0	28	100.0
	다문화 가족	9	29.0	22	71.0	31	100.0
	청소년	13	52.0	12	48.0	25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310	63.3	180	36.7	490	100.0
	부산	95	51.4	90	48.6	185	100.0
	대구	78	52.0	72	48.0	150	100.0
	인천	74	47.7	81	52.3	155	100.0
	광주	71	56.3	55	43.7	126	100.0
	대전	71	61.7	44	38.3	115	100.0
	울산	33	45.8	39	54.2	72	100.0
	경기	298	50.2	296	49.8	594	100.0
	강원	96	58.9	67	41.1	163	100.0
	충북	74	51.0	71	49.0	145	100.0
	충남	80	53.0	71	47.0	151	100.0
	전북	104	62.3	63	37.7	167	100.0
	전남	124	59.3	85	40.7	209	100.0
	경북	135	59.2	93	40.8	228	100.0
	경남	102	59.0	71	41.0	173	100.0
	제주	30	52.6	27	47.4	57	100.0
	세종	9	50.0	9	50.0	18	100.0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956	64.2	532	35.8	1,488	100.0
	이용시설	828	48.4	882	51.6	1,710	100.0

〈표 50〉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를 통한 인권교육 실시 평가의 효과성(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매우 비효과적		비효과적		보통		효과적		매우 효과적		총계		
	N	%	N	%	N	%	N	%	N	%	N	%	
전체	93	5.2	193	10.8	726	40.7	643	36.0	129	7.2	1784	100.0	
세 부 유 형 별	노인	22	5.1	29	6.7	162	37.2	174	40.0	48	11.0	435	100.0
	아동	20	4.2	59	12.5	205	43.3	167	35.3	22	4.7	473	100.0
	장애인	32	5.5	70	12.1	232	40.0	205	35.3	41	7.1	580	100.0
	정신보건	3	3.7	7	8.5	40	48.8	26	31.7	6	7.3	82	100.0
	노숙인	3	8.3	3	8.3	17	47.2	11	30.6	2	5.6	36	100.0
	지역사회 복지관	4	4.5	16	18.0	35	39.3	27	30.3	7	7.9	89	100.0
	지역자활 센터	1	25.0	1	25.0	1	25.0	0	0.0	1	25.0	4	100.0
	여성	2	4.8	4	9.5	19	45.2	16	38.1	1	2.4	42	100.0
	한부모 가족	3	14.3	2	9.5	6	28.6	9	42.9	1	4.8	21	100.0
	다문화 가족	1	11.1	1	11.1	4	44.4	3	33.3	0	0.0	9	100.0
	청소년	2	15.4	1	7.7	5	38.5	5	38.5	0	0.0	13	100.0
시 설 소 재 지	서울	27	8.7	34	11.0	124	40.0	104	33.5	21	6.8	310	100.0
	부산	2	2.1	13	13.7	41	43.2	31	32.6	8	8.4	95	100.0
	대구	2	2.6	9	11.5	32	41.0	32	41.0	3	3.8	78	100.0
	인천	3	4.1	12	16.2	26	35.1	28	37.8	5	6.8	74	100.0
	광주	2	2.8	11	15.5	32	45.1	20	28.2	6	8.5	71	100.0
	대전	5	7.0	4	5.6	22	31.0	33	46.5	7	9.9	71	100.0
	울산	3	9.1	4	12.1	15	45.5	10	30.3	1	3.0	33	100.0
	경기	12	4.0	25	8.4	117	39.3	125	41.9	19	6.4	298	100.0
	강원	1	1.0	5	5.2	41	42.7	42	43.8	7	7.3	96	100.0
	충북	4	5.4	10	13.5	28	37.8	26	35.1	6	8.1	74	100.0
	충남	3	3.8	9	11.3	35	43.8	30	37.5	3	3.8	80	100.0
	전북	7	6.7	9	8.7	44	42.3	38	36.5	6	5.8	104	100.0
	전남	3	2.4	11	8.9	59	47.6	43	34.7	8	6.5	124	100.0
	경북	9	6.7	21	15.6	46	34.1	46	34.1	13	9.6	135	100.0
	경남	9	8.8	10	9.8	47	46.1	24	23.5	12	11.8	102	100.0
	제주	1	3.3	3	10.0	13	43.3	11	36.7	2	6.7	30	100.0
	세종	0	0.0	3	33.3	4	44.4	0	0.0	2	22.2	9	100.0
시 설 유 형 별	생활시설	52	5.4	102	10.7	379	39.6	348	36.4	75	7.8	956	100.0
	이용시설	41	5.0	91	11.0	347	41.9	295	35.6	54	6.5	828	100.0

〈표 51〉 시설평가 개선사항(세부유형별, 지역별, 시설유형별)

구분	과도한 증빙서류 요구		서류위주의 형식적 평가		실제 인권침해발생을 평가에 결부시키지 않음		직원/이용자 인권 분리해 인식하는 교육체계		집합교육에 한정해 평가		기타		
	N	%	N	%	N	%	N	%	N	%	N	%	
전체	694	38.9	760	42.6	176	9.9	502	28.1	320	17.9	320	17.9	
세 부 유 형	노인	178	40.9	178	40.9	38	8.7	107	24.6	70	16.1	70	16.1
	아동	201	42.5	201	42.5	37	7.8	118	24.9	66	14.0	66	14.0
	장애인	227	39.1	257	44.3	59	10.2	186	32.1	123	21.2	123	21.2
	정신보건	24	29.3	29	35.4	13	15.9	31	37.8	15	18.3	15	18.3
	노숙인	10	27.8	16	44.4	7	19.4	13	36.1	5	13.9	5	13.9
	지역사회 복지관	23	25.8	43	48.3	12	13.5	24	27.0	26	29.2	26	29.2
	지역자활 센터	4	100.0	1	25.0	1	25.0	1	25.0	0	0.0	0	0.0
	여성	15	35.7	18	42.9	6	14.3	12	28.6	6	14.3	6	14.3
	한부모 가족	5	23.8	11	52.4	0	0.0	5	23.8	5	23.8	5	23.8
	다문화 가족	3	33.3	1	11.1	1	11.1	2	22.2	2	22.2	2	22.2
	청소년	4	30.8	5	38.5	2	15.4	3	23.1	2	15.4	2	15.4
시 설 소 재 지	서울	125	40.3	155	50.0	27	8.7	96	31.0	44	14.2	44	14.2
	부산	41	43.2	39	41.1	18	18.9	18	18.9	20	21.1	20	21.1
	대구	27	34.6	34	43.6	4	5.1	21	26.9	15	19.2	15	19.2
	인천	27	36.5	31	41.9	2	2.7	18	24.3	15	20.3	15	20.3
	광주	23	32.4	30	42.3	9	12.7	23	32.4	11	15.5	11	15.5
	대전	34	47.9	26	36.6	10	14.1	18	25.4	11	15.5	11	15.5
	울산	14	42.4	11	33.3	6	18.2	14	42.4	4	12.1	4	12.1
	경기	102	34.2	125	41.9	28	9.4	92	30.9	56	18.8	56	18.8
	강원	39	40.6	37	38.5	8	8.3	27	28.1	19	19.8	19	19.8
	충북	22	29.7	28	37.8	7	9.5	22	29.7	13	17.6	13	17.6
	충남	36	45.0	27	33.8	6	7.5	21	26.3	10	12.5	10	12.5
	전북	44	42.3	40	38.5	10	9.6	30	28.8	25	24.0	25	24.0
	전남	43	34.7	45	36.3	14	11.3	28	22.6	27	21.8	27	21.8
	경북	53	39.3	71	52.6	14	10.4	34	25.2	24	17.8	24	17.8
	경남	45	44.1	48	47.1	12	11.8	24	23.5	20	19.6	20	19.6
	제주	17	56.7	11	36.7	1	3.3	11	36.7	5	16.7	5	16.7
세종	2	22.2	2	22.2	0	0.0	5	55.6	1	11.1	1	11.1	
시 설 유 형	생활시설	380	39.7	402	42.1	93	9.7	269	28.1	179	18.7	179	18.7
	이용시설	314	37.9	358	43.2	83	10.0	233	28.1	141	17.0	141	17.0

## [부록 2 : 설문지 및 FGI 질문지 ]

###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모니터링 조사

#### - 사회복지 시설용 설문지 -

〈시설 내 ‘인권교육’ 담당자 혹은 관리자 한 분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으로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모니터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으로 정해진 인권교육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인권교육의 책임성 강화와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설문지(시설용)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수행되는 의무교육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시설 내 ‘인권교육’ 담당자 혹은 시설장 및 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 본부장, 부장)께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 결과에 대한 비밀은 보호됩니다. 본 설문조사는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나는 본 연구의 설명문을 읽었으며,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체크)
2.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체크)

아래의 클릭버튼을 누르시면 온라인설문조사로 이동합니다.

2020년 10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오승환  
담당연구원: 손영은 주임연구원

★ 설문조사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문 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담당연구원
- 전 화 : 070-7122-1021
- 이 메 일 : springye@kasw.or.kr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I. 시설유형 및 세부종류

1. 다음 중 귀 시설은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아래 보기 중 하나만 표기해 주십시오.

소관부처	시설종류	생활시설	이용시설
1-1.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③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⑤ 노인여가복지시설 ⑥ 노인보호전문기관 ⑦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아동복지시설	⑧ 아동양육시설 ⑨ 아동일시보호시설 ⑩ 아동보호치료시설 ⑪ 자립지원시설 ⑫ 공동생활가정	⑬ 아동상담소 ⑭ 아동전용시설 ⑮ 지역아동센터 ⑯ 아동보호전문기관 ⑰ 가정위탁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⑱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⑲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⑳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㉑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㉒ 장애인공동생활가정	㉓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㉕ 장애인의료재활시설 ㉖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정신보건시설	㉗ 정신요양시설 ㉘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㉙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노숙인시설	㉚ 노숙인자활시설 ㉛ 노숙인재활시설 ㉜ 노숙인요양시설	㉝ 노숙인종합지원센터 ㉞ 노숙인일시보호시설 ㉟ 노숙인급식시설 ㊱ 노숙인진료시설 ㊲ 쪽방상담소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㉜ 결핵·한센시설	㉝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㉞ 지역자활센터
	1-2. 여성 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① 일반지원시설 ② 청소년지원시설 ③ 외국인여성지원시설 ④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⑦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⑧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⑨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⑩ 가정폭력상담소 ⑪ 긴급전화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⑫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 공동, 자립) ⑬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 공동, 자립) ⑭ 미혼모가족복지시설(기본, 공동) ⑮ 일시지원복지시설	⑯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⑱ 청소년쉼터 ⑲ 청소년자립지원관 ⑳ 청소년치료재활센터 ㉑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III.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기초정보

\* 본 조사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인권교육으로, 다음의 인정범위를 말합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통해 제공되는 교육과는 별개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참고용]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관련 사회복지시설 평가 기준

○ 인정범위

-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계획이 있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면 인정
- 인권교육은 이용자 대상 인권교육과 별개로 이루어져야 인정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근무일지, 상담일지, 면담 등

6. 귀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은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문항 6-1번으로 이동)      ② 모른다(☞ 문항 7번으로 이동)

\*\* 6-1. 귀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은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
- ② 정신보건법(보건복지부)
- ③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 ④ 사회복지사업법(보건복지부)
- ⑤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 ⑥ 청소년기본법(여성가족부)
- ⑦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부)
- ⑧ 노인복지법(보건복지부)
- ⑨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보건복지부)
- ⑩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부)

\*\* 6-2. ('6-1번에서 중복 응답'한 경우) 근거 법률에 따라 각각 인권교육을 진행하십니까?

예) 노숙인시설의 경우, 「정신보건법」과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등 각각의 근거 법률에 따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 법률이 중복될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별도의 교육을 진행할 경우 '예', 합쳐서 진행하신 경우 '아니오'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예      ② 아니오(이유: \_\_\_\_\_)



11. 인권교육 비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실제로 경험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경험 없음
- ② 경험 있음 → 내용(\_\_\_\_\_)

12. 귀 시설이 2019년 1년 동안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인권교육은 몇 회, 몇 시간 진행되었나요?

구분	총 횟수	회당 평균 시간/인원	전체 인권교육 수료인원	시설장 참여여부	
1) 내부교육	연간 총 <input type="text"/> 회	1회당 평균 ____ 시간 / 1회당 평균 ____명	2019년 1년간 총 ____명	참여 <input type="checkbox"/>	미참여 <input type="checkbox"/>
	연간 총 <input type="text"/> 시간				
2) 외부교육	연간 총 <input type="text"/> 회	1회당 평균 ____ 시간 / 1회당 평균 ____명	2019년 1년간 총 ____명	참여 <input type="checkbox"/>	미참여 <input type="checkbox"/>
	연간 총 <input type="text"/> 시간				

13. 귀 시설의 시설장은 최고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별도로 수강하였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4. 귀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을 실시한 경우 종사자를 집단으로 구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 ① 구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음(전 종사자가 다같이 수강)
- ② 직급별로 구분하여 실시함(관리자 및 실무직원을 구분하여 수강)
- ③ 직종별로 구분하여 실시함(사회복지직 및 사회복지사 외 직종으로 구분하여 수강)
- ④ 직급 및 직종이 아닌 기타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 내용(\_\_\_\_\_)

15. 귀 시설은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소관부처의 지침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 예) 보건복지부 아동시설 사업 안내,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안내 등

- ① 예
- ② 아니오

15-1. 귀 시설은 인권교육을 계획하기 이전에 해당년도 소관부처 지침을 검색 및 확인하였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6. 귀 시설이 2019년 1년 동안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인권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까?

- ① 외부기관 교육에 참여(☞ 문항 25번으로 이동)
- ②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문항 17번으로 이동)
- ③ 시설 자체 교육 + 외부기관 교육 참여를 병행(☞ 문항 17번으로 이동)

\* 17번부터 24번까지의 문항은 <시설 자체 교육>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시설 내부에서 진행된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의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기관에서 시설 내로 방문하여 진행하는 교육도 <시설 자체 교육>으로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귀 시설이 2019년 1년 동안 시행한 인권교육을 진행한 강사는 누구였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본부 및 지역사무소 직원)
- ② 국가인권위원회 위촉강사
- ③ 국가인권위원회 현재 위촉 상태는 아니지만 과거 인권위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
- ④ 지자체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자(예 : 서울시 인권강사,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인권강사)
- ⑤ 각종 협회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자(예 : 직능 협회 양성과정 강사)
- ⑥ 그 외 시민단체 또는 민간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 ⑦ 사회복지학과 교수
- ⑧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 ⑨ 모르겠음
- ⑩ 기타 ( \_\_\_\_\_ )

18. 2019년 1년 동안 시설의 내부 종사자가 인권교육 진행 강사로 참여하였습니까?

- ① 참여함(☞ 문항 18-1번으로 이동)
- ② 참여하지 않음(☞ 문항 19번으로 이동)

\*\* 18-1. ('18번에서 ①에 응답'한 사람만) 내부 종사자가 강사로 참여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기관내부 인력 활용이 더 편의성이 있어서
- ② 수강생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 ③ 외부 강사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 ④ 비용절감을 위해서
- ⑤ 과거 진행된 외부 강사 교육에 대한 불만족으로
- ⑥ 기타 ( \_\_\_\_\_ )

19. 귀 시설이 2019년 동안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내부 인권교육의 강사 섭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국가인권위원회(지역사무소 포함) 연계
- ② 지자체 문의나 협조
- ③ 각종 직능 협회
- ④ 그 외 시민단체 또는 민간 업체
- ⑤ 시설이 확보한 기존 강사풀
- ⑥ 기타 ( \_\_\_\_\_ )

20. 강사 섭외가 곤란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 강사섭외에 대한 정보 부족
- ② 강사비 등 예산 부족
- ③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
- ④ 교육장소 부족
- ⑤ 시설이나 분야에 대한 강사의 이해 부족
- ⑥ 수강인원 미달
- ⑦ 기타 ( \_\_\_\_\_ )

21. 진행한 인권교육의 프로그램 설계, 강사 섭외 등에 있어 도움을 받은 기관이 있다면?

- ① 국가인권위원회(지역사무소 포함)
- ②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
- ③ 협회
- ④ 타 복지기관
- ⑤ 개별 강사
- ⑥ 특별한 도움을 받지 못함
- ⑦ 기타 ( \_\_\_\_\_ )

22. 다른 교육과 비교하였을 때, 2019년에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을 기준으로 인권교육 강사의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 ② 부족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적절하다
- ⑤ 매우 적절하다

23. 인권교육 강사료는 어떤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까?

- ① 시설 및 법인 자체 기준
- ② 공동모금회 기준
- ③ 지자체 기준
- ④ 기타( \_\_\_\_\_ )

23-1. 인권교육 강사료는 시간당 얼마를 지급하십니까?(시간당 강사료로 숫자만 입력)

\* 원 단위로 입력(예 : 시간당 7만원인 경우 → 70,000으로 숫자만 작성)

\* 시간당 강사료가 상이한 경우 시간당 평균값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당 ( \_\_\_\_\_ )원

24. 귀 시설에서 진행된 인권교육은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까?

- ① 업무 시간에 진행
- ② 업무 시간 외 진행, 초과 근무 수당 지급
- ③ 업무 시간 외 진행, 초당 근무 수당 비지급
- ④ 기타 ( \_\_\_\_\_ )

**\*\* 2019년에서 시행한 의무 인권교육 중 <시설 자체 교육>과 <외부기관에서 주최한 교육> 참여를 병행하였습니까?**

- ① 시설 자체 교육만 진행
- ② 시설 자체 교육과 외부기관 주최 교육을 병행함

**\* 25번부터 30번까지의 문항은 <외부 기관에서 주최하는 교육에 참여>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시설 외부기관에서 주최하는 교육에 참여하여 시설 외부에서 진행된 의무 인권교육 수강 내용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인권교육에 참여하셨다면, 어떤 기관의 인권교육을 참여하셨나요? (중복응답 가능)

- ① 국가인권위원회
- ② 중앙정부(보건복지부, 교육부[교육청 포함])
- ③ 지방자치단체(산하 인재개발원 포함)
- ④ 정부 산하 교육기관(보건복지인력개발원, 공무원연수원, 국립의료원 등)
- ⑤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협회 등 직능단체
- ⑥ 대학 및 평생(사회)교육원
- ⑦ 기타 ( \_\_\_\_\_ )

26. 위의 응답에서 인권교육을 수강한 기관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교육주최기관의 신뢰성
- ② 의무참여교육으로 참석(지자체 교육 등)
- ③ 교육주최기관의 홍보를 접함
- ④ 교육장소의 접근성
- ⑤ 교육일정이 기관의 일정과 맞아서
- ⑥ 기타 ( \_\_\_\_\_ )

27.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인권교육에 참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수강하였나요?

- ① 출장 또는 교육 공가 등으로 수강하도록 함
- ② 개인 휴가를 사용하여 수강하도록 함
- ③ 기타(\_\_\_\_\_ )

28.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인권교육이 업무 외 시간의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였나요?

- ① 초과 근무 수당 지급
- ② 초과 근무 수당 비지급
- ③ 해당사항 없음

29.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교육은 대면 교육이었나요? 비대면 온라인 교육(사이버 교육)이었나요?  
(참고, 2019년에는 노인 및 정신건강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불가하였음)

- ① 대면(집합) 교육
- ② 비대면 온라인 교육

30. 2019년 1년 동안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의무 인권교육을 진행한 강사는 누구였습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본부 및 지역사무소 직원)
- ② 국가인권위원회 위촉강사
- ③ 국가인권위원회 현재 위촉 상태는 아니지만 과거 인권위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
- ④ 지자체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자(예 : 서울시 인권강사,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인권강사)
- ⑤ 각종 협회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자(예 : 직능 협회 양성과정 강사)
- ⑥ 그 외 시민단체 또는 민간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 ⑦ 사회복지학과 교수
- ⑧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 ⑨ 모르겠음
- ⑩ 기타 ( \_\_\_\_\_ )

\* 31번부터는 시설 자체 교육 및 외부 기관 교육을 모두 포함한 의무 인권교육수강 내용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귀 시설이 2019년 1년 동안 진행한 인권교육의 주요내용 중 수강한 내용을 모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포함 여부	
	포함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input type="checkbox"/>
① 인권개념 및 역사	포함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input type="checkbox"/>
② 인권과 법/정책	포함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input type="checkbox"/>
③ 국제인권기준(유엔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마드리드노인인권행동계획 등)	포함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input type="checkbox"/>
④ 인권의 내용(사회권, 자유권, 차별 등)	포함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input type="checkbox"/>
⑤ 이용자 인권(아동/장애인/노인학대 등)	포함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input type="checkbox"/>
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노동권, 직장내괴롭힘 등) 및 조직운영	포함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input type="checkbox"/>
⑦ 인권침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기관 안내	포함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 ( _____ )	포함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input type="checkbox"/>

32. 2019년 진행한 인권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었나요? (중복응답 가능)

- ① 강의 중심 교육
- ② 토론 중심의 참여형 교육
- ③ 역할극 중심의 참여형 교육
- ④ 캠페인, 현장방문 등 현장체험형 교육
- ⑤ 녹화된 강의를 비디오로 시청
- ⑥ 영화,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교육
- ⑦ 기타 ( \_\_\_\_\_ )

33. 귀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국가인권위원회(지역사무소 포함) 연계
- ② 지자체 관련 부서
- ③ 각종 직능 협회
- ④ 그 외 시민단체 또는 민간 업체
- ⑤ 전임자 및 타 시설 담당자
- ⑥ 기타 ( \_\_\_\_\_ )

34. 2019년 1년 동안 참여하신 인권교육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문항 34-2번으로 이동)
- ②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문항 34-2번으로 이동)
- ③ 만족한다(☞ 문항 34-1번으로 이동)
- ④ 매우 만족한다(☞ 문항 34-1번으로 이동)

**\*\* 34-1. '만족한다고(③,④) 응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위형)**

1순위:            2순위 :

- ① 평소에 몰랐던 인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
- ② 이용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
- ③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 내용과 방법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
- ④ 새로운 인권교육 방법을 적용해서 도움이 되었기 때문
- ⑤ 강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뛰어났기 때문
- ⑥ 교육을 받고 구체적으로 업무에 적용하고 개선할 수 있었기 때문
- ⑦ 사회복지조직운영 또는 종사자의 인권보호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 ⑧ 기타(\_\_\_\_\_)

**\*\* 34-2. '불만족한다고(①, ②) 응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위형)**

1순위 :            2순위 :

- ① 강사의 전문성 등 역량 부족
- ② 반복되는 교육으로 유사한 내용 반복
- ③ 강의 위주의 교육방법
- ④ 강의내용이 현실과 너무 맞지 않아서
- ⑤ 교육장 환경-거리, 쾌적성
- ⑥ 교육시간이 짧아서
- ⑦ 교육시간이 길어서
- ⑧ 기타(\_\_\_\_\_)

35. 귀 시설은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평가를 몇 번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시설평가를 받지 않음
- ② 시설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음 → 해당연도(\_\_\_\_\_)년 / 숫자로 입력

36.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를 통해 인권교육의 실시를 평가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비효과적            ② 비효과적            ③ 보통            ④ 효과적            ⑤ 매우 효과적

37. 귀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 인권교육관련 항목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증빙할 서류가 너무 많은 과도한 증빙 서류 요구
- ② 서류 위주의 형식적인 평가로 진행됨
- ③ 실제 인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평가에 결부시키지 않아 개선이 필요
- ④ 직원인권과 이용자인권을 분리해 인식하는 교육체계
- ⑤ 집합교육에 한정하여 평가
- ⑥ 기타 ( \_\_\_\_\_ )

**Ⅶ. 응답자 인적사항 (교육담당자 인적사항)**

37. 성별	① 남	② 여	③ 기타
38. 출생연도	년도		
39. 직무	① 사회복지직(생활지도원 포함) ③ 기능직, 시설관리직 ⑤ 기타( _____ )	② 일반직, 사무직 ④ 보건의료직	
40. 직급	① 최고관리자(시설장) ③ 중간관리자(과장/팀장급) ⑤ 실무직원(직위가 없는 직원)	② 상급관리자(사무국장/부장급) ④ 초급관리자(선임/대리급) ⑥ 기타( _____ )	
41. 경력 기간	41-1. 총 경력	사회복지분야에서 종사한 총 경력은? _____년 _____개월	
	41-2. 재직 기간	현 직장에서 재직한 기간은? _____년 _____개월	
	41-3. 인권교육 담당 수행 기간	_____년 _____개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의무교육을 담당한 업무 수행의 기간	

※ 성실하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첨을 통해 설문조사 사례품(기프트콘 발송)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오니 원하시는 분께서는 핸드폰 연락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 \_\_\_\_\_ )

## 참 고 문 헌

- 국가인권위원회(2019),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20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김미옥·정진경·김희성·최영식·윤덕찬·임효진(2006), 장애인생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국가인권위원회.
- 배경내·고은채·문명진·이묘량(2019), <인권교육 평가를 위한 지표> 교재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변경희·김동기·윤덕찬·이미정·김재철·이항란·김희선(2014),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보건복지부(2009), 2018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안내.
- 보건복지부(2019),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 보건복지부(2020), 2020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0), 2020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0), 2020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0),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보건복지부(2020), 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0), 2020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0), 2020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2019),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생활시설 평가지침.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2019), 2021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사회복지관(2019 사회복지관 설명회 자료집)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2020),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평가지표.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2020),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 신재은·박미경·문정은(201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연구, 경기복지재단.
- 여성가족부(2020), 2020 청소년사업안내.
- 오세희·김민희·남형우·박병권(2015), 인권교육의 실태와 질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법무부.
- 유동철·김명연·박숙경·김정하·임소연·박영희·이윤경(2013),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 개발, 국가인권위원회.
- 이봉원·이영문·최명민·오영아·김성수·박세경(2014),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현황과 개선방안연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9), 201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연간 실적보고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20), 202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 홍선미. (2018). 사회복지와 인권.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74-81.
- 홍선미·김제선·이승훈·김도희·송은연·이선행(2017),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

발 행 일 2020년 12월

발 행 처 국가인권위원회

전 화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F A X 02) 2125-9896

인 쇄 처 경성문화사 02-786-2999

I S B N 978-89-6114-799-6 93330

---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